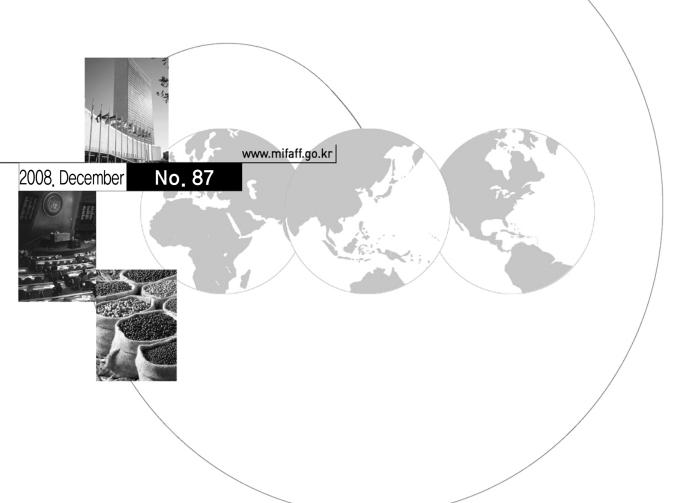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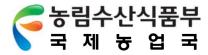
발 간 등 록 번 호 11-1541000-000026-07



국제농업소식





Contents 2008. December. No.87 THE GLOBAL AGRO-INFORMATION

최근 DDA/FTA 농업협상동향	
● DDA 농업협상 최근 동향 및 전망	3
● 2008년도 FTA 협상 동향	9
해외농정 단신	
• 최근 중국언론에 보도된 주요경제 정보 보고	19
● 중국 식량자급율 2020년까지 95%	23
• 새로운 광우병 규정이 또 다른 국민위생문제 초래 우려	25
● 캐나다정부, Farmer's Market 전국 Network 구성	27
● EU-호주, '포도주의 지리적 표시' 상호 인정	29
● 브라질 농·축산부 한국에 해외협력연구센터 설치	31
• 인도, 수입규제 조치 강화	33
• 14차 기후변화총회(COP14)결과 및 향후 전망	35
세계농업 흐름 분석	
• 아태지역의 식량/농업상황 및 바이오연료에 대한 고찰	39
● 뉴질랜드의 원예분야 자조금제도	51
● 세계곡물 수급 동향	57
● 농산물 품질에 관한 녹서(Green Paper)	71
• OECD의 농업지지정책 지표	97
특별기고	
● DDA, 2008년 12월 농업협상	113
● 한·싱가포르 FTA체결의 주요내용 및 시사점	125
• '08 식량위기론, 그 실상과 대책	137

최근 DDA 농업협상동향

1. DDA 농업협상 최근 동향 및 전망

다자협상과 강민철 사무관

2. 2008년도 FTA 협상 동향

지역무역협정팀 전종민 기술서기관









때문

종 소리가 멀리까지 울리는 것은 그 속이 비었기 때문이고

거울이 세상 모습을 다 담는 것은 그 겉이 맑기 때문이다.

강물이 넓은 바다로 흐르는 것은 낮은 데로 흐르기 때문이고

바람이 그물에 걸리지 않는 것은 그 형체가 없기 때문이다.

글·그림 이규경

DDA 농업협상 최근 동향과 전망

다자협상과 강민철 사무관

세계 금융·경제 위기를 타계하기 위한 G20 정상회의 이후 급물살을 탔던 DDA 협상은 12월 각료회의 개최가 끝내 무산됨으로서 세부원칙 타결도 내년을 기약하게 되었다.

G20 정상회의(11.15) 및 APEC 정상회의(11.23)에서 보호무역의 대두를 경계하며 DDA 세부원칙의 연내 타결을 촉구했지만, 동 선언에서 표명된 정치적 의지만으로는 핵심 쟁점에 대한 주요국 간의 의견 차이를 좁히기에는 시간이 부족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여기에 올해 7월 각료회의 실패의 경험은 라미 사무총장이 주요국 간의 견해 차이가 상당한 상황에서 불과 약 4개월 만에 각료회의를 다시 소집하는데 대한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돌이켜 보면, 10월부터 7월 각료 회의시 충분히 논의되지 않았거나 의견차이가 큰 분야(개도국 특별긴급관세 : SSM, 관세단순화, 민감품목 개수, TRQ 신설 등)를 중심으로 협상이 공식적으로 재개되었지만 그 진전은 크지 않은 편이었다. 또한 농업협상의 진전에 중요한 역할을 해온 팔코너 의장도 12월 중순 임기를 마치고

뉴질랜드로 복귀할 예정이어서 시간의 제약은 더욱 큰 상황이었다. G20 정상회의 직전인 11월 11일에 개최된 G33 주요국(인도, 중국 등 포함) 회의에서도 올해 안에 세부원칙을 타결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그러나, 세계 경제 위기 극복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모인 G20 및 APEC 정상들이 DDA 협상의 연내타결을 위해 노력할 것을 천명함에 따라 협상은 급박하게 돌아갔다. 호주, 브라질, EU 등이 세부원칙의 연내타결을 특히 강조하였고 라미총장도 11.17 개최된 주요국 대사급회의(그린룸)에서 G20 정상선언으로 세부원칙 연내타결을 위한 정치적 여건이 마련되었다며 12월 각료회의 개최를 전제로 협상을 가속화할 것을 제시하였다. 다만 팔코너 농업협상 그룹의장은 비공식 전체회의(11.15, open-ended)에서 지난 10월 중순 이후 현재까지 새로운 수정 텍스트를 집필할 만큼의 진전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고 밝히면서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G20 정상선언은 세부원칙 연내 타결 추진토록 하고 있는바 G20 국가들이 솔선수범하여 신축적인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하였다.

11월 마지막 주에는 12월 각료회의 논의의 기초로 사용될 세부원칙 4차 수정안 마련을 위한 협상이 집중적으로 전개되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각국의 본부 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농업 분야 이슈전반을 다루는 팔코너 의장 주재 협의와 SSM 등 의견차이가 큰 핵심 이슈에 대한 라미총장 주재 회의가 동시에 진행되어 7월 각료 회의 논의를 확인하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라미총장은 12.1 통 지문을 통해 각료회의를 12.13-15 무렵에 개최할 의향을 밝혔다.

12.7(일) 5시경(제네바 시각 12.6일 21시) 팔코너 의장은 7월 각료회의 및 최근 협상의 진전내용을 대부분 반영한 세부원칙 4차 수정안을 배포하였다. 그러나 주요국간 아직 입장차이가 커서 쟁점이 되어온 SSM, 민감품목(개수), TRQ 신설 등 3개 이슈에 대하여는 세부워칙 4차 수정안에 반영하지 못하고 별도의 의장보고서 형태로 제시하였다.

(세부원칙 4차 수정안 주요내용 : 별첨 참고)

그러나 세부워칙 수정안이 회람된 이후에도 라미 총장은 각료회의 개최여부를 결정하지 못하였다. 12.8 그린룸에서 라미 총장은 주요국들로부터 현 단계에서 각료 회의를 소집하면 대단히 위험하다는 시그널을 받았다고 하며 12.17-19간 각료회의 개최를 목표로 주요국들과 협의를 계속해 나갈 의사를 밝혔다. 한편 팔코너 의장은 각료회의가 열렸다가 깨지는 것과 열리지 않는 것은 많은 차이가 있다고 하며, 각료 회의 실패 보다는 각료회의를 개최하지 않는 편이 낫다는 입장을 피력하였다.

이후 라미 총장은 미국, 인도, 중국 등과 유선 협의를 진행하며 주요국 간의 입장 차이를 좁히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하였으나 결국 실패하였고 12.12일 연내 각료회의 개최를 포기하였다. 주요국들은 각료회의의 연내 개최가 사실상 어렵다는데 대해 공감을 표명하는 한편 협상의 조속한 재개를 주장하였다.

연내 각료회의 개최는 실패하였으나, 7월 각료회의 논의내용과 최근의 집중적인 협상의 결과물을 담은 세부워칙 4차 수정안이 배포됨으로서 각국의 정치적인 결단만 있다면 세부워칙 타결은 요워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된다. 뉴질랜드가 제네바 대사 로써의 임기가 끝난 팔코너 의장을 DDA 농업협상 특별대사로 임명하여 농업협상 의장직을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한 것도 주목해야할 부분이다. 특히, 내년 미국 신행정부가 출범하면 DDA 협상은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세부원칙 3차 수정안과 4차 수정안 주요내용 비교

 쟁	쟁 점 세부원칙 3차 수정안('08.7)			세부원칙 4차 수	·정안('08.12)
쟁 │	선 관세 감축	세무원칙 3차 수성	감축률(%) 66-73 64 57 50 감축률(%) 44-48.7 42.7 38.0 33.3	세무원칙 4차 수	
	관세 상한	○ 관세상한(선진국 100%, 개도국 150%)에 대한 일부 품목 적용 배제 -특별품목: 보상없이 상한적용 배제 -민감품목: 관세상한 적용을 배제하되 TRQ를 0.5% 추가 증량 * 개도국의 경우는 TRQ 0.33% 증량		배제 및 보상 규정은 동일 ○비민감품목의 상한적용 배제문제는 []으로 처리, 미해결쟁점으로 남겨둠 * 아이슬랜드, 일본, 노르웨이, 스위스 관련 -상한적용 예외범위 : 1% -보상방안: 전체 민감품목에 대해 TRQ를 0.5% 추가증량하거나, or 해당 비민감 프모인 이해기가 2년 다추 or 과세가추류	
	민감 품목	○개수: 전체 세번의 4 or 6% ○TRQ증량: 소비량의 4-6% -TRQ증량은 이행첫날 1/4, 3년간 증량 ★ 개도국은 개수 1/3 추가, TRQ는 2/3수준 ○개도국에 대해 TRQ증량외 옵션 제시 -구간감축율 적용하되 3년 연장 -구간감축율의 3/4 적용하되 2년 단축 (단, 민감품목수의 2/3에 한정) ○소비량 계산방식 최근 논의내용 반영		○개수 및 TRQ증량 단일수치 제시 -개수: 4%, TRQ증량: 소비량의 4% * 개도국은 개수 1/3 추가, TRQ는 2/3수준 ○개도국에 대한 이행기간 조정옵션을 추가 인정하되, 이행기간을 단축 · 구간감축률의 2/3를 적용하되, 이행기간 3년 적용(단, 전체 민감 품목의 1/2로 한정) • 1/2적용+이행기간 2년(단, 1/3로 한정) • 1/3적용+이행기간 1년(단, 1/4로 한정)	
	특별 품목	○개수: 10-18% ○6% 감축면제 또는 감축 -전체 SP를 평균 10-14%		○개수 및 평균감축률 - 개수 12%, 평균 11% 김	

쟁	행 점 세부원칙 3차 수정안('08.7)		세부원칙 4차 수정안('08.12)	
	SSM	○ UR 양허관세 상한적용 SSM 발동기준	○UR 양허관세 상한적용 SSM 발동요건은 3차수정안과 동일 ○UR 양허관세 초과가능 SSM관련 논의 내용은 별도문서로 제시 -발동품목수: 전체 세번의 2.5% -발동기준 및 추가관세 발동기준 추가관세 발동기준 추가관세 발동기준 추가관세 학의 120% 취報 양 왕 왕 중 높은 것 여 140% 초과 50% or 12%p -발동기간: 4-8개월(단, 2-4개월에 한하여	
		-초과가능수준(cap): DDA양허관세의 15% 또는 15%p 중 높은 것 적용 * 발동기준 및 구제조치는 위와 동일 ○선진국: 모두 철폐 or 1.5%로 축소	다음 연도로 연장 허용) -발동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국내가격이 하락하지 않을 경우 발동 제한 ○선진국: 이행첫날 1%로 축소, 7년간 철폐	
	SSG	○개도국 : 3%로 축소 * 발동기준 및 구제조치는 현행 유지	* 단, UR양허관세 초과 금지 ○개도국: 이행첫날에 2.5%로 축소	
	쿼터내 관세	○ 선진국: 50-70%감축(단,0-15% 상한적용) -단, 5%이하 관세는 철폐 ○개도국: 선진국의 1/2(단, 상한 미적용)	○ 선진국: 50%감축(단, 상한 10%적용) * 단, 이행첫날 17.5% 이하로 감축하며, 5%이하 관세는 철폐 ○개도국: 15%감축(단, 상한 미적용) * 단, 감축면제 해당 특별품목은 쿼터내 관세도 감축면제	
	TRQ * 3년 연속 소진율이 65% 이하일 경우관리 방안 저자방식으로 변경		○개도국에 대해서는 신축성 부여 -현행 TRQ 관리방식을 유지하거나 선착순 또는 비조건적 허가방식 외의 다른 방식 으로 전환 가능	
	관세 단순화	○모든 관세를 100% 종가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으로 처리(삭제 가능성 제시)	○ 모든 관세를 100% 종가세로 전환, or 90%를 종가세로 전환(단, 이행기간 종료 후 1년 이내에 100% 종가세 전환을 마무리 하기 위한 방안 마련 필요)	
		○보조금 감축률(%)	○OTDS 감축률 단일수치 제시	
국	OTDS,	국가 OTDS AMS De minimis	국가 OTDS AMS De minimis	
	AMS, De	EU [75][85] 70 미국・일본 [66][73] 60 50	EU 80 70 미국・일본 70 60 50	
내	minimis	기타국가 [50][60] 45	기타국가 55 45	
보		개도국 [33.3][40] 30 33.3	개도국 36.7 30 33.3	
조 	허용 보조	○직접지불제에 있어 기준년도를 고정 불변토록 하고 예외적으로 변경 인정 ○개도국에 대해서는 일부 신축성 인정	○3차수정안과 동일	

2008년도 FTA 협상 동향

지역무역협정팀 전종민 기술서기관

2008년도 우리나라는 EU, 인도, 캐나다, 멕시코 및 걸프협력이사회(GCC: 사우디 아라비아, 아랍에미레이트, 카타르, 바레인, 오만, 쿠웨이트)와 협상을 진행 하였으며, '04년 11월 제6차 협상 이후 중단된 일본과는 FTA협상 재개 문제를 실무선에서 논의하였다. 또한 페루와는 '08.11.22일 양국정상간 FTA협상 추진을 공동선언한 바 있다.

FTA협상 사전단계 진행과 관련하여, 중국과는 '07년 3월부터 산·관·학 공동연구를 개시하여 금년말까지 보고서를 마무리하고자 하였으나 일부 문안이 쟁점으로 남아 있어 내년에도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호주·뉴질랜드와는 '07년에 공동연구를 시작하여 '08. 4월에 마무리하였으며, 호주·뉴질랜드 양국과 각각 2차례의 FTA 추진을 위한 예비협의를 개최하였다. 남미공동시장(Mercosur: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과는 공동연구를 완료하였으나 현재까지 FTA개시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내년도에는 EU, 캐나다, 인도 등과의 협상이 마무리되고, 호주·뉴질랜드와는 협상 개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며, 페루와는 상반기 중 협상이 개시될 것으로 전망된 다. 정부는 이들 국가와의 FTA협상에 있어서도 농업관련 전문가 및 관련단체 등과 긴밀히 협의하면서 우리 농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현재 협상이 진행 되고 있는 주요 국가들과의 2008년도 FTA 농업협상 동향은 다음과 같다.

l. 한·EU FTA

한-EU FTA는 '08.1월 개최된 제6차 협상에서는 주로 협정문과 공산품 원산지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다만, EU측 요청으로 개최된 비공식 회의에서 EU측은 민감 품목의 예외적 조치, 농산물 세이프가드, 수입쿼타 등에 대해 대부분 수용 가능 입장을 표명하였다. 반면, EU측은 감귤, 감자, 설탕 등 관심품목은 추가적인 양허 개선을 요구하였다.

제7차 협상(5.12~5.15, 브뤼셀)에서는 상품 협상은 개최되지 않아 농수산물 양허 협상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기타 농수산업 관련 분야에서는 위생ㆍ검역(SPS), 품목별 원산지기준 및 지리적 표시 등의 협상이 진행되었다.

위생·검역(SPS) 분야에서는 지역화 인정절차, 작업장 승인 절차 등을 주로 논의했으며, 우리측은 주로 수입국의 입장에 있는 만큼 상기 절차에 있어 수입국의 검역권한이 침해받지 않도록 문안을 조정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EU측은 긍정적 반응을 보였으며, 양측은 이러한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최종적인 문안을 정리해 나가기로 했다.

품목별 원산지 기준 협상에서는 별다른 입장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우리측은 지난 협상에서 이미 제시한 내용인 제3국산 원료를 사용한 가공식품의 원산지 기준 작성 배경을 재차 설명했고 EU측은 우리측 입장을 검토 중이라고 하면서 회원국들과의 입장 조율을 거쳐 협의에 임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지리적 표시 분야 협상에서는 지리적 표시의 보호수준, 지리적 표시와 상표와의 관계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으며 양측 문안을 접근시키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작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계속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양측 대표는 조기에 협상이 타결될 수 있도록 통상장관회의, 수석대표 협의 그리고 분야별 회기간 회의를 계속 집중 개최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또, 서울에서 개최될 제8차 협상은 협상 타결을 위한 최종 협상이 되도록 한다는데 합의하고, 8차 협상의 개최시기 등 구체적인 일정은 분야별 회기간 협의 등의 진전 상황을 감안하여 추후 협의하여 정하기로 했다.

2. 한 · 캐나다 FTA

2008년도 들어 한ㆍ캐나다 FTA협상은 상반기에 한차례의 정례협상과 한차례의 회기간 협상만이 개최되는 등 협상은 느슨하게 진행되었다.

그러나 협상 전반적으로 볼 때, 2005년 협상개시 이래 오랜 기간 협상을 진행했기 때문에 일부 핵심사안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쟁점이 해소되었다. 다만, 농업분야는 아직도 잔여쟁점이 남아 있는 상황이다. 캐나다측이 큰 관심을 갖고 있는 쇠고기, 돼지고기 양허 및 대두 등 품목의 수입쿼타량 등에 있어서는 양측 입장만 재확인 하는 수준에서 논의가 진행되었다.

한·캐나다 FTA 협상 타결은 양측이 상대국 관심품목을 얼마나 양허할지에 달려있다. 즉 한국측 관심품목인 자동차, 캐나다측 관심품목인 쇠고기·돼지고기의 양허수준이 협상 타결의 핵심사항이다.

현재 협상은 막바지 단계로서 농업분야에서도 타결방안을 마련하여 대응할 필요성이 높은 상황으로서 농업계 및 전문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다각적 접근 및 다양한 대안 모색 등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협상에 임할 계획이다.

3. 한·인도 CEPA

* CEPA(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FTA에 경제· 기술 협력 등 다양한 경제관계를 포함하는 포괄적 경제파트너쉽 협정을 말함.

한·인도 CEPA 협상은 '08년도에 실무협의 2차례 포함 5차례 협상을 하였으며, 9월 개최된 제12차 협상에서 상품양허 등 협상 핵심 잔여쟁점에 대한 합의를 도출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타결이 되었다.

인도는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이 농업부문에 종사하고 있는 전형적인 농업국가 로서 자급자족적 농업 형태에 하부구조도 열악한 상황이나 인도가 우리나라와의 FTA 체결을 통해 상품분야에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분야가 농림수산업 외에는 제한적일 뿐만 아니라 쌀, 쇠고기, 고추, 마늘, 양파, 콩, 참깨 등 우리나라의 민감 농산물의 수출국이기도 하다.

한 · 인도 양국 모두 농업과 같은 민감분야에 대하여는 적절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공동인식하에 협상을 진행한다는데 합의한 바 있으나 실제 협상에서는 인도측은 우리 농산물에 대한 개방을 강력히 요구하였으며, 우리측은 인도측의 기대수준을 가능한 한 낮춤으로써 협상 타결이 우리 농업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 결과 우리 민감 농산물의 대부분을 양허제외 유형에 포함 시키거나 관세 부분감축 유형에 포함시킴으로써 협상타결로 인한 우리 농업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제12차 협상에서 양국은 협정문 및 상품양허안 등 협상결과를 실무적으로 최종 확정한 이후 협상결과를 발표한다는데 합의한 바 있다. 농업분야의 구체적인 협상 결과 역시 최종 확정 이후 발표할 예정이다.

향후 협정문 및 상품양허안 등이 양국간 법률검토 작업을 통해 확정되고, 이후 양국간 국내적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내년도에는 서명이 이루어지고, 발효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4. 한 · 멕시코 FTA

미국, 캐나다와 함께 북미 FTA의 구성국인 멕시코와는 '06.2월~6월까지 3차례의 SECA* 협상을 진행하였으나, 우리측은 포괄적 범위의 양허안을 제시한 반면, 멕시코측은 농수산물에 한정된 양허안을 제시함에 따라 협상이 결렬되었다.

* SECA(Strategic Economic Complementation Agreement : 전략적경제보완협정) : 상품의 범위를 한정하여 협상하는 방식으로 FTA보다 무역자유화 수준이 낮음

이후 '07년 7월 멕시코측은 SECA보다 자유화 수준이 높은 FTA로 변경 추진할 것을 제안해 옴에 따라 우리측이 이를 수용, '07년 12월에 제1차 한 · 멕 FTA 협상을 개시하데 이어 '08.6월 서울에서 제2차 협상을 개최하였다.

우리나라는 멕시코로부터 약 380억원('07년 기준)어치의 농산물을 수입하고 있다. 이는 전체 수입 농산물 시장에서 약 0.3% 정도를 차지하는 금액이며, 주요 수입품목은 쇠고기, 돼지고기, 커피, 맥주 등이다. 한 · 멕 FTA가 국내 농업에 미치는 영향은 거대 경제권인 미국, EU 및 중국에 비해서는 그다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지만 멕시코의 주요 수출품목인 쇠고기, 돼지고기의 국내 수입량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협상시 신중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5. 한·GCC FTA

* GCC란 걸프협력이사회(Gulf Cooperation Council)의 약자로 사우디아라비아. 쿠웨 이트, 아랍에미레이트, 카타르, 오만, 바레인 6개국으로 이루어진 중동지역의 경제 현력을 위한 지역현력기구를 말한다.

GCC 국가들로부터의 원유 수입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워을 확보하고, 성장하고 있는 이들 국가 내의 건설시장 진출과 여타 경쟁국에 의한 우리의 수출시장 잠식을 막기 위해 GCC와의 FTA를 추진하게 되었다.

양측은 가급적 2009년 말까지 협상을 타결한다는 원칙하에 협상에 임하고 있으며, 제1차 협상은 2008. 7. 9~10일간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협상은 상품, 서비스 · 투자, 원산지·통관, 정부조달, 규범 등 5개 분야로 진행되었으며, 제1차 협상 이후 양측은 상품양허안을 교환한 바 있으며, 제2차 협상은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11월에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GCC 측의 사정으로 일정이 다소 늦춰지고 있는 상태이다.

GCC와의 FTA에서는 농업분야의 민감성은 높지 않은 편이다. 오히려 GCC와의 FTA는 이들 국가 내의 고소득층을 향해 우리 농식품의 수출확대를 모색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대응할 예정이다.

6. 한·중국 FTA 공동연구

한·중 FTA 공동연구는 '05.3월~'06.10월까지 완료된 민간 공동연구결과를 토대로 '07.3월에 산·관·학 공동연구가 개시되어 현재까지 농업전문가 회의를 포함하여 총 8차례 회의를 개최하였다.

그동안 회의를 통해 양국의 농업현황, 교역상황, 농산물 품목별 경쟁력 비교 및 민간 공동연구 결과 명기 등 농업 보고서 문안의 대부분에 합의하고, 남은 쟁점 사항인 한국 농업의 민감성 반영 관련 문안에 대한 양국의 입장 차이를 좁히는데 노력을 집중하고 있다.

현재 농업 보고서에 "한국 농업의 민감성 관련 문안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우리측 입장을 어떻게 적절히 반영할 것인지가 공동연구의 주요 쟁점으로 남아 있다. 우리측은 농수산업 분야의 민감성에 비추어 이에 대한 적절한 보호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중국측에 지속적으로 강조할 계획이다.

한중 FTA 추진 여부는 산관학 공동연구 종료후 공동연구 보고서의 검토 및 이해관계자들로부터의 의견수렴을 거쳐 결정될 전망이다.

해외농정 단신

- 1. 최근 중국언론에 보도된 주요경제정보 보고 주중 농무관 김진진
- 2. 중국 식량자급율 2020년까지 95% 북경 중국농업대학 유학 농식품부 이윤숙
- 3. 새로운 광우병 규정이 또 다른 국민위생문제 초래 우려 로스앤젤레스 aT김학수
- 4. 캐나다정부, Farmer's Market 전국 Network 캐나다 농식품부 허태웅
- 5. EU 호주, '포도주의 지리적 표시' 상호 인정 국정원
- 6. 브라질 농축산부 한국에 해외협력연구센터 설치 농촌진흥청 박광근
- 7. 인도, 수입규제 조치 강화

국정원

8. 14차 기후변화총회(COP14) 결과 및 향후 전망

국정원

햇살에게 _정호승

이른 아침에 먼지를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내가 먼지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도 먼지가 된 나를 하루 종일 찬란하게 비취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 중국 언론에 보도된 주요 경제정보 보고

주중 농무관 김진진

(2008, 12, 8)

1. 중미 전략경제대화(SED), 양국 경제무역 협력 강화

- 12.5(금) 베이징(北京)에서 중미 SED가 막을 내리고 많은 성과를 거두었으며, 양국의 경제무역 협력 관계를 한층 심화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앞으로 동 대화의 틀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갈 것으로 보임
 - 중미 SED가 시작된 후 2년간 중미 양국은 189여개의 성과를 거두었음
 - 금번 대화에서는 양국간 경제 문제, 국제 금융 문제, 투자 및 무역 보호주의 반대, WTO 도하개발 어젠다 추진, G20 정상회담에서 이룬 합의 실천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음 (12.7 신화망)
- 중미 양국은 경제, 금융, 에너지, 무역, 투자 등 5가지 분야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는바, 특히 거시경제협력 및 금융서비스 분야에서 중미양국은 교류를 긴밀히 하고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취해나갈 것으로 다시 한 번 확인했으며 아래와 같은 합의를 이룸
 - 중국은 중국내의 해외투자 법인은행에 대해 중국 자본 은행과 같은 대우를 제공
 - 미국은 중국의 외환 보유고와 국고를 활용한 미 금융 분야에 대한 상업적인 투자를 환영(12.6 상해증권보)

2. 야오징위엔(姚景源), 中 경제 발전세 유지할 것

- 12.6(토) 야오징위엔 중국 국가통계국 이코노미스트는 현재 중국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리스크 예방 능력을 제고시키기만 한다면 중국 경제는 앞으로도 양호한 발전세를 이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며 아래와 같은 4가지 근거를 제시
 - 금년 1/4-3/4분기 경제성장률은 지난 30년간 평균 성장률을 웃도는 수준에 달함
 - 금년 2008년 목표치였던 취업률과 실업률을 달성
 - 물가 상승률의 효율적인 억제
 - 금년 1/4-3/4분기 국제 무역 흑자가 점차적으로 감소 (12.6 신화망)

3. 中. 중앙경제업무회의 개최

● 1년에 한 번 열리는 중국 중앙 경제업무회의가 12.8(월) 금일 개최되는바, 국제 금융위기가 확산되고 국내 경제가 급속히 하락하는 가운데, '성장유지, 발전 촉진'을 주제로 2009년 경제관련 업무를 최종적으로 조율할 것으로 보임 (12.8 신화망)

4. 中 농업은행, 저장성(浙江省)에 1.500억 위엔 대출 확대

- 12.3(수) 양쿤(楊琨) 중국 농업은행(農業銀行) 부행장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간 저장성에 1,500억 위엔 규모의 대출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힘
 - 이는 중소기업 지원에 투입되고, '삼농(三農, 농촌, 농민, 농업)'경제, 현대 제조업, 하이테크, 서비스업, 사회사업 등 분야에 투입될 것이라고 밝힘 (12.3 신화망)

5. 장지엔화(張健華). 농업대출 리스크 보상 시스템 마련

- 12.2(화) 장지엔화 중국 인민은행(中國人民銀行) 연구국 국장은 현재 농업대출 리스크가 커지고 마케팅 비용이 높아지는 가운데, 정부투자 확대, 신용화경구축, 리스크 분산, 담보 시스템 마련 등 4가지 방면에서 리스크 보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힘
- 또한 현재 중국 농촌 금융시스템은 국제 금융위기의 타격을 받고 있는바, 앞으로 농촌지역의 고속도로, 수리시설 등 기반시설 구축과 농민의료보험, 농민 보험 보급 등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밝힘 (12.3 신화망)

6. 판깡(樊剛). 中 경기부양책 빠르면 2010년 효과 나타날 듯

- 최근, 판깡 중국 중앙은행 통화위원회 위원은 중국 경제는 금년과 2009년 조정기를 거쳐 2010년이 되어야 안정을 되찾고 성장궤도에 다시 들어설 것이 라고 전망
 - 금년 4/4분기 중국의 GDP는 9%로 하락하고 2009년에는 8%대에 머물 것으로 전망하며, 4조위엔 규모의 경기 부양책의 효과는 2010년이 되어야만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힘
 - 이 밖에 11.14(금) 쑤닝(蘇寧) 중국인민은행(中國人民銀行) 부행장은 제5차 유럽 중앙은행 회의에서 중국이 발표한 4조위엔 규모의 경제부양책 가운데 1조 위엔의 자금원은 중앙재정예산으로 향후 2년간 막대한 재정적자에 시달리게 될 것이라고 밝힘 (12.2 중국경제주간)

중국 식량자급률 2020년까지 95%

북경 중국농업대학 유학(농식품부 이윤숙)

(출처: 인터넷 중국신문망 2008, 11, 13)

- 중국정부는 오는 2020년까지 식량자급률을 95% 이상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 장샤오창(張曉强) 중국국가발전개혁위원회 부주임은 13일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가식량안보에 관한 중장기전략계획<國家粮食安全中長期規 划綱要> (2008~2020년)을 공개했다.
- 중국정부는 10개 부처가 공동으로 마련한 이 전략계획은
 - 2020년까지 식량자급률을 95% 이상으로 유지하고
 - 1억2,000만ha의 농지를 확보하며
 - 식량생산능력을 5억4,000만t 이상으로 증대한다는 등을 목표로 설정했다.
- 중국은 1인당 곡물수요가 지난해 388kg에서 2010년 389kg, 2020년 395kg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요한 곡물도 2010년에는 5억2,500만t으로 2020년 5억 7,200만t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 따라서 중국정부는 식량 생산능력을 2010년까지 5억t, 2020년까지 5억4,000만t 이상으로 끌어올리기로 하고, 식량증산을 촉진하기 위한 인센티브제도를 도입 하는 등 각종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 장 부주임은 "정부는 2005년 곡물가격 급등이후 식량안보 계획입안에 착수 했으며, 세계적인 식량난의 여파로 계획 완성을 서두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 그는 "최근 또 다른 세계 식량난이 발생하고 있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식량부족 으로 폭동이 일어나고 있다"면서 "이는 식량안보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라고 설명했다.
- 장 부주임은 또 "내년에는 곡물 최저 수매가를 대폭 인상 할 것"이라고 말하고, 내년에 수매를 시작하는 금년도 수확곡물 중 소맥과 쌀의 최저 수매가를 인상하되, 인상폭은 내년에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조치에 의해 중국 국내 곡물 가격은 내년에 점차 국제가격에 접근할 것으로 전망된다.

새로운 광우병 규정이 또 다른 국민 위생문제 초래우려

로스엔젤레스 aT 김학수(Associated Press)

- 광우병을 식품공급 채널에서 분리시키기 위한 미국 연방규정이 엄청난 가축 사체를 목장에 방치하여 병균의 감염, 수자원의 오염 등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가 대두되고 있다.
- 2009년 4월 23일 발효될 FDA규정에 따르면 30개월 이상 소의 뇌와 척수는 가축과 애완동물의 사료로 사용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일부 사료용 동물처리 업체는 이미 금지된 조직의 제거에 들어가는 비용이 과다하여 죽은 가축의 처리를 하지 않거나 축산농민들에게 고액의 처리비용을 부과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 그 결과 많은 축산농민들은 지금과 같은 경제위기 속에 자신들의 목장이나 산야 등에 유기하거나 매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버지니아주의 Valley Proteins Inc.의 Gerald Smith 사장은 죽은 동물들을 유기하거나 방치하는 불법적인 행위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 7개주에 12개 사료용 동물처리업체를 운영하는 그는 2월부터 죽은 소를 취급하지 않기로 했다며, 가축 한두 당 부가적인 처리비용이 \$85~200이 들어가는 데 어떤 축산농가가 이를 부담 하겠는가 라고 반문한다.

- FDA에 따르면 이미 관행적으로 심각한 환경문제 없이 매년 수백만두의 가축이 매장되거나 유기되거나 퇴비로 만들어 진다고 한다. 그러나 문제는 새로운 규정이 축산농가들에게 추가로 수십 만두의 죽은 소들을 땅에 묻도록 할 것이라는 점이다. 특히 비육우 농장보다 나이든 소가 많은 낙농농가가 더 심각할 것이며 많은 경우 주거지역과 인접해 있다는 것도 문제이다.
- FDA의 새로운 규정에 대한 자체 환경평가에 따르면 죽은 가축을 유기하거나 부적절하게 매장하거나 퇴비로 만들 경우 악취를 초래 할 수 있으며, 토양과, 지하수 그리고 하천을 오염시키고, 해충과 짐승들을 유인하고 나아가 광우병을 보유한 감염매체가 생존해 있을 수도 있다 고 한다. 일부지역은 새로운 폐기 방안이 강구되지 않는다면 해로운 환경영향이 올수 있다고 한다. Iowa 대학교의 농업공학 교수인 Thomas Granville은 매장을 하려는 축산농가들은 지하수나 토양을 오염시키는 것을 피하기 위해 배수와 지질학적인 환경을 고려하여 매립 장소를 선정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캐나다 정부, Farmer's Market 전국 Network 구성

캐나다 농식품부 허태웅

- 캐나다 정부는 세계금융위기가 점차 실물경제로 확산될 조짐이 있고, 이와 함께 지역경제의 위축을 우려해 지역산업의 근간인 농산물에 대한 안정적 판로확보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Farmer's Market 지원을 강화하기로 함
- Lauzon의원(연방 국회의원)에 따르면, 농업인의 생산증대와 성장뿐만 아니라 도·농 지역사회의 교류활성화를 위해 전국적인 Farmer's Market Network 조직을 내년 1월에 출범하기위해 이에 대한 준비와 예산을 확보하기로 Ritz 캐나다 연방농식품부 장관과 합의했다고 밝힘.
- Farmer's Market 은"캐나다의 심장과 정신의 한부분"이라면서 캐나다 정부가 국가적 Network를 구축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은 일이라 천명. "Farmer's Market 이야말로 농업인의 Business를 발전시키고 지역 사회 경제를 부양시키는 최고의 방법"이라면서 우선 캐나다의 중심인 Ontario에 "Farmer's Market Ontario"를 금년에 출범시키고 점차 FMC(Farmer's Market Canada) 확대하는 한편, 전국적으로도 Farmer's Market을 늘려 FMC의 참여조직을 확대한다는 것.

- 또한, Farmer's Market를 통해 농산업과 도.농 지역사회간의 파트너쉽을 강화 하고, 지식인과 전문가집단과도 Network를 형성해 추진과제와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한 Community/Industry- Driven Solution을 찾는다는 것.
- 새롭게 탄생할 조직은 농산물 구매자(Shoppers)와 판매자(Vendors) 들에 대한 정기적인 정보수집을 통해 Farmer's Market 에 제공하는 역할도 병행할 예정임
- 이 조직에 대한 구체적인 역할과 구성 등은 "소비자들이 Farmer's Market에 쉽게 접근하는 방안 모색"에 촛점을 두고 지방정부와 연방정부가 함께 논의해 2009년 1월 까지는 조직화를 마무리 한다는 계획임

EU-호주, 포도주의 '지리적표시' 상호 인정

국 정 원(12.10)

- 최근 EU와 호주는 지난 94년의 와인협정을 개정 '09년 중반부터 지리적표시를 상호 인정키로 합의
 - * EU는 호주 와인수출의 절반(3億 9.700萬리터)을 차 지하는 최대 시장이며, 호주도 EU로부터 1,800萬리 터의 포도주를 수입



- 호주는 EU의 2,500개 이상 지리적 표시 사용을 금지하고, 협정발효 12개월이내에 협정문에 등재된 EU의 전통표현(클라레, 아우스레제 등) 사용 중단 등으로 EU 産 포도주를 보호
 - * 주류도매상이 이미 구입한 지리적표시 포도주는 협정발효 5년후부터 판매금지
 - EU도 호주의 112개 지리적표시 보호 및 16개 포도주 제조기술을 추가인정하고, EU에서 판매되는 호주산 와인의 라벨링 요건을 간소화하는 등 호주의 EU 시장 접근성을 보장
 - * 라벨 표현 알코올 함유량과 실제 함유량의 차이 허용치를 $0.5 \rightarrow 0.8\%$ 로 완화

브라질 농·축산부 한국에 해외협력연구센터 설치

농진청 박광근(KOTRA 상파울로 코리아비즈니스센터)

● 개요 및 세부내용

- 브라질 농업연구청(EMBRAPA)은 한국 농촌진흥청과 해외협력연구센터 설치와 관련된 MOU를 체결하고 "Labex"라 불리는 해외협력연구센터를 농진청에 설치하고 상호 연구원을 파견하여 농업과학기술 협력사업 수행 계획임
- 한국의 "Labex"는 미국과 유럽에 이어 3번째로 해외에 설치하는 연구소임

EMBRAPA(Empresa Brasileira de Pesquisas Agropecuarias)

- EMBRAPA는 브라질 농·축산업부 산하 기관으로 농촌 발전 및 농·축산업 기술 연구 등을 주목적으로 1973년에 설립됨
- 브라질 전역에 연구소와 사무실을 보유하고 있으며, 2,113명의 연구원(박사 74%, 석사 25%)이 있으며, 2007년 기준 10억 헤알의 예산 운용
- 주요 연구 및 기술개발 성과로 Cerrado(덥고 건조한 시바나 기후를 보이는 척박한 토양) 지역의 농지 개간으로 브라질 곡물의 40%를 생산하고 있으며, 브라질

열대기후 적합 콩 품종 개발로 세계 2위의 콩 생산국이 되었고, 쇠고기 및 돼지고기 생산량 4배 증가, 닭고기 생산량 18배 증가 및 우유생산량이 1975년 79억 리터에서 2006년 254억 리터로 증가함

- 국제협력으로 현재 37개국 64개 연구소와 협력관계를 맺고 있으며, 20여개 국제기구와도 공동연구 협약을 맺고 있음
 - 현재 미국 워싱턴과 프랑스 Montpellier에 해외 연구소를 두고 생명공학과 정밀농업 등을 연구하고 있음

● 전망

- 이번 협정을 통해 브라질은 한국의 위생검역 시스템을 완전히 이해하여 농축산 제품을 수출하겠다는 의지가 강함
- 이를 계기로 일본과 중국 시장으로의 단계적 진출을 계획하고 있으며, 한국의 복제기술 등 첨단 생명공학기술의 이전도 기대하고 있음
- 반면 농진청은 브라질을 비롯한 중남미 국가와의 농업기술 연구협력 교두보를 확보하고 풍부한 유전자원 및 바이오 연료 정보의 수집과 브라질 농축산업 통합 운영 시스템 및 가뭄에 강한 농지 개발 기술 등의 전수를 기대하고 있음

印度, 수입규제 조치 강화

국 정 원(12.15)

- 印度 정부는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 일환의 自國산업 보호를 위해 각종 수입 규제 조치를 발표
 - 공공유통부는 '09.2.12.부터 아연도금 강판·탄소강 등 11개 철강제품을 대상으로 印度공업규격(BIS) 취득을 의무화
 - 재무부는 지난 4월 관세를 폐지했던 철광석·철강제품 및 콩기름에 대해 11.18.부터 $5\%\sim20\%$ 의 관세를 부과
 - 상공부는 철강제품·자동차 부품 수입관리 제도를 도입(11.24.)한데 이어 열연강판(HS코드 7208)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착수(11.28.)
 - * 열연 강판 반덤핑 조사는 엣서르(Essar) 진달(Jindal) 이스팟(Ispat) 등 3社의 제소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으로, 韓・中・日・우크라이나 등 15개국이 대상

- 이와 관련, 日 JETRO는 인도 정부가 低價 중국산 제품의 과잉유입을 차단 하기 위해 강경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경제상황이 호전되지 않을 경우 보호 무역조치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예상
 - 對인도 관련제품 수출기업들은 印度공업규격 취득절차 · 방법 파악, 등 신속히 대응, 피해를 입지 않도록 면밀 대처
 - 보호무역조치가 주요국으로 확산 되는데 대비, KOTRA · 貿協 등과 공조하여 각국의 관련 법령·제도정비 움직임 주시

14차 기후변화총회(COP14) 결과 및 향후 전망

국 정 원(12.16)

- 14차 기후변화 당사국總會(COP14)가 12.1.~12.間 폴란드에서 개최되어 187개국 참가 '포스트 교토' 체제를 논의하고 議長성명 채택 후 폐막
 - 이번 COP14는 '포스트 교토' 협상의 중간점검 성격을 띤 총회로서 내년말 COP15에서 종결짓기 위한 제반사항 결정을 기대했으나
 - 최근 세계경제 악화에다 참가국들간 향후 美 오바마 정부의 기후변화정책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으로 논의 진전이 별무

く議長성명 내용 >

- o 각국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09.4.까지 UN(기후변화사무국)에 제출, UN은 이를 검토 후 '09.6.까지 각국에 구체적인 감축안 제시
- o 선진국은 2020년까지 90年 대비 25~40% 온실가스감축 필요성 인식
- o 개도국을 지원하는 기후변화 적응基金은 온실가스배출권(CDM) 사업 수익에서 2%를 갹출·조달

● 특이사항 및 향후 전망

- ① 美 오바마 新정부에 대한 기대감 고조
 - 오바마 新정부는 UN주도 기후협상을 존중한다는 입장 아래 존 케리 상원의원 등을 파견, 주요국과 물밑 협의하는 등 향후 협상 주도국으로 부상 예상
 - 이에 대해, EU는 美 新정부측에 '09.7. G8서미트(이탈리아) 직후 기후변화 정상회의를 갖자고 제의하는 등 對美 공조의사를 타진
- ② 내년부터 본격적인 '포스트 교토' 협상 전개 예상
 - '포스트 교토' 협상은 내년부터 네 차례 실무협상 이외, G8 서미트('09.7.) · UN 기후변화정상회의('09.2-3., '09.9.) 등을 통해 모멘텀을 확보하면서 COP15 ('09.12. 코펜하겐)에서 종결 목표
 - 특히, 그간 수세적이었던 美國이 新정부 출범(09.1)후 기후협상에 적극 나설 것으로 보여 美측 향배가 전체 협상에 영향을 미칠 전망

< '포스트 교토'협상 일정 >

o '09.3 : 1차 실무협상(독일 본)

o '09.6.: 2차 실무협상(독일 본), UN은 각국에 온실가스감축안 제시

o '09.7.: G8서미트 및 주요배출국 정상회의(이태리)

o '09.8.~9: 3차 실무협상, UN 기후변화정상회의

o '09.11.30.~12.11.: 4차 실무협상 및 COP15(코펜하겐)

- 온실가스배출 세계 10위인 우리나라는 '포스트 교토'체제 출범시 業界의 생산비 부담 가중은 물론 국제경쟁력 약화가 우려
- 美・EU・日 등 각국의 환경규제 정책 도입 등 기후변화 대응동향을 지속 모니 터링하는 한편, 대규모 장기 투자가 필요한 친환경 생산 인프라의 단계적 구축 등에 주력할 필요

세계농업 흐름분석

- 1. 아태지역의 식량/농업 상황 및 바이오연료에 대한 고찰 FAO 아태지역사무소 (이영구 번역/요약)
- 2. 뉴질랜드의 원예분야 자조금 제도 뉴질랜드 링컨대 유학(농식품부 이정삼)
- 3. 세계 곡물 수급 동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성명환

4. 농산품 품질에 대한 녹서(Green Paper) : 상품품질, 농업요건, 그리고 품질제도

발간: EU집행위원회, 번역: 농식품부 국제농업국

5. OECD의 농업지지정책 지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김병률/전문위원 이명기

『된다』와 『난, 안돼』

우리는 컴퓨터와 비슷합니다.

-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뇌》 중에서 -

아태지역의 식량/농업 상황 및 바이오연료에 대한 고찰

FAO 아태지역사무소(이영구 번역/요약)

동 보고서는 FAO 아태지역사무소에서 2008.11월 발행한 자료를 번역/요약한 자료임. 식량 및 농업분야 전문 UN 기구로 바이오연료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한 것은 주목할 만한 것임. 전반적으로는 바이오연료가 에너지 안보에 일부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환경문제 및 빈곤층에 대한 식량안보 문제 등을 고려하였을 때 전체적인 효과는 부정적이며, 아울러, 바이오연료에 대한 정부보조도 이러한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임.

IEA(2007) 자료에 의하면, 2005년 현재 전세계 에너지소비량중 10%정도가 농림산물 및 기타 유기물로 부터 유래된 에너지가 사용되고 화석연료의 비중은 81%을 차지하고 있으나, 정부보조 확대 등으로 바이오연료 사용이 급격히 증대되고 있는 추세임

1. 식량 및 농업 상황

가. 빈곤 및 영양부족 문제

2004년 기준으로 지난 10년간 하루 1달러이하로 생활하는 빈곤층은 17%가 감소되는 등 2015년까지 극빈층을 절반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새천년개발

목표(MDG) 달성에 긍정적임. 지난 10년간 아태지역의 식량생산력은 2배가 되었고 빈곤층 비율은 절반으로 줄었음. 그러나 아직도 세계 극빈층의 절반에 해당하는 6억4천1백만명이 아태지역에 있음.

남아시아의 경우 5세미만 저체중비율을 46%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비율임. 특히, 방글라데시, 인디아, 파키스탄은 세계 저체중 아동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음. 농촌지역의 저체중 비중이 도시지역의 2배임

나. 식생활 패턴의 변화

아태지역은 최근 빠른 경제발전으로 인한 소득증대, 도시화, 생활양식의 변화 등 으로 식생활 패턴이 바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주요 현상으로는 직장여성의 증가로 인한 외식증가, 육류/생선/낙농품 및 채소류에 대한 수요증가, 값싼 편이 식품의 수요증가 등임.

아시아 농업은 곡물생산, 특히 쌀 위주에서 점차 상업화 및 다양화하고 있으며 아울러 외부로부터의 식량 수입이 증가하고 있음. 특히, 수퍼마켓의 빠른 확산도 주목할 만한 현상이며, 중국의 경우 2015년까지 수퍼마켓의 비중이 2배로 늘어날 것이며 동아시아에서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

다. 최근 농산물시장 동향

최근 몇년동안 농산물 가격은 매우 크게 상승 하였으며, 인플레이션을 감안하여도 설탕, 쌀, 팎유 등의 가격은 2001년 이후 50% 이상 상승하였으며, 밀과 대두유의 경우 동 기간동안 30% 이상 상승. 옥수수의 경우 2006.9월에서 2007년 3월 기간에 40%이상 상승.

이러한 가격상승요인으로는 석유가격의 상승, 미달러화의 약세, 바이오연료에 대한 수요증가, 곡물재고량의 감소, 자연재해 증가 등임

라. 농업무역

아태지역은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농업 무역이 상당히 증가하였으나 양자 또는 다자간 무역협정 등은 약간 증가. 아태지역은 전세계 무역량의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아시아지역의 농산물 수입량은 전세계 거래량의 26%를 차지함.

특히, 중국 및 인도가 아시아지역 무역의 상당량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 두 국가는 중기적으로 곡물을 거의 자급할 것으로 전망됨.

마. 미래 전망

"OECD-FAO's Agricultural Outlook 2007-2016"에 의하면 차기 10년동안 농산물 가격은 인플레이션에 못 미치는 가격상승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였으나, 최근에는 농산물 가격이 인플레이션 보다 더 높게 상승할 가능성을 보여주는 많은 요인이 있음.

즉, 곡물 생산성 증가율의 정체, 재배면적 확대의 어려움, 수자원 부족 및 아태지역의 인구증가 및 소득증가로 인한 소비증가, 바이오연료에 대한 수요증가, 엘니뇨 등 자연재해의 증가 등을 그 주요 요인으로 들 수 있음.

2. 아시아지역의 바이오연료 개발에 대한 고찰

바이오연료 개발은 아시아에서 농산물 가격 및 농촌 소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요소중 하나로, 아시아지역에서의 바이오연료의 개발상황, 바이오연료가 국가소득, 에너지 안보 및 환경, 식량안보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과 바이오연료에 대한 보조금 지급문제 등을 살펴보고자 함.

가. 최근 농산물 가격의 급등요인 및 바이오연료의 영향

- 최근 몇년동안의 농산물 가격 급등의 주요 요인
- 국제유가의 상승으로 생산비 증가

- 중국, 인도 및 급성장 개도국의 소득증가로 축산물에 대한 소비증가 및 이로 인한 곡물소비 증가
- 미국 달러화의 약세로 달러표시 가격의 상승
- 과거 몇년간 지속된 낮은 가격으로부터의 회복
- 단기적으로는 곡물재고량이 낮아졌고, 헤지펀드 등 투기자금의 유입
- 바이오연료에 대한 수요 증가
- 바이오연료 수요가 국제 농산물 가격에 미치는 영향 바이오연료에 대한 수요증가는 오일 및 농산물 시장의 통합을 유도할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오일 가격이 안정적일 경우 농산물 가격의 변동성을 줄여줌 (즉, 농산물 가격이 상승할 경우 바이오연료 수요가 줄어 농산물 가격의 상승을 제한하고, 농산물 가격이 하락할 경우 바이오연료 수요가 늘어 농산물 가격 하락을 제한). 다만, 단기적으로는 거래비용 및 시간차의 발생으로 효과가 제한적임.
- 다만, 오일가격이 불안정할 경우 농산물 가격의 변동성을 높일 수 있음. 실제 경험상으로는 오일가격의 변동성이 상당히 높았으나, 아직까지는 오일 및 농산물 시장의 통합정도가 낮아 오일가격의 변동성이 농산물가격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함.

나. 아시아지역에서의 바이오연료 개발 동향

● 과거 5년동안 많은 아시아 국가들이 바이오연료에 대한 계획 및 전략을 수립하여 왔으며, 아시아의 중국과 인도의 경우 막대한 에너지 사용량 및 그 비중으로 보았을 때 국제 에너지 체계 변화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 IEA(2007)에 의하면 현재부터 2030년까지 에너지 소비 증대의 거의 절반이 중국 및 인도때문일 것으로 전망. 따라서 아시아지역에서의 바이오연료 개발이 세계 에너지 및 농산물 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임.

- 아시아지역에서 바이오연료 개발 움직임에 영향을 받는 주요 작물은 팎오일, 옥수수, 사탕수수, 대두, 카사바 및 코코넛 오일이며, 아시아지역은 바이오연료 생산확대의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의 생산 및 설비확대를 고려해 볼 때 바이오연료 생산은 당분간 늘어날 것임
- 중국 : 원유의 45%를 외국에서 수입하고 있고, 2010년이후 세계에서 가장 큰 에너지 소비국이 될 전망. 중국은 에탄올 생산을 2010년까지 약 6백만톤. 2020년까지 약15백만톤과 아울러 5백만톤의 바이오디젤을 생산할 계획임. 다만 식량안보문제를 고려, 주곡인 옥수수 등을 활용한 에탄올 생산 확대를 허가하지 않을 방침임 (2007년 현재). 그 대안으로 사탕수수, 수수, 카사바, 유채 등이 대체원료로 고려되고 있으며, 남동아시아에서의 원료작물 생산 가능성을 찾고 있음
- 인도 : IEA(2007)에 의하면 인도는 2030년에 세게 제 3위의 오일 수입국이 될 것으로 전망됨. 인도는 연료의 수입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에탄올 및 바이오 디젤의 사용을 장려. 2006년 정부는 연료에 에탄올 5% 혼합을 20개 주에서 의무화 함. 다음단계로 에탄올 혼합비율을 10%로 높일 계획임. 에탄올 생산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음. 바이오디젤 정책은 기본적으로 쓸모없는 땅에 자트로파 (Jatropha) 재배를 장려하고 있으며, 2012년까지 11.2백만ha의 불모지를 자트로파 식재에 할당하였는데 이는 20% 혼합디젤을 생산하기에 필요한 충분한 바이오 디젤을 공급하기 위함임. 현재 바이오디젤에 중앙정부에서는 세금을 면제해 주나, 주정부는 세제혜택을 주지 않고 있음.
- 인도네시아 : 2006년에 채택된 "국가 에너지 정책"에서 2005년-2010년에 2%의 바이오연료 혼입 가이드라인을 명문화하고, 2016년까지 5%로 확대하기로 함. 이에 따라 팜오일 재배에 약 3백만 ha, 자트로파 및 카사바에 각각 1.5백만 ha의 토지가 할당되었음. 또한 바이오연료 개발을 위한 인센티브가 제공되고, 59개나 되는 많은 회사가 바이오연료 제조 계약을 하였음. 그러나 식량안보에

대한 우려 및 조리용 기름의 급격한 가격상승은 팎오일에 대한 수출세금을 10%까지 높이게 됨.

- 말레이시아 : 많은 팜오일 자원을 갖추고 있으며, 수송 및 산업부문에서 B5 (5% 바이오연료 함유)의 사용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국가 바이오연료 정책"을 채택함. 2007.8월까지 약 10.29 백만톤의 생산능력을 갖춘 약 92개 바이오디젤 공장이 허가를 받았으나, 팎오일 가격의 상승으로 단지 7개 공장만이 가동됨. 약 12만톤의 바이오 디젤이 2006.8-2007.7월까지 주로 유럽 및 미국으로 수출됨
- 태국 : 화석연료 수입에 대한 의존도, 상당한 농업자원 보유 등의 이유로 바이 오연료 개발에 국가 우선순위를 부여함. 바이오디젤의 원료로 팜오일을 사용 하고 있는데, 2008년에 B2의 사용을 의무화하고, 2011년까지 B5의 사용을 목표로 하고 있음. 정부는 바이오연료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gashole (E5, 5% 에탄올이 첨가된 휘발유)에 대한 세금을 낮춤. 사탕수수, 당밀 및 카사바가 에탄올 생산의 원료로 사용됨. 2007년 중반 현재, 7개 에탄올 생산 공장에서 하루 약 4만5천리터의 에탄올이 생산됨. 정부는 전분함량이 높고, 생육기간이 짧아 쌀과 이어짓기가 가능한 카사바 품종개발 연구강화.
- 필리핀: 2006년의 바이오연료법에 의하면, 바이오연료의 사용을 2006년 1%, 2008년 2%, 2010년 5%, 2012년 12% 등 점진적인 사용확대를 의무화 함. 바이오 연료 정책은 코코넛 재배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또한 70만 ha에 자트로파를 재배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바이오연료법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음

다. 바이오연료에 미치는 영향

- 1) 국민소득
- 식량 및 에너지 순수입 또는 순수출에 따라 미치는 영향이 달라짐 아태지역에서는 호주 및 말레이시아가 가장 큰 식량 및 에너지 수출국이며,

인도네시아, 파푸아뉴기니, 베트남 등은 작지만 식량 및 에너지를 수출하고 있으며, 이러한 수출국이 바이오연료 붐의 영향으로 국민소득이 가장 크게 증가할 것임.

- 아태지역에서 절반정도가 식량 및 에너지 순수입국이며, 그중 일본 및 한국이 인구 1인당 가장 많은 식량 및 에너지를 수입하고 있으며, 아태지역의 빈곤국중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네팔, 파키스탄 등도 에너지 및 식량 순수입국이며 이들 국가의 피해가 클 것임.
- 나머지 국가들도 식량 또는 에너지 순 수입국이며, 이들 국가는 식량 및 에너지 무역수지의 상대적인 크기에 따라 소득증가 여부가 결정됨

2) 에너지안보

- 바이오연료 진흥정책을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중의 하나는 에너지안보를 높일 수 있는 가능성임. 세계 검증된 화석연료의 ♣가 7개국 (이란, 이라크, 쿠웨이트,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레이트연합, 베네주엘라)에 집중되어 있고 국제유가의 불안정성으로 에너지 안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 2007년 연구자료에 따르면, 현재 전세계 사탕수수, 옥수수, 밀, 수수, 사탕무우, 카사바의 생산량의 25%가 에탄올 생산에 사용되더라도, 동 에탄올 생산량은 단지 21%의 석유 수요에 해당된다고 함.
- 따라서 바이오연료가 소득증대에 따라 증가하는 에너지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정치적으로도 거대한 양의 식량을 바이오연료 생산으로 전환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특히 에너지 및 식량 순수입국은 에너지 안보를 달성하기가 특히 어려우며, 만일 식량을 수입하는 국가가 식량대신 바이오 연료생산으로 전환하더라도 이는 단순히 연료수입을 더 많은 식량수입으로 대체하는 것임.

● 그러나 바이오연료 생산 증가는 많은 국가에 있어 에너지 안보를 향상시킬 수 있으며, 에너지 원료의 다양화는 에너지 안보에 도움이 될 것임. 그러나 바이오연료 생산 증가에 따른 환경 및 식량안보에 대한 잠재적 비용이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임

3) 환경

- 바이오연료는 화석연료에 비하여 온실가스방출을 줄여줄 것으로 기대되었 으며 최근 지구온난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여건에서 이는 중요한 장점임. 그러나 연료의 연소과정에서 직접 발생하는 가스 방출은 물론, 바이오연료에 필요한 농산물의 생산과정에서 비료, 관개 및 다른 투입재들로부터 발생하는 가스 방출을 함께 고려하였을 때, 최근의 연구결과는 이산화탄소 방출절감 효과가 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적다는 것을 발견함.
- ▲ 어떤 연구결과는 바이오 연료 작물의 재배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일종인 N2O의 방출은 바이오연료 사용으로 부터 오는 온실가스 감축효과 보다 더 크다고 제시. 따라서 지구온난화와 관련하여 바이오연료의 효과는 명확하지 않고, 작물에 따라 다른 효과를 나타냄
- 온실가스 외에도 바이오연료는 환경측면에서 다른 효과를 발생. 아시아지역 에서 보면 바이오연료 생산증가는 산림면적의 감소로 이어지며, 이는 이산 화탄소 방출 증가, 서식지 파괴에 따른 생물다양성의 감소로 이어짐. 아울러 수자원 고갈 , 농약오염의 증가, 토양침식 증가, 바이오엔탄올의 연소에 따른 호흡기질환 문제 등도 바이오연료의 부정적인 측면임. 최근 스위스의 한 연구 결과 (Zah et al.)에 따르면 작물로 부터 생산된 바이오연료의 사용에 따른 총 환경적 효과는 저유황 휘발유보다도 더 나쁜 것으로 추측됨.

4) 바이오연료에 대한 정부 보조 또는 보호는 필요한가?

- 정부보조는 비용보다 혜택이 클 때에만 합리적이며, 이 경우에도 보조금이 교육 또는 인프라 등 다른 곳에 사용되었을 경우와도 비교해야 함. 또한 관련된 정보 및 위험성을 잘 알고 있는 대규모 공장에 보조하는 것이 정당 한지도 의문임.
- 바이오연료를 생산공장에서 소매점까지 운송하는데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 하는 것은 정부의 역할이 될 수 있음. 최근 연구결과에 의하면 미국에서 휘발유 1갤런을 운송하는데0.03-0.03\$의 운송비용이 드는데 비하여 에탄올의 경우 0.13-0.18의 운송비용이 소요. (5-6배). 또한 의무적 혼입비율 등 바이오 연료에 대한 표준을 정하는 것도 정부의 역할이 될 수 있음.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간섭도 현실적인 오일가격 및 바이오연료에 사용되는 농산물가격의 경쟁력이 있을 경우에만 고려될 수 있을 것임
- 시장에서 가격으로 환산되지 않는 환경적 혜택도 정부보조를 정당화할 수 있으나 바이오연료의 환경적 혜택이 긍정적인지는 명확하지 않음. 에너지 안보도 정부보조를 정당화할 수 있는 근거이나 이것을 정량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아울러 에너지안보에서의 긍정적 측면을 고려할 때, 빈곤층에 대한 식량안보에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가 반드시 고려되어야 함.
- 빈곤층에 부정적 효과가 미치지 않게 하는 가장 최선의 방법은 단위 생산량당 생산비용을 줄여 소비자를 위한 가격을 낮추고 생산자는 더 많은 소득을 얻도록 하는 것임. 즉, 신품종 개발 등에 대한 연구강화, 농촌 인프라 확충, 농촌 교육 강화 등은 바이오연료에 대한 정부보조보다 더욱 빈곤경감 및 국민소득 증대에 도움이 될 것임.

5) 식량가격의 상승이 소득의 재분배에 미치는 영향

- 바이오연료에 대한 수요증가는 토지, 물, 비료 및 노동력 등 투입재에 대한 경쟁 증가 및 국제시장을 통하여 식량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짐. 이는 식량 순생산자와 순소비자간에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침. 농촌지역 거주자 중에서도소규모농가 및 노동자들의 경우 식량순소비자인 경우가 많은데, 특히 방글라데시, 인디아, 인도네시아 같은 국가들의 경우 농지를 소유하지 못한 농가가 많음.
- 일반적으로 높은 식량가격은 식량 순소비자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많은 나라에서 빈민층의 경우 지출의 70-80%가 식품에 소비되고 있음. 식량 순생산자인 농가의 경우 높은 식량가격으로 혜택을 볼 것이나, 대규모 농가의 혜택이 소규모 농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클 것임.
- 따라서 높은 식량가격이 불평등에 미치는 효과는 사회경제적 구조 및 국제 시장에서 식량 순수입국 또는 순수출국 등에 따라 달라질 것임. 농가당 경지 면적이 상대적으로 큰 태국이나 경지가 균형적으로 배분된 중국의 경우에는 빈곤경감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됨. 그러나 방글라데시, 인디아, 인도네시아, 필리핀의 경우처럼 농지가 없는 농민이 많은 경우 소득분배에 부정적 효과를 미칠 것임. 식량순수입국에서 농지분배가 불평등 할수록 빈곤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음.
- 비록 국가별 특성에 따라 다르나, 아태 지역 전체적으로 볼 때 식량가격의 상승은 식량안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임.

6) 바이오연료와 고용창출

바이오연료의 생산은 농장 및 생산공장에서 고용을 창출할 것이며, 이는 빈곤층을 타깃으로 할 경우 식량안보를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음.그러나 이 경우에도 농지 및 자본을 다른 곳에 사용했을 경우와 비교해야 함.

- 즉, 바이오연료의 고용 및 식량안보에 대한 영향 측정에 있어 중요한 이슈는 바이오연료 생산의 상대적 노동 집약성임.
- 바이오연료 생산증가로 인한 고용은 바이오연료에 필요한 농작물을 생산하기 위한 노동력 증가 때문임. 중요한 것은 농지를 타용도로 사용했을 경우와 비교하여 바이오연료 작물 생산시 단위면적당 노동요구량임. 따라서 이전에 해당농지에 어떤 작물을 재배했는지에 따라 고용창출 여부가 결정됨 (예를 들면 유휴지에 바이오연료 작물을 재배했을 경우 고용창출 효과가 있으나, 이전에 같은 토지에 바이오작물보다 더 노동집약적인 작물을 재배했을 경우 에는 고용창출 효과가 없음)
- 소규모 바이오연료 생산이 자본집약적인 대규모 바이오연료 생산에 비하여 좀더 많은 고용을 창출할 것임. 그러나 현재 브라질 및 미국의 경우 바이오 에탄올 및 바이오디젤 생산공장이 자본집약적 형태이며 상대적으로 빈곤층이 아닌 훈련된 노동자를 필요로 하고 있는 상황임
- 그러나 소규모 바이오연료 생산이 좀 더 많은 고용을 창출한다고 하나 소규모의 경우 일반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짐. 그러나 바이오연료 생산이 에너지 접근이 어려운 소규모 마을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이러한 경쟁력은 중요한 이슈가 아님.

7) 빈곤층의 토지에의 접근

● 바이오연료 생산이 빈곤층의 토지접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있음. 바이오연료 생산은 때때로 자본집약적이며 대규모이며, 이러한 대규모 회사가 고용창출 및 기타 사회적 편익을 공급할 수 있으나, 바이오연료 생산전에 해당 토지를 사용하고 있는 자에게도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함

라. 요약 및 결론

- 일반적으로 바이오연료에 대한 수요는 식품가격을 높이고, 이는 빈곤층의 식량안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나, 이는 생산 환경, 사회경제적 요인 등에 따라 국가별로 다를 수 있음. 바이오연료 생산이 어느 나라에서는 고용을 늘릴 수 있고, 또 다른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 있으며, 높은 식품가격은 어떤 경우 에는 빈곤층에 유익하며 (순 식량 판매자인 경우), 어떤 경우에는 해로울 수 있음 (식 식량 구매자인 경우). 아시아지역 전체적으로는 일반적으로 빈곤층이 순 식량 구매자이기 때문에 식량안보 및 빈곤 문제를 악화시킬 것임.
- 바이오연료가 빈곤층의 식량안보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줄이기 위하여 취할 수 있는 정부 조치로는 노동집약적인 바이오연료 작물 재배를 권장하는 것임. 이는 농지 없는 농부가 많은 국가에서 임금을 올리는 효과가 있음. 또 다른 가능한 정부조치로는 유휴지를 이용하여 바이오연료 작물재배를 장려하는 것인데 이는 환경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
- 바이오연료의 장려로 에너지안보를 높일 수 있으나 이는 빈곤층의 식량안보를 해치는 대가로 얻게 되는 것임. 아시아지역의 경우 태국처럼 빈곤층이 식량 순판매자인 경우 바이오연료로 인하여 빈곤층이 이득을 볼 수 있으나 일반적 으로는 빈곤층의 식량안보에 해로움.
- 현재 정부의 보조 없이는 대부분의 바이오연료 생산이 경쟁력이 없는 상태이며, 경쟁력이 있는 경우에도 환경적 영향 및 빈곤층의 식량안보 문제 등을 들어 바이오연료를 위한 토지사용을 규제하는 경우도 있음. 예를 들면 중국의 경우 에탄올 생산을 위한 곡물사용을 금지하였음.

뉴질랜드의 원예분야 자조금 제도

뉴질랜드 링컨대 유학(농식품부 이정삼)

1. 상품자조금법에 근거하여 품목별로 자조금 사업 실시

- 뉴질랜드는 1950년대부터 과수자조금법(Orchard Levy Act 1953), 채소 자조금법(Vegetable Levy Act 1957) 등 개별 품목별로 자조금법을 제정하여 의무자조금 제도를 시행해 왔었다.
- * 자조금 제도:특정사업의 수행으로 혜택을 받는 자가 그 사업의 효과를 인식하고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을 스스로 부담하는 제도(출처: 한국자조금연구원, www.checkoff.org)
- 이 후 1990년에 상품자조금법(Commodity Levies Act 1990, 이하 자조금법)을 제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품목별 자조금 시행령(Levy Order)을 통해 품목별 생산자 대표조직이 자조금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 자조금법에서 상품은 농산물, 임산물, 광물 또는 자연제품(wild product)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거출된 자조금의 사용 용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 * 자조금 사용용도 : 1)생산 및 마케팅 연구, 시장개발, 판촉활동, 동식물 보호, 품질 보증 프로그램. 교육 및 훈련. 조직운영 2) 상업목적의 활동(commercial or trading activity)에는 사용금지. 단 상업목적의 활동이 대부분의 자조금 납부자에게 혜택을 주고 무임승차자를 발생시키지 않으며 대부분 납부자의 동의(considerably more than half)를 얻었을 경우에 한하여 농림부 장관의 허가하에 실시 가능

- 원예 분야도 주요 품목은 모두 품목별 생산자 대표조직이 구성되고 있고, 자조금법에 근거하여 생산자 단체가 자조금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 자조금법은 6년 주기로 자조금 사업 계속여부를 생산자 투표를 통해 결정토록 요구하고 있으나 모든 품목에서 자조금 사업이 지속되고 있다.
- 2008년 12월 현재 자조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원예분야 대표 생산자 단체는 원예뉴질랜드(Horticulture NZ)와 뉴질랜드포도생산자협회(New Zealand Grape Growers Council Inc) 등이 있다.
 - 특히 원예 뉴질랜드는 포도, 버섯을 제외한 모든 원예품목을 대표하는 단체 (umbrella organization)로서 동 단체 내에 품목별 생산자 그룹이 구성되어 있다.

붙임 1

뉴질랜드 상품자조금법의 핵심 조항 및 주요 내용

 제1장 품목별 자조금 시행령(Levy orders)						
항 목 주요 내용						
상품 자조금 부과 가능 근거조항	정부는 자조금 시행령을 통해 상품에 대해 자조금을 부과할 수 있음					
품목별 시행령 신청 요건 규정	생산자 투표시 참석자의 과반수 이상 찬성과 찬성자의 생산량/생산액/생산면적/기타 생산지표가 품목 전체 생산량/생산액/생산면적/기타 생산지표의 과반을 점유해야 한다는 조건 등 기타 다수의 요건 명시					
품목별 시행령에 명시해야 할 사항	자조금 사업 조직명, 자조금 거출 상한, 자조금을 납부대상, 자조금 납부 면제 대상, 자조금 사업 목적 및 사업 방법 등					
시행령의 효력	자조금 납부 대상자의 납부 강제화 및 자조금 미납시 조치 등					
양심적 거부자	양심적 또는 종교적 이유로 자조금 납부를 거부하는 자에 대한 특례조항을 반드시 명시토록 규정					
재정 조항	자조금 사업 재정은 반드시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함					
자조금의 사용	자조금의 사용용도를 규정하고 있으며, 규정외의 상업목적의 목적으로 사용 시에는 농업부 장관의 허가 필요조항 등					
분쟁조정	시행령에 명시되어야 할 분쟁조정 기구 및 방법을 규정					
시행령은 6년 후에 효력상실	시행령이 만들어진 6주년 전날 까지 유효 조항 등					

제2장 기타

기록물 관리, 회계감사, 산업대표조직의 업무 평가, 조사권한(Power of search), 영장효력 (Powers conferred by warrant), 영장발부(Warrant to be produced), 영장 집행자의 기타 의무, 영장집행 방해 금지, 벌금, 연차보고서

2. '07년부터 채소 및 과수 자조금 시행령으로 통합하여 실시

- 품목별 자조금 사업은 상품자조금법(Commodity Levies Act 1990)에 따라 해당 품목을 대표하는 단체가 생산자 결의를 거쳐 품목별 자조금시행령(Commodity Levies Order)을 만들고 이에 근거하여 자조금을 거출하여 실시하고 있다.
 - 뉴질랜드는 대부분의 품목이 해당 품목을 대표하는 견고한 생산자 단체가 결성되어 있으며, 동 단체에서 자조금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 원예분야은 2007년 7월부터 기존 채소 자조금 시행령과 과수 자조금 시행령이 채소 및 과수 자조금 시행령(Commodity Levies (Vegetable and Fruit) Order 2007)으로 통합되어 원예분야 전체를 아우르는 단일 자조금 제도를 마련하였다.
 - 단, 포도는 동 시행령에 포함되지 않으며 2004년에 발효된 포도 자조금시행령 (Commodity Levies (Winegrapes) 2004)에 따라 운영된다.
 - 감귤(Satsuma Mandarins), 아스파라거스, 네이블 오렌지, 여름과일(자두, 살구 등), 사과 및 배, 아보카도, 블루베리, 블랙커런트, 타마밀로(Tamallos), 페이조아 (Feijoas)는 동 시행령과는 별도로 품목별 자조금 사업이 추가로 운영되고 있다.
- 원예분야의 대표적인 생산자 대표조직인 원예 뉴질랜드(HortNZ)에서 시행하는 채소 및 과수 자조금 시행령은 전체 38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붙임참조]
 - 동 시행령은 상품자조금법에서 명시토록 규정하고 있는 자조금 납부대상, 거출액, 거출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 자조금 수납기관은 거출 자조금의 10%를 수납비용으로 취할 수 있으며, 자조금 거출 상한은 채소 0.45%, 신선 토마토0.675, 기타채소 0.15, 가공채소 0.5625, 감자 0.75, 과일 0.15 이다.

붙임 2

채소 및 과수 자조금 시행령 핵심내용

 항 목	주 요 내 용		
1. Title	시행령 이름: Commodity Levies (Vegetable and Fruit) Order 2007		
2. Commencement	발효시기: 동 시행령은 2007년 7월 23일부터 발효		
3. Interpretation	용어해설: 채소, 과일 등의 정의		
4. Scope of order	시행령의 적용범위:fruit, fresh tomatoes, fresh vegetables, other vegetables, potatoes, process vegetables.		
5. Levy imposed	자조금 부과: 채소와 과일에 부과되며 HortNZ에 납부		
	자조금 납부의 책임		
6. Growers primarily responsible for payment of levy 4. W산자가 일차적으로 자조금 납부 책임: 납부 면제를 받는 상 없음			
7. Responsibility of collection agents for payment of levy 자조금 수납기관의 책임: 생산자로부터 상품을 구매하거나 대매, 가공하는 기관이 자조금을 납부해야 하며, 자조금 수납기관산자로부터 구매대금에서 공제하는 형식 등으로 자조금을 받았음.			
8. Collection fee	수납비용: 거출 자조금의 10%이내		
	자조금 결정		
9. Rate of levy	자조금 부과율: 각각 품목별로 동일 비율로 적용		
10. Basis for calculation of levy	자조금 부과 기준: 첫 번째 단체의 판매액, 수출은 FOB 기준		
11. Maximum rate of levy	부과율 상한: 채소(0.45%), 신선 토마토(0.675), 기타채소 (0.15), 가공 채소(0.5625), 감자(0.75), 과일(0.15)		
12. HortNZ must set levy rates	HortNZ가 자조금 부과율을 결정해야함: 품목별로 부과율 명시 방법을 명시, 예) 과일은 매년 HortNZ 정기 총회에서 과일 생산자 대표들의 투표로 결정		
13. Notification of rates of levy	부과율의 통지: HortNZ가 각 품목의 자조금 부과율을 생산자들에게 알리는 구체적인방법(특정 잡지, 이메일 등)을 명시		

항 목 주 요 내 용					
	자조금의 납부				
14. When levy payable by growers	생산자의 납부기한: 생산자에 의해 직접 판매, 가공, 수출시 납부시기는 6월 30일, 12개월 단위로 납부. 최종 납기일은 9월 30일				
15. When levy payable by collection agents	수납기관의 납부기한: 생산자로부터 자조금을 회수한 날. 최종납기 일은 생산자로부터 자조금을 회수한 달의 다음달 20일				
16. Additional levy if levy not paid in time	납부 연체료: 첫달은 10%, 이후 매달 2%				
17. Conscientious objectors	양심적 거부자: 양심적 또는 종교적 이유로 HortNZ에 자조금을 납부하기 거부하는 자는 농림부 장관에게 동일 금액을 납부. 농림부 장관은 동일 금액을 HortNZ에 납부				
	HortNZ에 의한 자조금의 사용				
18. HortNZ must spend levy money	HortNZ가 자조금 사용: HortNZ는 자조금을 직접 사용해야 함. 채소의 경우에는 HortNZ내의 품목별 생산자단체에 자조금을 주고 각 단체가 자조금을 사용케 할 수 있음. HortNZ는 상업적 목적으로 자조금을 사용할 수 없음				
19. Purpose for which levy money may be spent	자조금의 사용목적: 연구개발, 품질 보증 발전, 시장 개발 및 판촉, 교육 및 정보, 생산자 조직화(grower representation), HortNZ 운영				
20. Consultation on spending levy money	자조금 사용방법 협의: HortNZ는 각각의 품목단체와 자조금 사용방 법에 대하여 협의를 해야하며 협의 하는 방법을 명시				
フ -	록물 관리와 HortNZ에 제공된 정보의 비밀보장				
21. Returns must be supplied to HortNZ	HortNZ에 대한 답변 의무: 생산자 또는 자조금 수납기관이 HortNZ에 자조금 납부시 거출 자조금 품목 및 금액을 명시해야 함. 수납기관에 의한 납부시 생산자의 이름도 명시. 생산자 또는 수납기관은 HortNZ로부터 자조금 납부에 대한 서면 정보 요구서를 받을시 이에 응해야 함				
22. Records to be kept by growers	생산자의 기록유지: 자조금 납부금액, 판매액, 자조금 납부기관이 주 소와 이름				
23. Records to be kept by collection agents					
24. Records to be kept by HortNZ	HortNZ의 기록유지: 품목별 자조금 거출 정보, 자조금 사용정보 등				

항 목	주 요 내 용
25. Records must be retained for 2 years	기록은 2년간 보관되어야 함: 자조금이 납부된 날로부터 최소 2년간 보관되어야 함
26. Confidentiality of information	정보의 비밀보장: 자조금 거출 목적, 학술목적, 적법 절차 등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정보제공 가능
	감사(Compliance auditing) 급여
27. Remuneration of persons conducting compliance auditing	감사 수행자에 대한 급여: 상품자조금법 15조에 의해 선임된 감사는 농림부장관이 정한 수당을 HortiNZ로부터 받아야함.
	분쟁조정
28. Appointment of mediators	조정자 선임: 자조금 납입여부 및 금액에 대한 분쟁조정
29. Remuneration of mediators	조정자 급여: 분쟁 당사자들이 합의한 요금과 수당지급. 분쟁당사자들이 급여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Arbitrators' and Mediators' Institute of New Zealand 대표가 급여결정 후 분쟁당사자들이 지급
30. Conferences under control of mediator	조정자 주재 협의: 조정자는 분쟁 당사자가의 협의체를 구정하고 협 의를 주재해야 함
31. Conferences to be held in private	협의는 개인적인 사항: 분쟁당사자 만이 협의에 참가(32항의 경우에 는 예외)
32. Representatives	대표자: 조정자는 분쟁 당사자의 대표자를 협의에 참가 시킬수 있음
33. Right to be heard	협의에 대해 알 권리: 분쟁 당사자와 대표자는 협의에 대해 알 권리 가 있음
34. Evidence	증거: 중재자는 증거를 직접 수집하거나 증거를 요구할 수 있음
35. Mediator may resolve dispute in certain cases	중재자가 분쟁을 결론낼 수 있음: 당사가간 합의하지 못하거나, 중재 가가 합의가 어렵다고 판단시 중재자가 결론을 내리고 이를 당사자 에게 통보할 시 당사자는 이를 따라야 함
36. Costs of mediation	중재비용: 중재에 관련된 당사자 각자의 비용은 각자 부담
37. Appeal to District Court	지방법원에 항소: 조정자의 결정에 만족하지 못할시 분쟁 당사자는 지방법원에 항소 할 수 있음. 지방법원은 조정자의 결정을 확인, 변경, 번복 할 수 있음.
38. Revocation	폐지: 채소 자조금 시행령(2001), 과수 자조금 시행령(2001)

세계 곡물 수급 동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성명환

미국 농무부(USDA)가 지난 10월 10일 발표한 세계 곡물 수급 전망에 의하면, 2008/2009년도 세계 곡물 생산량은 전년대비 42% 증가한 22억 771만 톤, 소비량은 3.4% 증가한 21억 8313만 톤, 그리고 기말재고량은 7.1% 늘어난 3억 7,212만 톤, 기말재고율은 1709%로 전망되었다.

l. 전체 곡물

2008/2009년도 세계 전체 곡물 생산량은 전년대비 42% 증가한 22억 771만 톤이될 것으로 전망된다. 쌀, 소맥 등의 생산량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소맥생산량은 전년대비 11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2008/2009년도 총공급량은 전년 기말재고량 3억 4,754만 톤과 생산량을 합친 25억 5,525만 톤으로 전년대비 39%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전년보다 9,671만 톤 늘어난 수준이다.

2008/2009년도 세계 곡물 소비량도 전년보다 3.4% 증가한 21억 8,313만 톤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2008/2009년도에는 생산량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어 생산량이 소비량을 약 2,500만 톤 정도 초과할 것으로 보인다.

세계 독물 교역량(수출량 기준)은 세계적인 성장둔화로 전년보다 20% 감소한 2억 6,315만 톤이 될 것으로 전망되며, 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1.9%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2008/2009년도 기말재고량은 전년보다 7.1% 증가한 3억 7,212만 톤으로 전망된다. 기말재고율은 2007/2008년도보다 0.5% 포인트 높은 170%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백만 톤 생 산 량 소 비 량 -기말재고율 % 18.0 2,240 2,200 17.5 2,160 2,120 17.0 2,080 16.5 2,040 2,000 16.0 1,960 15.5 1,920 1,880 15.0 2006/07 2007/08(추정) 2008/09 (9월전망) 2008/09 (10월전망)

그림 1. 전체 곡물의 생산량, 소비량, 기말재고율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463, October 10, 2008.

표 1. 전체 곡물의 수급 동향 빛 전망

단위: 백만 톤

	'06/'07	'07/'08	'08/'09(전망)		변동율(%)	
구 분	06/ 0/	(추정)	'08.9	'08.10	전년대비	전월대비
생 산 량	2,005.78	2,118.12	2,194.96	2,207.71	4.2	0.6
공 급 량	2,394.49	2,458.54	2,541.38	2,555.25	3.9	0.5
소 비 량	2,054.08	2,111.00	2,174.11	2,183.13	3.4	0.4
교 역 량	259.94	268.52	264.10	263.15	△2.0	△0.4
기말재고량	340.41	347.54	367.27	372.12	7.1	1.3
기말재고율(%)	16.6	16.5	16.9	17.0		

2. 쌀

2008/2009년도 쌀 생산량은 2007/2008년보다 0.7% 증가한 4억 3,323만 톤 수준으로 전망된다. 중국, 태국,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지역 주요 쌀 생산국의 생산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미국의 생산량도 전년보다 33% 정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었다.

2008/2009년도 쌀 소비량은 전년대비 0.7% 증가한 4억 3,038만 톤으로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지난해 4억 2,748만 톤보다 약 290만 톤 정도 많은 수준이다.

2008/2009년도 세계 전체 쌀 교역량은 전년보다 6.7% 줄어든 2,833톤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이며 생산량에서 교역량이 차지하는 비중은 6.5%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수출량의 경우 베트남은 전년대비 9.5% 증가할 전망이지만 최대 쌀 수출국인 태국의 수출량은 5% 정도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전세계 쌀 수출량 중에서 태국이 33.5%, 베트남 18.4%, 미국이 12.2%를 차지하여 이들 3개국의 비중이 64.1%에 이를 전망이다.

세계 쌀 기말재고량은 전년대비 3.79% 증가한 8,054만 톤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이며 2008/2009년도 기말재고율은 18.7%로 전년도보다 약 0.5% 포인트 상승할 전망이다. 미국의 재고량은 80만 톤으로 전년대비 14.9% 나 줄어들 것으로 보이며 베트남도 20.4% 감소할 전망이다. 반면 태국, 인도네시아, 중국, 일본의 재고량은 전년대비 각각 23.0%, 4.7%, 5.6%, 10.0%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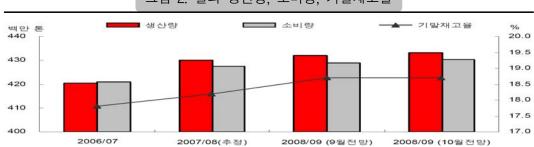


그림 2. 쌀의 생산량, 소비량, 기말재고율

표 2. 쌀(정곡기준) 수급 동향 빛 전망

단위: 백만 톤

	'06/'07	'07/'08	'08/'09(전망)		변동율(%)	
구분	06/ 0/	(추정)	2008.9	2008.10	전년대비	전월대비
생 산 량	420.41	430.19	431.98	433.23	0.7	0.3
공 급 량	496.09	505.17	509.24	510.92	1.1	0.3
소 비 량	421.10	427.48	428.88	430.38	0.7	0.3
교 역 량	31.30	30.37	28.25	28.33	△6.7	0.3
기말재고량	74.98	77.69	80.36	80.54	3.7	0.2
기말재고율(%)	17.8	18.2	18.7	18.7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463, October 10, 2008.

3. 소맥

미국, 캐나다, 호주, 유럽, 중국, 러시아 등 주요 소맥 생산국의 생산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2008/2009년도 세계 소맥 생산량은 전년보다 11.3% 증가한 6억 8,020만 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2008/2009년도 세계 소맥 소비량은 2007/08년보다 6.1% 증가한 6억 5,558만 톤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EU, 러시아의 소비량이 많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그중에서도 미국은 전년대비 22.4% 늘어날 전망이다.

소맥의 국제 교역량은 전년대비 7.3% 증가한 1억 2,318만 톤으로 사상최고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2008/2009년도 미국의 소맥 수출량은 전년보다 20.9% 줄어든 2,722만 톤으로 전체 수출량의 22.1%를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캐나다의 수출량은 전년보다 233만 톤 늘어난 1,850만 톤, EU도 전년보다 47.2% 늘어난 1,800만 톤으로 전망된다.

2008/09년 기말재고량은 1억 4,441만 톤으로 전년보다 20.5% 증가될 것으로 보이는데 미국과 EU의 재고량이 전년대비 각각 96.8%, 26.0% 증가할 전망이다. 따라서 기말재고율도 지난해의 19.4% 에서 22.0%로 2.6% 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표 3. 소맥 수급 동향 및 전망

단위: 백만 톤

		'07/'08		'08/'09(전망)		변동율(%)	
구 분	'06/'07	(추정)	2008.9	2008.10	전년대비	전월대비	
 생 산 량	596.30	610.88	676.28	680.20	11.3	0.6	
공 급 량	743.94	737.90	794.77	800.00	8.4	0.7	
소 비 량	616.93	618.10	654.88	655.58	6.1	0.1	
교 역 량	111.20	114.85	122.88	123.18	7.3	0.2	
기말재고량	127.02	119.80	139.89	144.41	20.5	3.2	
기말재고율(%)	20.6	19.4	21.4	22.0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463, October 10, 2008.

4. 옥수수

미국, 아르헨티나의 옥수수 생산량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어 2008/2009년도 전세계 옥수수 생산량은 전년보다 0.7% 줄어든 7억 8,525만 톤을 기록할 전망이다. 반면, EU의 생산량은 전년대비 24.9% 대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08/2009년의 소비량은 전년대비 3.0% 증가한 8억 37만 톤이 될 것으로 보이며 미국, 멕시코, 중국의 소비량이 전년대비 각각 3.4%, 1.6%, 6.0%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2008/2009년도에는 소비량은 생산량을 약 1,510만 톤 정도 초과할 전망이다.

2008/2009년 세계 옥수수 교역량은 전년보다 12.4% 감소한 8,387만 톤이고, 생산 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7%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체 수출량 중 미국과 아르 헨티나가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60.5%, 13.1%로 이들 두 국가가 전체 수출량의 73.7%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의 수출량은 전년대비 17.9%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며 아르헨티나의 수출량도 26.7% 감소될 것으로 보인다.

2008/2009년 옥수수 기말재고량은 전년보다 12.3% 감소한 1억 776만 톤이 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는 전년보다 약 1,510만 톤 정도 줄어든 수준이다. 2008/2009년 기말 재고율은 전년보다 2.3% 포인트 줄어들어 13.5%까지 내려갈 전망이다.

표 4. 옥수수 수급 동향 및 전망

단위 : 백만 톤

구분	'06/'07	'07/'08	'08/'09	'08/'09(전망)		변동율(%)	
	06/ 0/	(추정)	2008.9	2008.10	전년대비	전월대비	
생 산 량	712.44	790.99	782.96	785.25	△0.7	0.3	
공 급 량	837.22	899.68	906.42	908.13	0.9	0.2	
소 비 량	728.53	776.80	796.47	800.37	3.0	0.5	
교 역 량	93.80	95.77	86.07	83.87	△12.4	△2.6	
기말재고량	108.69	122.88	109.94	107.76	△12.3	△2.0	
기말재고율(%)	14.9	15.8	13.8	13.5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463, October 10, 2008.

5. 대두

2008/2009년도 세계 대두 생산량은 2억 3,943만 톤으로 전년대비 8.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미국, 브라질, 아르헨티나가 각각 11.5%, 2.5%, 8.6% 늘어날 것 으로 보인다.

2008/2009년도 세계 대두 소비량은 2007/08년 2억 2,912만 톤보다 607만 톤 늘어난 2억 3,519만 톤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이며 특히 미국, 아르헨티나, 중국의 소비량이 각각 1.6%, 5.8%, 5.6%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대두 교역량은 전년보다 0.3% 감소한 7,884만 톤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이며 생산량 에서 차지하는 교역량의 비중은 32.9%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 수출량은 미국이 36.3%, 브라질이 34.2%, 아르헤티나가 17.9%의 비중을 차지하여 이들 3국의 수출 비중이 88.4%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수출량은 전년대비 9.5% 줄어드는 반면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의 수출량은 전년대비 각각 6.4%, 4.4%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대두의 기말재고량은 5,524만 톤으로 전망되어 전년의 5,268만 톤과 비교하여 4.9%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기말재고율은 전년보다 0.5% 포인트 높은 23.5%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표 5. 대두 수급 동향 및 전망

단위: 백만 톤

7 8	'00 /'07	'07/'08	'08/'09(전망)		변동율(%)	
구분	'06/'07	(추정)	2008.9	2008.10	전년대비	전월대비
생 산 량	236.56	220.69	237.99	239.43	8.5	0.6
공 급 량	289.64	283.34	288.12	292.11	3.1	1.4
소 비 량	224.52	229.12	236.76	235.19	2.6	△0.7
교 역 량	71.50	79.14	77.60	78.84	△0.4	1.6
기말재고량	62.65	52.68	51.23	55.24	4.9	7.8
가말재고율(%)	27.9	23.0	21.6	23.5		

6. 대두박

2008/2009년도 세계 대두박 생산량은 1억 6,158만 톤, 소비량은 1억 5,994만 톤으로 전년보다 각각 2.2%, 1.8%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생산량이 소비량을 약 160만 톤 정도 초과할 것으로 보인다.

대두박 교역량은 전년보다 3.3% 증가한 5,745만 톤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생산량 에서 차지하는 교역량의 비중은 35.6%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세계 수출량 중 아르헨티나가 49.4%, 브라질이 22.3%, 미국이 13.6%를 차지하여 이들 3개국의 수출비중이 85.3%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대두박의 기말재고량은 630만 톤으로 전망되어 전년보다 4.4%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며, 기말재고율은 전년보다 0.3% 포인트 줄어든 3.9%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표 6. 대두박 수급 동향 및 전망

단위: 백만 톤

	0000 (07	'07/'08	'08/'09(전망)		변동율(%)	
구분	2006/07	(추정)	2008.9	2008.10	전년대비	전월대비
생 산 량	153.86	158.15	162.65	161.58	2.2	△0.7
공 급 량	159.83	164.15	169.20	168.17	2.4	△0.6
소 비 량	152.09	157.09	161.04	159.94	1.8	△0.7
교 역 량	54.29	55.61	57.63	57.45	3.3	△0.3
기말재고량	6.00	6.59	6.26	6.30	△4.4	0.6
기말재고율(%)	3.9	4.2	3.9	3.9		

표 7. 주요국별 쌀(정곡기준) 수급동향 및 전망

단위 : 백만 톤

——————————————————————————————————————	100 (107	'07/'08	'08/'09)(전망)	변동·	<u> 변동율(%)</u> 변동율(%)	
구분	'06/'07	(추정)	2008.9	2008.10	전년대비	전월대비	
공 급 량	496.09	505.17	509.24	510.92	1.1	0.3	
기 초 재 고 량	75.68	74.98	77.26	77.69	3.6	0.6	
생 산 량	420.41	430.19	431.98	433.23	0.7	0.3	
미 국	6.24	6.31	6.62	6.53	3.5	△1.4	
태 국	18.25	19.30	19.50	19.50	1.0	0.0	
베 트 남	22.92	24.13	23.70	23.70	△1.8	0.0	
인도네시아	35.30	35.50	36.25	36.25	2.1	0.0	
중 국	127.20	129.84	130.55	130.55	0.5	0.0	
일 본	7.79	7.93	8.00	8.00	0.9	0.0	
수 입 량	27.81	25.61	26.31	26.53	3.6	0.8	
인도네시아	2.00	0.50	0.80	0.80	60.0	0.0	
중 국	0.47	0.30	0.33	0.33	10.0	0.0	
일 본	0.68	0.70	0.70	0.70	0.0	0.0	
소 비 량	421.10	427.48	428.88	430.38	0.7	0.3	
미 국	4.07	3.95	4.02	4.02	1.8	0.0	
태 국	9.78	9.60	9.50	9.50	△1.0	0.0	
베 트 남	18.78	19.01	19.24	19.24	1.2	0.0	
인도네시아	35.90	36.35	36.85	36.85	1.4	0.0	
중 국	127.20	127.34	127.65	127.65	0.2	0.0	
일 본	8.25	8.15	8.23	8.23	1.0	0.0	
수 출 량	31.30	30.37	28.25	28.33	△6.7	0.3	
미 국	2.92	3.45	3.52	3.45	0.0	△2.0	
태 국	9.56	10.00	9.50	9.50	△5.0	0.0	
베 트 남	4.52	4.75	5.20	5.20	9.5	0.0	
기 말 재 고 량	74.98	77.69	80.36	80.54	3.7	0.2	
미 국	1.27	0.94	0.83	0.80	△14.9	△3.6	
태 국	2.51	2.22	2.73	2.73	23.0	0.0	
베 트 남	1.39	2.16	1.72	1.72	△20.4	0.0	
인 도 네 시 아	4.61	4.26	4.46	4.46	4.7	0.0	
중 국	35.92	37.72	39.85	39.85	5.6	0.0	
<u>일</u> 본	2.41	2.69	2.96	2.96	10.0	0.0	

표 8. 주요국별 소맥 수급동향 및 전망

단위 : 백만 톤

	100 (107	'07/'08	'08/'09)(전망)	변동	- 단위 : 맥만 돈 5율
구분	'06/'07	(추정)	2008.9	2008.10	전년대비	<u>전월대비</u>
공 급 량	743.94	737.90	794.77	800.00	8.4	0.7
기 초 재 고 량	147.64	127.02	118.49	119.80	△5.7	1.1
생 산 량	596.30	610.88	676.28	680.20	11.3	0.6
미 국	49.32	56.25	67.02	68.03	20.9	1.5
호 주	10.82	13.04	22.00	21.50	64.9	△2.3
캐 나 다	25.27	20.05	25.40	27.30	36.2	7.5
E U 2 7	124.87	119.29	147.19	147.17	23.4	0.0
중 국	108.47	109.86	114.00	114.00	3.8	0.0
러 시 아	44.90	49.40	60.00	61.00	23.5	1.7
수 입 량	113.25	112.12	120.23	120.83	7.8	0.5
E U 2 7	5.14	6.93	5.00	5.00	△27.8	0.0
브 라 질	7.62	7.00	7.00	7.00	0.0	0.0
북아프리카	16.30	21.67	20.30	20.20	△6.8	△0.5
파 키 스 탄	0.07	1.49	2.00	2.00	34.2	0.0
인 도	6.72	1.88	0.00	0.00	△100.0	#DIV/0!
러 시 아	0.86	0.34	0.40	0.40	17.6	0.0
소 비 량	616.93	618.10	654.88	655.58	6.1	0.1
미 국	31.04	29.00	35.22	35.49	22.4	0.8
E U 2 7	125.50	117.74	132.50	131.50	11.7	△0.8
중 국	102.00	104.00	107.00	107.00	2.9	0.0
파 키 스 탄	21.90	22.40	22.60	22.60	0.9	0.0
러 시 아	36.40	37.70	4150	43.00	14.1	3.6
수 출 량	111.20	114.85	122.88	123.18	7.3	0.2
미 국	24.73	34.40	27.22	27.22	△20.9	0.0
캐 나 다	19.43	16.12	17.50	18.50	14.8	5.7
E U 2 7	13.87	12.23	1800	18.00	47.2	0.0
기 말 재 고 량	127.02	119.80	139.89	144.41	20.5	3.2
미 국	12.41	8.32	15.62	16.37	96.8	4.8
E U 2 7	14.03	10.28	1197	12.95	26.0	8.2
중 국	38.46	41.53	46.56	46.56	12.1	0.0

표 9. 주요국별 옥수수 수급동향 및 전망

단위 : 백만 톤

		'00 ('07 '07 '08 '08 '09 (전망)				변동율(%)		
구분	'06/'07	(추정)	2008.9	2008.10	전년대비	전월대비		
공 급 량	837.22	899.68	906.42	908.13	0.9	0.2		
기 초 재 고 량	124.78	108.69	123.46	122.88	13.1	△0.5		
생 산 량	712.44	790.99	782.96	785.25	△0.7	0.3		
이 국	267.60	332.09	306.65	309.89	△6.7	1.1		
· · · · · · · · · · · · · · · · · · ·	22.50	20.50	19.00	19.00	△7.3	0.0		
E U 2 7	53.83	47.37	58.14	59.15	24.9	1.7		
멕시코	22.35	22.65	24.00	24.00	6.0	0.0		
동남아시아	16.81	18.69	18.30	18.30	△2.1	0.0		
중 국	151.60	151.83	156.00	156.00	2.7	0.0		
o 수 입 량	90.92	95.87	83.23	81.33	△ 15.2	△2.3		
이 집 트	4.83	4.20	4.30	4.30	2.4	0.0		
E U 2 7	7.06	13.50	3.00	2.50	△81.5	△16.7		
일 본	16.71	16.60	16.10	16.10	△3.0	0.0		
멕 시 코	8.94	9.20	9.50	9.00	△2.2	△5.3		
동남아시아	3.96	3.15	3.80	3.80	20.6	0.0		
한 국	8.74	9.10	7.70	7.70	△15.4	0.0		
소 비 량	728.53	776.80	796.47	800.37	3.0	0.5		
미 국	230.77	262.56	270.40	271.41	3.4	0.4		
E U 2 7	62.30	62.00	61.00	61.00	△1.6	0.0		
일 본	16.50	16.50	16.10	16.10	△42.4	0.0		
멕 시 코	30.70	32.00	33.00	32.50	1.6	△1.5		
동남아시아	20.70	21.30	21.98	21.98	3.2	0.0		
한 국	8.83	9.10	7.80	7.80	△14.3	0.0		
중 국	145.00	149.00	158.00	158.00	6.0	0.0		
수 출 량	93.80	95.77	86.07	83.87	△12.4	△2.6		
미 국	53.99	61.85	50.80	50.80	△17.9	0.0		
아르헨티나	15.31	15.00	13.00	11.00	△26.7	△15.4		
중 국	5.27	0.60	0.50	0.50	△16.7	0.0		
기 말 재 고 량	108.69	122.88	109.94	107.76	△12.3	△2.0		
미 국	3311	41.26	25.86	29.31	△29.0	133		
아르헨티나	166	0.16	0.96	0.66	3125	△31.3		
E U 2 7	7.38	5.75	4.83	5.40	46.1	11.8		
_ 중 국	36.60	38.88	36.48	36.48	46.2	0.0		

표 10. 주요국별 대두 수급동향 및 전망

단위 : 백만 톤

7 H	200 (207	'07/'08	'08/'09(전망)		변동율(%)	
구분	'06/'07	(추정)	2008.9	2008.10	전년대비	전월대비
공 급 량	289.64	283.34	288.12	292.11	3.1	1.4
기 초 재 고 량	53.08	62.65	50.13	52.68	△15.9	5.1
생 산 량	236.56	220.69	237.99	239.43	8.5	0.6
미 국	86.77	72.82	79.85	81.19	11.5	1.7
아르헨티나	48.80	46.50	50.50	50.50	8.6	0.0
브 라 질	59.00	61.00	62.50	62.50	2.5	0.0
중 국	15.20	13.50	16.50	16.50	22.2	0.0
수 입 량	69.03	77.60	77.47	77.15	△0.6	△0.4
중 국	28.73	36.50	36.00	36.00	△1.4	0.0
E U 2 7	15.29	15.00	14.35	14.15	△5.7	△1.4
일 본	4.09	4.05	4.05	4.05	0.0	0.0
소 비 량	224.52	229.12	236.76	235.19	2.6	△0.7
미 국	53.24	51.56	53.05	52.40	1.6	△1.2
아르헨티나	35.09	36.42	39.04	38.54	5.8	△1.3
브 라 질	34.02	34.96	35.50	35.50	1.5	0.0
중 국	45.40	48.85	51.57	51.57	5.6	0.0
E U 2 7	16.09	15.78	14.99	14.74	△6.6	△1.7
일 본	4.31	4.26	4.26	4.26	0.0	0.0
멕 시 코	3.93	3.74	3.74	3.74	0.0	0.0
소 비 량	71.50	79.14	77.60	78.84	△0.4	1.6
미 국	30.39	31.57	27.22	28.58	△9.5	5.0
아르헨티나	9.56	13.50	13.90	14.10	4.4	1.4
브 라 질	23.49	25.38	27.50	27.00	6.4	△1.8
기 말 재 고 량	62.65	52.68	51.23	55.24	4.9	7.8
미 국	15.62	5.58	3.67	5.98	7.2	62.9
아르헨티나	22.61	22.14	22.58	23.35	5.5	3.4
브 라 질	18.19	19.00	18.30	19.15	0.8	4.6

표 11. 주요국별 대두박 수급동향 및 전망

단위 : 백만 톤

	'00 <i>(</i> '07	'07/'08	'08/'09(전망)		변동율(%)	
구분 	'06/'07	(추정)	2008.9	2008.10	전년대비	전월대비
공 급 량	159.83	164.15	169.20	168.17	2.4	△0.6
기 초 재 고 량	5.97	6.00	6.55	6.59	9.8	0.6
생 산 량	153.86	158.15	162.65	161.58	2.2	△0.7
미 국	39.06	38.39	38.50	37.95	△1.1	△1.4
아르헨티나	26.06	27.30	29.44	29.05	6.4	△1.3
브 라 질	24.11	24.75	2519	25.19	1.8	0.0
인 도	5.28	6.39	6.31	6.31	△1.3	0.0
중 국	28.09	30.69	32.60	32.60	6.2	0.0
수 입 량	52.57	55.14	55.74	55.51	0.7	△0.4
E U 2 7	22.18	23.90	23.00	23.00	△3.8	0.0
중 국	0.03	0.20	0.20	0.20	0.0	0.0
소 비 량	152.09	157.09	161.04	159.94	1.8	△0.7
미 국	31.18	30.12	30.84	30.30	0.6	△1.8
아르헨티나	0.59	0.67	0.67	0.68	1.5	1.5
브 라 질	11.12	12.00	12.75	12.80	6.7	0.4
인 도	2.02	1.54	1.63	1.63	5.8	0.0
E U 2 7	33.19	34.89	33.54	33.34	△4.4	△0.6
중 국	27.26	30.22	32.20	32.20	6.6	0.0
수 출 량	54.29	55.61	57.63	57.45	3.3	△0.3
미 국	7.99	8.44	7.80	7.80	△7.6	0.0
아르헨티나	25.63	26.50	28.79	28.40	7.2	△1.4
브 라 질	12.72	12.11	12.80	12.80	5.7	0.0
인 도	3.46	4.90	4.70	470	△4.1	0.0
기 말 재 고 량	6.00	6.59	6.26	6.30	△4.4	0.6
미 국	0.31	0.27	0.27	0.27	0.0	0.0
아르헨티나	1.52	1.65	1.63	1.62	△1.8	△0.6
_ 브 라 질	1.91	2.72	2.38	2.49	△8.5	4.6

표 12. 전체 곡물의 수급추이

						단위: 만톤, %
<u></u> 연도	생산량	공급량1)	소비량2)	교역량	재고량	재고율
1975/76	123,682	143,575	121,682	15,228	21,893	18.0
1976/77	134,221	156,114	128,119	15,344	27,995	21.9
1977/78	131,952	159,946	132,149	16,054	27,798	21.0
1978/79	144,550	172,348	139,046	17,674	33,302	24.0
1979/80	140,994	174,296	141,523	19,410	32,773	23.2
1980/81	142,934	175.707	144,922	21,199	30,785	21.2
1981/82	149,058	179,844	146,431	21,412	33,413	22.8
1982/83	154,126	187,539	148,415	20,034	39,124	26.4
1983/84	150,914	190,038	155,043	21,178	34,996	22.6
1984/85	167,066	202,062	159,189	21,815	42,873	26.9
1985/86	168,284	211,157	159.257	17,912	51,900	32.6
1986/87	170,389	222,289	164,934	19,140	57,356	34.8
1987/88	164,201	221,556	168,651	21,801	52,906	31.4
1988/89	159,008	211,913	166,754	22,709	45,159	27.1
1989/90	170,815	215,974	171,819	22,658	44,155	25.7
1990/91	181,009	225,164	175,502	21,722	49,663	28.3
1991/92	172,385	222,048	173,174	22,671	48,874	28.2
1992/93	179,640	228,514	176,166	22,649	52,348	29.7
1993/94	171,972	224,320	175,768	21,374	48,552	27.6
1994/95	176,110	224,662	176,845	21,638	47,817	27.0
1995/96	171,225	219,042	175,315	21,714	43,727	24.9
1996/97	187,254	230,981	182,311	21,951	48,670	26.7
1997/98	187,817	236,487	182,396	21,724	54,092	29.7
1998/99	187,555	241,647	183,590	22,072	58,057	31.6
1999/00	187,217	245,274	186,542	24,419	58,732	31.5
2000/01	184,276	243,008	186,326	23,355	56,682	30.4
2001/02	187,411	244,094	190,226	23,951	53,868	28.3
2002/03	182,085	235,953	191,293	24,136	44,660	23.3
2003/04	186,219	230,879	194.990	24,043	35,890	18.4
2004/05	204,447	240,275	199,470	24,112	40,814	20.5
2005/06	201,720	242,170	203,159	25,347	39,011	19.2
2006/07	200,578	239,419	205,408	25,994	34,041	16.6
2007/08(E)	211,812	245,854	211,100	26,852	34,754	16.5
2008/09(P)	220,771	255,525	218,313	26,315	37,212	17.0

주 : E(추정치), P(전망치)

(1)공급량=전년도 재고량+생산량, (2)소비량=공급량-재고량 자료: USDA, Foreign Agricultural Service(http://www.fas.usda.gov/psd)

농산품 품질에 관한 녹서(Green Paper): 상품 품질, 농업요건 그리고 품질 제도

발간 : EU집행위원회, 번역 : 농식품부 국제농업국

머리말

세계화가 확산되면서, 낮은 비용으로 생산되는 신흥 개도국의 농산품이 EU 농민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 일반 농산물과 고부가 가치 상품 사이의 경쟁도 심화되고 있다. 이렇듯 새로운 무역 과제에 직면하고 있는 EU 농민들에게 있어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품질이다. EU는 식품 품질에 있어 우위를 점하고 있다. 이는 세계의 여러 농민, 생산자들이 투자를 해온 EU의 식품 공급망(Food Chain)내에서 식품 안전이 법적으로 보장되기 때문이긴 하지만, 실제 세계적으로도 식품의 품질을 중시하려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품질이란 소비자 기대를 충족시키는 것이다. 이 문서는(녹서, green paper) 에서 다루고 있는 농산물 품질이란, 농민이 알리기 원하고, 소비자가 알기 원하는 사용 농법, 경작지 등과 같은 상품의 특징이다. 기본적 표준 정도로 생산된 상품이든지, 유럽의 뛰어난 고품질 상품이든지, 품질은 모든 농민과 구매자에게 있어 중요한 사항이다. 이 문서는 영양 표시, 동물 복지 등, 유럽 연합 위원회 활동이 다루고 있는 식품 안전관련 품질 문제를 다루고 있다.

● 시장과 사회의 요구

최근처럼 원자재 가격이 높은 시기에는,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상품 표준 수준을 낮춘다는 말은 변명이 되지 못한다. 소비자는 합리적인 가격의 식품을 사기 원하고, 지불한 만큼의 품질을 원한다, 그러나 가격과는 별도로, 소비자는 자신이 사는 상품의 가치와 품질에 관해 많은 요구를 한다.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농민에게 큰 과제이다.

시장의 요구는 날로 다양해지고 증가하고 있다. EU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는 위생과 식품 안전(협상 대상이 아닌 필수 사항), 위생, 영양가, 사회적 요구 이다. 소비자들은 지속가능성, 기후변화, 식량안보, 개발, 생물 다양성, 동물 복지, 물 부족 등에 농업이 기여하는 바에 점차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토지를 매개로 하는 농업은 경관, 귀중한 환경구역 등 지역 영토 개발에 있어 주요 요소이다. 무엇보다, 가처분 소득의 증가로 전세계 여러 곳의 소비자들은 높은 수준의 동물 복지뿐 아니라 식품의 맛, 전통, 진품 여부 등에 관해 요구를 하고 있다.

EU 농민은 이러한 요구를 부담으로 보는 대신, 이를 그들의 강점으로 바꿀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다. 즉 소비자가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제공하고, 시장에서 자신의 상품을 차별화하여, 그 만큼의 가격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EU의 농업 정책은 상품 고품질 관련 과제를 달성하고자 하는 농민의 노력을 지원해야 한다. EU는 제도와 규제를 통해 이를 위한 노력을 이미 기울이고 있으며, 주로 2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즉 기준선 조치 (baseline measure)와 품질 조치 (quality measure)이다.

■ 기준선 조치(baseline measure)

EU 규정은 안전, 위생, 식품 정체성, 구성 성분, 환경 보호, 식물, 동물 위생과 복지와 관련하여 가장 엄격한 생산 요건 기준(baseline production requirement)을 마련하여 EU의 일반 소비자와 시민들의 바램을 분명히 반영하고 있다.

EU 수준에서 품질 조치와 제도.

EU의 많은 농민들은 신규 시장 판매처 확보와 이윤 확대를 위해 신선하고 창의적인 방법을 계속해서 내놓고 있는데, 다음의 노력들이 이에 포함된다.

- 식품의 맛, 원산지, 등 특별한 특징의 형태이던지 아님 생산 방법이던지, 기준 요건이상으로 소비자에게 무엇인가를 제공하는 '프리미엄(premium)' 제품을 생산한다.
- 생산자들이 프리미엄 상품을 생산한다고 하는 주장에 대한 신뢰와, 관련 EU 품질 제도에 대한 신뢰를 준다.
- 특정 제품에 대해 더 많은 돈을 지불할 것인지를 소비자들이 선택하고 결정할 있도록 돕는다.
- 샤블리 포도주, 프로슈토 디파르마, 스캇치 위스키, 카페 드 콜롬비아 등처럼 상품의 특성과 명성을 그 생산지와 제조 기술로 알리는 지리적 표시제 식품, 와인, 주류 상품의 이름을 보호한다.
- 유기농법에 관심을 가지고 유기농 식품의 표기를 자세히 살펴 보는 소비자들이 많아짐에 따라 엄격한 규정요건을 마련하여 유기농업 부분을 규제한다.
- 전통 식품과 음료수 판매 촉진을 위해 전통 상품의 이름을 EU의 제도 아래에 등록한다.
- EU의 외곽지역만의 특수 상품을 홍보한다.
- 구체적 상품 특질 (예를 들면 올리브 오일에 대해서는 '엑스트라 버진', 과일과 채소에 대해서는 '1등급', 달걀에 대해서는 방목한 닭이 낳은 계란(free-range))을 표시하기 위해 많은 부문에서 EU 마케팅 표준을 마련한다.
- 농업과 상품 특징에 대해 EU 의 소비자에게 더 잘 알릴 수 있도록 공공 민간 부문이 마련한 인증 제도를 추진한다.

■ 녹서(Green Paper)

이러한 배경 속에서, 유럽위원회는 추가 부담이나 비용 없이 농산물의 품질 보호와 향상시키기 위한 가장 적절한 정책이나 규정 체계를 보장할 방법에 대해 검토를 하기로 했다. 첫 번째 단계로서, 기존 수단이 적절한지의 여부 또는 어떻게 발전시킬지, 어떤 신규 계획을 추진할 지에 대한 폭넓은 협의를 해나갈 것이다,

Part 1 은 특정 상품의 품질을 포함하여, 경작 기준 요건과 EU 가 지지하는 상품 표준을 살펴본다.

Part 2 는 지리적 표시제, 전통 특산품 품질 보증제(TSG), 외곽 지역 상품, 유기 농 상품에서 단일 시장 운영 등을 다루고 있는 기존 품질 제도를 살펴보고 있다.

Part 3 은 생산자가 상품에 대해 구매자와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돕는, 주로 민간 부문의 인증제도를 살펴 본다.

PART 1: 생산 요건과 마케팅 표준

1. EU 농산품 생산 요건.(farming requirement)

EU의 농민은 일련의 생산 요건을 준수하고 EU에서 생산된 모든 식품은 이 규정에 따라 경작되어 생산된다. 이런 규정 요건은 시장에서 판매되는 최종 식품에 대해 위생과 안전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것뿐 아니라, 환경적, 윤리적, 사회적 우려 사항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농민에게 있어 이는 살충제와 비료의 올바른 선택과 사용, 위생 규정 준수, 농업 종사자의 훈련과 적절한 보호, 그리고 농장의 동물 복지와 환경 보호 등을 통한 동물과 식물 질병의 예방에 더욱 주의를 기울이는 것을 의미한다.

소비자에게 있어 이는 위에 언급한 정당한 사회적 우려를 포함하여, 타당한 생산 요건을 준수하여 EU 에서 생산되고 있음을 확신하게 됨을 의미한다.

이러한 경작 요건은 사회적 요구 기능으로 계속 발전해 가고 있다. 판매 식품의 품질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기도 하고, 농민이 자산의 일부로 여기고 이를 키워나 가려고 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농사법에 대한 요건이 존재한다는 사실과, 식품 생산에서의 준수 요건이라는 점에 대해 소비자에게 충분히 인식시키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환경과 동물 복지 같이 경작 요건 규정 중 상당수가 상품 위생과 안전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있으며, 수입 식품 재료에는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그러면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가? 경작 기준, 환경 보호, 동물 복지, 노동자 안전 등의 문제는 농작물을 직접 생산하는 나라의 정부가 규정하는 문제이다. 특히 위생과 안전에 있어, 수입 식품에 대한 최소한의 상품 기준을 충족시킬 것을 EU가 요구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하고 있지만, 수입 농산물과 식품 생산에 사용된 농법을 확인하는 것은 생산 국가의 법과 관련된 문제인 것이다.

위생과 안전문제를 뛰어넘어 EU 농민이 준수하는 농작물 생산 요건과 그 결과물인 상품간의 관계를 더 잘 정립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경작 요건을 소비자가 더 잘 알고 인지하게 되면, 이는 잠재적으로 시장에서의 경쟁우위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단일 시장 기능에 대한 장벽이나, 경쟁 왜곡을 초래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질의 1.

상품 위생과 안전을 뛰어 넘어 농민이 준수하는 생산 요건과 표준을 잘 알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다음의 장단점은 무엇인가?

- 위생과 안전 관련을 제외하고, EU의 농업 생산 요건 준수를 표시하는 여러 심볼 이나 로고를 개발하는 신규 EU제도를 마련하는 것
- 비 EU 국가인 경우에도, EU의 농업생산요건을 준수하면, EU의 품질관련 제도를 이용할 자격을 주어야 하는가?
- 주요 상품의 생산지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는가?

2. 마케팅 표준

많은 농산물과 일부 가공 식품에 대해, 상품 정의, 최소 상품 표준, 품목 분류, 표기 요건 등을 소비자에게 알리는 규정을 마련해 놓은 것이 EU 마케팅 표준이다. 소비자의 기대 수준에 부응하고, 소비자를 실망시키지 않을 품질의 상품을 농민이 생산하도록 돕고, 상품의 품질과 가격을 비교해 볼 수 있도록 이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 다양한 국가 표준을 대체하여, EU 단일 시장에서 무역을 촉진하도록 마케팅 표준이 채택되었다.

모든 식품에 EU 수준의 마케팅 표준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경작작물 분류 (arable crop- 밀, 옥수수, 콩류 등)에서는, 국제적, 국가적, 또는 민간의 등급 및 분류 기준에 따라 상품 거래가 이루어진다. EU 마케팅 표준이 다루지 않는, 소비자 판매 상품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소비자 보호 규정, 라벨 표기 규정을 적용하여, 소비자에게 오해를 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한다.

마케팅 표준을 쉽게 마련한 경우도 있었지만, 논쟁을 불러일으킨 경우도 있었다. EU 규정에 의해 마케팅 표준을 개정하는 일 또한 매우 번거로운 과정이 될 수 있다. 이 문서에서, 유럽 위원회는 마케팅 표준관련 3가지 일반 이슈를 논의 하고 있다.

첫째 EU 마케팅 표준의 의무 조항을 어떻게 마련하는지 둘째, 선택 조항 (optional term) (또한 유보 조항이라고도 부름)이용을 확대할 것인지, 셋째, 규정 마련 절차 자체를 단순화하는 방법에 대한 것이다.

1) 마케팅 표준의 의무 요소

제품 정체성(Product Identity): 대부분의 EU 마케팅 표준은, 분명하고 공통적 규정을 마련하여 상품 설명을 하는 방식으로 해당 농산물 또는 식품을 정의하고 있다. 예를 들면, 과즙이 희석된 경우 즙이 많은(juicy) 라는 단어를 써서는 안 된다. 마찬가지로, 콩 음료의 경우에는 '우유 (milk)' 라는 단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경작 요건 : 신선 과일, 야채 또는 가금육 같은 경우에는, 마케팅 표준이 ' 건전하고, 공정하고 판매 가능한(marketable)' 품질의 절대적 표준 요건을 제시하고 있다. 신선 과일과 채소는 맛이 변하거나, 썩었거나, 흠이 갔거나, 지저분하거나, 벌레 먹었거나, 크기 미달인 경우, 또는 미숙 과일의 경우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없다. 이러한 요건은 최소 크기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완숙도 지표). 이를 통해 신선 농산물 시장에서 먹을 수 있는 (즉 먹기에 안전한) 과일이나 야채를 가려내 가공을 하거나 아니면 파기한다.

품질과 사이즈 등급 : 여러 마케팅 표준은 의무 등급제를 포함하고 있다. 원래는, 시장 투명성을 높여 구매자가 상품 등급과 범주에 속하는 가격을 비교할 수 있도록 도입되었다. 부분육의 형태나, 손상 정도에 따라, 가금육은 품질 기준에 따라 A등급 B 등급으로 나누어진다. 계란은 XL,L,M, S 사이즈 중 하나로 구분하거나, 또 양계 방법에 따라 구분한다. : cage(닭장), barn (헛간), free range(풀어서 키운 닭), organic (유기농 방식)으로 구분이 된다. 일부 과일이나 야채도 '엑스트라 등급(extra)' '1등급' '2등급'으로 나뉜다. 즉 판매 전에 모든 과일에 대해 등급을 매기는 것이다.

마케팅 기준 의무 사항에 있어서 문제는, 규정이 정당한 정책 목표를 충족시킬 필요가 있는지, 관료주의(red tape) 차원에서의 비용이 적정 수준인지, 실행과정에서 오히려 역작용을 초래하지는 않는지 이다. 예를 들어 혁신적이거나, 흔하지 않은 상품의 판매를 억제한다거나,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버리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질의 2

EU 법의 마케팅 표준에 상품 정체성 내용을 넣는 것은 어떻게 소비자. 판매자. 생산자에 영향을 미치는가?

안전과 위생 기준에는 맞지만, 미적 기준 또는 그 유사한 이유로 마케팅 기준을 충족 시키지 못하는 상품의 소매 판매를 허용해야 하는가? 그렇다면, 그런 상품은 소비자를 위해 특정 정보를 요구해야 하는가?

품질과 크기 구분에 관한 의무적 구분은 선택적 유보 조항 처럼 선택사항으로 만들어야 하는가?

2) 마케팅 표준 내에서 선택적 유보 사항 (reserved terms)

선택적 유보사항은 법적으로 규정한다. 유보 조항이 사용된 상품에 표기된 대로, 생산 방법과 상품 유형 특성과 일치함을 구매자에게 알린다. 마케팅 표준에서 선택적 유보사항은 소비자에게 유용하고, 정확하며, 기술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농민들이 부가가치적 상품 특징 또는 농법을 밝히고, 이를 통해, 추가적 생산 비용에 대한 추가적 재정 소득을 보장해 준다.

추가적 유보 사항은 또한 상품의 카테고리와 품질을 밝히기 위해서도 사용된다. 그러나, 이러한 선택적 사항이 없이도 이 상품은 판매를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가금육의 마케팅 표준에 따르면, 선택적 유보 사항을 사용하기 위해선 ~를 먹인 넒은 실내에서 (extensive outdoor) 프리 레인지 등의 용어는 표기한 방법을 실제로 사용했을 때만 쓰도록 제한한다.

- 냉침법(cold extraction)은 써진 그대로의 과정을 통해 처리된 , 버진 또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에만 사용할 수 있다. 그 외에는 불가능하다.

사용된 추가 선택 사항은, 필요한 경우, 농민이 특정 상품 특징과 농법에 대해 알릴 수 있는 고정적 정의를 내릴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 해 준다.

한편, 특정 농법의 사용을 소비자에게 알리기 원하여, 농민이나 1 단계 식품 생산자가 '농가', '산촌', '저탄소', '내츄럴' 같은 용어를 지주 사용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서술적 용어는, 국가적 용어 정의에 맞거나, 소비자를 오도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용된다. 이러한 표기 단어나 농법은 소비자들의 눈길을 끌기 때문에, 실제로는 광범위한 농법을 사용 했지만, 그 중의 일부만 표기하게 되면, 소비자를 오도하는 결과를 초래 할 수 있다. 최근에 기후변화 감소에 기여하는 농법을 사용 했다는 내용의 라벨은 소비자에게 혼란을 초래한 경우가 있었다. 그래서, EU 차원 에서 특정 부문 농법에 관련된 용어를 정의할 필요성이 제기 되었다.

질의 3

EU 차원의 마케팅 표준에서 '선택적 보유 사항'의 정의를 내려야 할 필요성이 어느 정도인가?

특정 부문의 농법을 설명하는 일반 용어. 예를 들면 '산간 제품(mountain product)'. '농가(farmhouse)' .'(저탄소)low carbon ' 등에 대한 정의를 내려야 하는가 ?

3) 마케팅 표준 단순화

일반적으로, 마케팅 표준 개발을 위해서 우리는 위원회 내의 또는 다른 기구로의 업무 이전이나, 국제 표준의 참조 인용 등을 통해 규정을 단순화하는 방법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단순화 작업 때문에 공공기관이나 이해 관계자에게 발생하는 행정적 부담도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면, 과일 및, 채소의 의무 등급제로 인해 생산자의 비용 부담이 늘거나, 공공 기관이 규정 준수를 관리해야 하는 부담이 생기는 것이다.

많은 EU 마케팅 표준은 코덱스나 UN 유럽 경제 위원회, UN /ECE 등에서 국제적 동의가 마련된 표준에 기초하고 있다. 타당하다고 여겨지는 경우 이러한 국제 표준이 EU 마케팅 표준의근거가 되는 것이다. 경작 가능 작물의 경우, 채택된 마케팅 표준이 없고, 국제 표준을 근거로 국내 표준에 사용하기도 하고, 민간 거래자 들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이는 일부 과일과 채소에 적용되는 의무 EU 표준과는 대조 된다. EU는 또한 국제 표준 설정에 기여하고 EU 표준도 또한 국제 표준의 기초가 되기도 한다.

시장의 수요 변화와, 기술 발전으로, 일부 마케팅 표준은 시대에 뒤떨어지고, 최신 개정 또는 조정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법으로 시대의 흐름을 따라 갈 수 있다고 하겠다.

4) 자율 규제

이 부문의 해당 운영자들은, 상품 정체성, 상품 등급, 선택적 유보사항(reserved terms) 등이 포함된 마케팅 표준 마련과 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다. 국제 표준이 존재하는 경우, 상업 거래에서 생산자와 거래자가 사용할 수 있다.

- 특정 부문의 거래자와 사업자들은 스스로 기준 규격(reference standard)와 실행 규약(code of practice)를 개발을 위한 노력을 할 수 있다. 이 과정은 자율 규제로 알려져 있다. 분쟁은 중재 등을 통해 해당 당사자간에 해결하기 때문에, 공적 집행을 위한 행정 비용은 낮다.
- 이와는 달리, 공공 기관이 집행하는 표준은, 필요한 경우 법적 절차가 지원되며, 검사와 통제 비용을 수반한다.
- 자율 규제의 장점은, 실제 시장에서 활동하는 종사자(practitioner)에 의해 정책이 만들어지고, 이행하고, 집행된다는 점이다. 표준 마련 절차가 더 간단하고, 역동적 시장환경에서 유연성이 허용되고, 빠른 시간 내에 조정이 이루어진다. 또한 자율규제를 존중하며 사업체에게만 기술적 규정이 적용된다. (이를 조인 당사자간 인터페어(inter pares) 협정이라고 부른다)

자율 규제의 예는 감자 무역과 과일 주스 부문에서 찾아 볼 수 있다.

5) 단순화된 EU 규정

마케팅 표준의 최신 개정 방법 중 또 한가지는 EU 마케팅 표준의 승인과 개정 과정의 단순화이다. 자율 규제, 또는 국제 표준의 직접 인용(direct reference), 또 가능한 경우 자발적 제도를 적용하는 것이다.

- 자율 규제는 유럽 공동체법에 분명하게 설정된 목표의 달성을 분야에서 인정 받는 이해관계자에게 위임하는 절차이다. 마케팅 표준에서는, 국회의원들이 법적 행동의 필수적 부분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 이해 당사자(concerned parties) 대표는 법을 완성하라는 요청을 받고 자신의 경험에 기초하여 기술적 데이터와 상세 사항들을 명시하는 것이다.
- EU법에서는 국제적 표준을 단순 참조 인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마케팅 표준에 대한 EU의 규정 마련 절차를 피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국제 표준은 보통 겨우 몇가지 언어로만, 얼마 되지 않는 EU 공식 언어로만 채택이 된다.
- 마지막으로 기존 법의 표준은, 비판적 검토(위에서 특히 '선택적 유보사항'에서 마케팅 표준의 다른 양상에 대한 논의를 살펴보라), 마케팅 표준에 대한 새로운 조화 체계 마련 등을 통해 단순화하고 효율화시킬 수 있다. 이 과정은 현재 채소와 과일 부문에서 시도되었다.

질의 4

마케팅 표준의 마련. 이행 그리고 관리를 어느 정도 수준까지 자율 규제에 맡겨 둘 수 있는가?

마케팅 표준 또는 그 일부가 계속 EU의 법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면, 행정적 부담차원을 포함하여. 다음의 장단점은 무엇인가?

- 공동 규제 사용
- 국제 표준 언급
- 현재의 법적인 접근법을 유지하는 것(가능한 한 내용을 단순화하면서)

PART 2. EU의 특정 품질 제도

지리적 표시, 유기농법, 전통적 특수성, EU 외곽 지역상품을 개발하기 위해 네 가지 EU의 특정 품질제도를 도입하였다. 이러한 제도는 특정 원산지 및 농업 방법에서 발생하는 구체적 품질의 특징을 소비자 상품에 표시되도록 하는 것이다. 상품라벨에 표기된 내용이 사실이라고 소비자들이 믿게 하기 위해서는, 공적 기관 또는 민간인증 기구가 제품의 사양을 준수 했는지 여부를 감독 한다. 그렇게 함으로서 제품을 생산하는데 들인 각별한 노력과 정성에 대해 프리미엄가격을 보장해 줄 수 있어야 한다.

네 가지 제도는 특정한 품질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식품 및 상품의 시장 수요에 부응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녹서 (Green Paper)의 목표는 어떤 추가적 EU 제도 가능성뿐만 아니라 이 제도의 다른 면들을 심층 검토하는 것이다.

1. 지리적 표시제

지리적 표시제는 상품 원산지의 특징이나 명성에 맞는 이름을 농산물과 식품 등에 붙이는 것을 의미한다. EU 나아가 전 세계적으로 질 좋은 상품을 찾는 소비자들이 점차 특정 지역에서 나오는 진품을 찾고 또 그 상품에 대해 프리미엄가격을 지불 하려고 한다. 농민과 생산자에게, 지리적 표시제는 유럽의 유산이라고 할 수 있는 고품질 상품을 생산하다는데 대해 만족감과 자부심을 줄 뿐만 아니라 수익과 식품 안정성을 보장해주는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다.

이를 통해 왜 EU가 농산물과 식품, 와인, 주류 등의, 지적 재산권 보호를 위한 지리적 표시 상품 목록을 작성했는지를 알 수 있다. 지리적 표시제에는 PDO (원산지 명칭 보호)와 PGI (지리적 표시보호)가 포함된다. PDO(원산지명칭 보호)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모든 생산이 지리적 표시제 지역에서 이루어져야 하거나, 상품의 특징이 전적으로 또는 본질적으로 지리적 표시제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 PGI(지리적 표시보호)의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적어도 한 단계의 생산이 그 지역에서 일어나야 하며, 특정 품질, 명성, 그리고 지역과 연관된 다른 특징을 근거로, 그 지역과의 연결성을 정당화 할 수 있다.

EU의 GI 시스템은 제 3국가의 생산자에게도 물론 개방되어 있다.

1) 지리적 표시제의 보호와 시행

● 보호

지리적 표시제 등록은 지적재산권을 보호해주고, 생산자와 진품을 다루거나 판매하는 사람이 등록된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다. 종종 ~ 같은 ~타입 ~종류 등의 단어가 따라 붙는 유사 상품은 등록된 이름을 사용할 수 없으며, 그이름을 떠올릴 수 있는 경우도 허용되지 않으며, 번역을 해서 사용하는 경우에도 명칭 사용이 불가하다.

지리적 표시 등록과 보호과정에서 상표(trademark) 보유자나, 지리적 표시 해당 식물종이나 동물 명칭 이름의 기존 사용자 또는 이름의 잠재적 사용자와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 일부에서는 일반적인 의미를 지닌 이름은 지리적 표시제에 등록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일반적 의미를 지닌 이름인지의 여부는 주로 유럽사법 재판소에서 결정한다.

지리적 표시제 상품임을 잘 표시하기 위해서, EU 에서는 등록된 상품에 사용 할수 있는 심볼을 만들었다.

● 시행

농민들이 상품 사양을 충실하게 준수하는지에 대해 공공 기관이나 민간 인증기관이 점검을 시행한다. 또한 EU 식품법에 의한 기타 상품에 대한 공식 감독의일환으로, 와인과 주류 유통과 소매에서 등록명칭의 사용에 관해서는 회원국이세부 법률에 의해 행정적인 감독을 실시한다.

지리적 표시제에 관한 공공 기관의 감독은 상표 보호(trademark)와 지리적 표시제를 구분하기 위한 것이다. 트레이드마크는 민사적 수단이다. 필요한 경우, 민간의 법적조치를 통해서, 보유자가 스스로 상표를 지켜야 한다.

질의 5

명칭의 지리적 표시 사용자 및 다른 사용자(또는 잠재적 사용자)의 권리를 명시하고 있는 규정에서 어떤 면을 분명히 하거나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지리적 표시제 기준

- 이름이 일반적 이름인지를 결정하는 데에 있어 어떠한 기준이 사용되어야 하는가?
- 지리적 표시제에서 변경이 필요한 부분은 무엇입니까?
- 보호 범위?
- 보호 시행?
- 해당되는 농산물과 식품?
- 트레이드마크 보호와 같은 대안적 수단을 적극적으로 권장해야 합니까?

2) 지리적 표시 등록 기준

지리적 표시제에 대한 신뢰 유지를 위해서는 고품질 상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충족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3천여 개의 와인, 주로, 농산물, 식품에 대해 지리적 표시제 상품이 등록되었거나 검토 중 이다. 신청 제출 건수 중 많은 수가 지역 또는 국내 시장을 위주로 판매되고 있다. 일부 가공 식품 이름의 경우, 생산과 생산지 사이의 연관관계가 상품 명성이나 원료 생산 농법 보다는 가공 방법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원료는 외부에서 생산된 것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는 소비자가 기대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

많은 경우, 상품의 품질과 명성이 반드시 원산지나 지역 생산자의 적절한 행동에 의해 전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지속가능성 기준이 소비자 기대 충족이나 상품 품질에 기여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도 있다.

세계농업 흐름분석

- 상품의 지역 경제에 대한 기여
- 농업 방법의 환경 지속 가능성
- 상품의 경제적 타당성과 수출 잠재성
- 가공 식품의 경우, 모든 원료가 식품 가공 지역 주위에서 나온 것이어야 한다.

질의 6

지리적 표시 적용 제한을 위해 추가적 기준이 도입되었습니까? 원산지 보호 구역 지정과 별도로, 지리적 표시 보호를 위한 기준을 좀더 엄격하게 하여, 상품과 생산 지역과의 관계를 강조해야 할까요?

구체적으로 지속가능성 및 여러 기준을, 원산지와 본질적으로 연관성이 있든 없든, 제품사양(specification)의 일부분으로 포함시켜야 합니까? 장단점은 무엇입니까?

3) 제 3국에서 EU의 지리적 표시 보호

일부 지리적 표시 상품은 최고급 상품 시장에서 수출 잠재성이 상당하다. 소비자들이 고품질 상품을 찾는 동안, EU 수출업자들이 자신의 장점을 잘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성공한 지리적 표시상품은 복제와 유용의 대상이 된다. EU 수출업자들이 EU 외 지역에서 고품질 상품을 판매하고 투자 보호를 위해서는 EU 의 지리적 표시상품에 대한 법적 보호를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EU 밖의 일부 국가에서는 지리적 표시를 보호해주기 위한 분명한 시스템이 있다. 한편 어떤 나라에서는 상표법, 라벨표기법, 또는 이 목적을 위해 결합한 법적제도를 사용하고 있다.

지리적 표시는 여러 다자 협정하에서 보호를 받고 있다. EU는 특히 와인 부문에서 양자 협정을 여러 차례 타결한 바 있다. EU는 다자적 차원에서 또는 협정 농산물에 대한 많은 양자 협상을 통해 보호와 등록을 개선하고 있다. 양자 협정은 EU의

지리적 표시 전체 리스트에 대해 보호를 높이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EU에서 보호받는 3000여 종의 지리적 표시 상품의 판매는 모두 지역적 또는 국내적 수준 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모든 이름은 국제적 보호를 추구하는 데서 문제가 발생한다.

질의 7

지리적 표시제의 사용자들이 EU밖의 국가에서 지리적 표시제가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과정에서 당면하게 되는 어려움은 무엇인가?

제 3국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지리적 표시를 보호하기 위해서 EU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4) 가공 상품의 성분으로서의 지리적 표시

가공 상품(processed product)과 조리 상품(prepared product)은 중요한 성분이 들어있다고 라벨에 표기하는 경우가 있다. 성분이 PDO(원산지 명칭 보호)와 PGI (지리적 표시 보호)에 의해 보호 받는 경우, 가공 상품의 생산자는 등록된 이름으로 성분의 존재를 광고하기를 원한다. 그러나 그 성분의 생산자는 가공 상품 판매를 위해 등록된 이름을 사용하는 것을 반대할 수도 있다.

소비자 정보에 관한 일반 규정은 성분광고를 통해 어떻게 소비자를 오도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다. 성분에 대해 지리적 표시를 이용하고 싶은 경우, 성분 표기에 성분의 비율을 표기하여야 한다.

질의 8

가공 / 조리 상품에서 사용된 PGI(지리적 표시 보호) /PDO(원산지 명칭 보호) 성분을 광고하는 데서 발생하는 어려움은 무엇인가?

5) 지리적 표시 보호에서 재료의 원산지

PGI의 정의를 따르기 위해서는, 생산 과정 중에서 한 단계만 그 이름이 생겨난 지역에서 이루어지면 된다. 가공 상품의 경우, PGI(어떤 경우 PDO)에서, 원자재가 해당 지역 외부에서 올 수도 있다. 일부 소비자들은 제품의 원료가 그 지역 원료이기를 바랄 수도 있고, 다른 소비자들은 원산지가 어디든, 지리적 표시 지역내의 전문 생산자가 고품질의 원료를 선택하여 생산하기를 바란다. 소비자의 기대는 제품의 타입에 따라 다른 것이다.

질의 9

원료가 지리적 표시 지역이 아닌 다른 곳에서 오는 경우. 원료의 원산지 표기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가?

6) 지리적 표시제의 일관성과 단순화

EU에서는 현재 농업의 지리적 표시제의 등록과 보호에 대한 3가지 제도가 존재 한다. 농산물과 식품에 대한 제도, 주류에 대한 제도, 와인에 대한 제도가 있다. 이는 해당 농산물의 특수성 때문에 생겨난 결과이기도 하고, 각 타입의 제품 보호 제도를 점진적 이행해 나가면서 생긴 결과이기도 하다.

세가지 제도의 토대는 비슷하다. : 보호 형태, 정의, 행정적 이행, 트레이드 마크 (상표)와의 관계, 이름이 같은 제품과의 공존에 관한 규정, 등록 명부 마련, 제품 사양의 역할 등이다.

한편 각 제품 타입별 구체적 요구 조건에 따라 절차적인 차이 또는 그 외의 차이가 존재한다. 예를 들면, PDO(원산지 보호 명칭)와 PGI(지리적 표시 명칭)제도는 와인과 농산물, 식품 등에 해당되지만, 주류에 대해서만 PGI를 등록할 수 있다.

지리적 표시 보호를 위한 3가지 EU제도는 단순화할 수 있고 조화시킬 수 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가? 한편으로 이 제도는 개별적 등록제로서 개발할 수 있는가?

2. 전통 특산물 보증

전통 보증 특산물 (TSG)은 전통적 원료와 전통적 생산방법을 사용하여 생산 되었거나 그 성분을 농산물과 식품의 이름이다. 식용 농산물을 포함하여, 맥주, 제과류, 파스타, 조리 음식, 수프, 아이스크림, 소베트 등의 식품 등이 포함된다.

1992년 도입 이래로, TSG로 등록된 이름은 20여 종 밖에 되지 않는다. 30여 종의 상품이 등록을 기다리고 있다. 이 모든 제품이 다 등록 된다 해도, 그 수는 아직 작다. 또한 아직 경제적 가치가 높은 것은 거의 없다.

대부분의 경우, 등록은 제품이 전통 제품임을 표시하는 역할 만을 한다. 신청자 들의 2/3 이상이 본 이름을 간직하지 않고 이러한 등록방법을 선택하기로 하였다. 대안적 방법으로서, 이름을 독점적으로 등록할 수 있는데' TSG(Traditional specialty guaranteed)' 와 같은 약어, 'EU logo' 등의 표시가 있든 없든. 이 경우 이 이름은 사양에 따라 제품이 만들어진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만 쓰일 수 있다. 이는 대부분의 TSG 등록이 전통 상품을 표시하기 위한 것 이지 이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필수사항 체크(requisite check) 시행을 허용하면, 어떤 생산자든지 이 제도아래 에서 전통 제품을 생산 또는 판매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제도를 초기에 적용한 국가 외에서, TSG의 이 규정을 이용한 경우는 거의 없다.

TSG(전통 특산물 보증)의 채택률이 낮은 점을 생각해 볼 때. 전통 특산품을 표시하고 홍보할 수 있는 더 나은 방법은 무엇인가?

3. 유기 농업

수요증가율이 공급 증가율을 초과함에 따라, 최근에 유기 생산 식품에 대한 소비자 수요가 함께 꾸준히 증가 했다. 농민과 소비자들은 유기농법에 의한 상품 생산 보증을 위해서 유기농 제도에 완전히 의존하게 된다. 제도에 대한 신뢰 유지와 정당한 프리미엄 가격청구를 위해서는 공공 기구와 인증기구의 감독이 필요하다.

EU의 유기 농업 시장은 국가 별로 분화 되어 있는 상황이다. 모든 대형 국영 시장은 공동의 EU 유기 표준 하에서 운영되고 있는데도, 국가 인증 기구가 인증한 상품을 갖추고 있는 경향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EU의 현 과제는, 유기농 라벨의 명성이나 신뢰가 잃지 않도록 하면서 유기농 상품을 위한 내부의 기능 시장을 신설하는 것이다.

1991년 이래로, EU는 유럽 생산자와 가공업자와, EU 시장에서 유기농 상품을 판매하고 싶어 하는 3국 수출업자를 위해, 유기농업 조항 마련을 위한 표준을 적용 하였다.

EU는 국제 식품 규격 (Codex Alimentarius) 이 채택한 국제 표준에 나와 있는 유기 농업 규정을 잘 따르고 있다. 이로 인해 다른 나라에 수출 되는 EU 제품에 대한 유기농 인증이 촉진되고 있다.

유기농 부문에 대한 전략적이고 정치적인 목표 합의가 2004년에 이루어졌고, 유기 식품과 농업을 위한 EU의 행동 계획에 명시 되어있다. 법적 차원에서 가장 중요한 결과는 2007년6월에 체결된 유기농업 규정이었다. 최근에 이루어진 신규 법안 채택을 고려해볼 때, 위원회는 법의 정책적 세부사항 보다는 유기농 상품 시장이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해 협의의 초점을 두고자 한다.

유기농 상품에서 EU 단일 시장 개발의 저해 요소는 무엇인가? 유기농 제품에 대해서, 단일EU 시장이 더 잘 작동하도록 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4. 외곽지역(outermost region)의 고품질 제품 정책

EU 외곽 지역의 농업관련 상세 조치 법안에서는, 천연이든 가공이든, 외곽지역 만의 농산물에 관한 인식제고와 소비를 위한 구체적인 심볼을 도입하고 있다. 이 심볼문양의 사용은 국가기구가 임명한 기구가 감독하고, 이 심볼 사용 조건은 해당 무역 조직이 마련한다. 이 상징을 사용하는 농산물은 EU 규정을 인용하면서 정해진 요구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대표 무역 조직 기구에서 제안이 들어오면, 필요한 경우, 외곽지역 상품에 대해 추가적으로 구체적 요건을 채택 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프랑스와 스페인의 외곽 지역의 생산자들이 이러한 가능성을 활용한 바가 있다. (예 : 과달루프, 마르티니크, 라레위니옹 에서 온 파인애플, 바나나, 멜론 및 그 외 이국적 과일과 바나나, 토마토, 오이 그 외 과일 야채, 또한 카나리 섬에서 생산된 꽃과 와인)

이러한 제도는, 농민들이 제품 품질 요건을 존중하도록 하고, EU 본토에서 멀리 떨어졌거나 고립되어, 또는 어려운 지리적 여건으로 인해 장애를 겪고 있는 곳에서 지역 생산의 부가가치를 높이려는 목적이 있다.

이처럼, 그래픽 심볼과 관련 생산 요건은 지역 시장과 외부 시장의 농업 부문 경쟁력 향상에 기여한다.

EU 외곽지역에 대한 그래픽 심볼이 주변 지역상품에 대한 인식을 어느 정도까지 향상 시켰는가?

원산지가 외곽 지역인 고품질 농산물 생산량 증가를 위해서 이러한 제도를 어떻게 개발해야 하는가?

5. 추가 EU 제도

EU 의 현재 품질제도는 지리적 원산지, 전통 상품, 일부 지역 상품 및 유기농업을 관리하며, EU 의 품질 정책의 초석이 되고 있다. 추가 EU 제도에 포함될 후보가 많이 있으며, 이중에서는 높은 자연가치(HNV) 상품 또는 산간지대 상품, 웰빙 상품, EU 원산지 라벨, 가공 농산물에까지의 에코라벨(Ecolabel) 확대 등이 거론되고 있다. 혁신적인 제도의 촉진도 가능하다.

EU 차원의 신규제도는 국가 또는 민간부문 제도 또는 기타 제도가 적절히 충족시키지 못하는 EU 차원의 정책 수요에 부응할 수 있어야 한다. 공동 농업 정책의 Health Check 의 틀에서 보면, 기후변화 영향, 바이오 다양성 보존, 수자원 이용 등이 가장 우선적 과제인 것으로 보인다.

유럽연합위원회는 추가적 법안이 필요한 지, 또 어떤 경우 일련의 지침 마련으로 충분한 것인지 알아보기 위해, 가능한 신규 제도를 평가한다.

의무적 제도는, 특히 법적 과학적으로 복잡한 근거(예를 들면, 동물 복지)에서 보면 이점을 갖고 있다. 어떤 경우 자발적 제도로 충분할 수도 있고, 제도 개발과 개선 에서 제도 보유자를 돕기 위해 설계된 것일 수 있다.

회원국 행정당국과 위원회뿐 아니라 농민과 이해 관계자의 행정 부담도 규제 정책개선의 원칙과 일관되게,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기존제도와 조치가 부적당하여 EU 차원의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하게 주장할 만한 긴급한 문제가 있는가?

유럽 위원회는 어떤 경우 의무적 제도를 고려해야 하는가? 예를 들면 복잡한 법적 과학적 근거가 있다거나, 소비자의 수용이 전제된 제도를 고려해 보아야 하는가? 그렇다면, 어떻게 이해 관계자와 공공당국에 대한 행정 부담을 가능한 한 완화 시킬 수 있는가?

PART 3 인증제도

1. 식품 품질 인증제도

최근 몇 년간, 민간 또는 국립 식품 품질 인증제도가 상당히 늘어났다. 소매업자에게는, 변화하는 소비자 수요에 대응하고 특정 품질을 지닌 소비자 상품을 전달할수 있는 수단이 된다. 이 제도가 인증여부에 달려있기 때문에, 소비자는 라벨에 의존해야 한다.

농민에게 있어서는 소비자에게 상품 품질을 알리기 위한 비용이자 기회가 된다.

EU에서 인증제도는 의무 생산 표준의 준수에서부터, 환경 보호, 동물 복지, 노동 복지, 공정 무역, 기후변화 감축, 윤리적 종교적 또는 문화적 사항, 농법 그리고 원산지 같은 추가 요구사항까지 그 범위가 폭넓다.

식량산업과 소매업자는 공급 상품을 추가적으로 보증해 주는 품질 인증에 의지할 수 도 있다. 농민이 기준을 정확히 따랐다는 것을 법적으로 보증해 주고 판매자의 평판을 지켜 줄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 이런 제도와 라벨의 빠른 확산으로 제도 요건의 투명성, 라벨내용에 대한 신뢰성, 공정한 상업관계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한 우려가 생겨났다.

이러한 논의에서 유럽위원회는 주로 민간제도의 운영, 개도국을 포함, EU 안팎의 농민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한 견해를 얻고자 한다.

1) 정책 목표 전달에 있어 인증제의 효과

대규모 소매업체는 인증제도를 어떤 생산이나 배달 조건에 대한 준수의무를 보장 또는 부과하는 수단으로 사용한다. 수년간, 인증제의 등장은 소비자가 구매 식품에 대해 더 많이 알도록 하기 위해 소비자 수요 평가를 반영하였다. 어떤 특징이 있거나 특정 농법을 사용한 고품질 상품을 찾는 소비자에게 있어, 다음은 혁신을 촉진 시키는 원동력이다.

- 농촌을 연상시키고, 자연 또는 사회적으로 지속 가능한 농법을 사용한 지역 및 계절상품을 선호하는 소비자의 욕구
- 기후변화를 극복하고, 물과 토지 등의 자연 자원을 좀더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생물 다양성 등의 환경 문제.
- 식품의 영양성분 가치향상
- 사회적 문제 : 공정 무역 라벨은 생산자와 노동자를 경제적 사회적으로 취약한 위치에서(주로 개도국) 안보적, 경제적으로 자립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전략적 으로 마련한 제도의 예이다.
- 동물 복지 : 소매업체와 과학계와 함께 일하는 동물 복지단체와 농민들이 추진 하는 민간 제도, 이러한 동물 복지제도는 마케팅 목적에 있어 일반적으로 최소한의 요건 이상을 충족함을 인증해주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으로 인해, 적어도, 다양한 인증제도가 등장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인증제도의 마련과 이용은 시장수요의 존재 여부에 달려 있는 경우도 있다.

'기존의 법적 요구사항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는 기준 제도(baseline scheme)라고 부른다. 특정 품질 요건을 추가하는 대신에 이 제도는 규제적인 기준 요건을 채택하고, 운영자를 위한 세세한 규정으로 이를 발전시키고, 준수했는지 체크하게 된다. 이런 종류의 제도는 '인증' '보증' 이라는 말로, 제품이 위생 등의 관련 표준을 준수하였음을 광고하다. 이 제도는 기업의 명성을 보호하고 어떠한 책임성 문제 발생 가능성이나 그 피해를 줄이기 위해 마련되었다. 현재로서는, 기준 제도를 존중하면서 제품이 생산되다는 사실이 최종 소비자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질의 15

고품질 상품 인증제가 제품 특징과 농법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어느 정도 까지 충족 시켜주고 있는가?

기준 요건 준수를 보증해 주는 인증제가 소비자를 오도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어느 정도 인가?

인증제도 요건을 따르는 식품 생산자(주로 중소 규모 기업)의 비용과 혜택은 무엇인가? 생산자 조직이 적극 참여하도록 홍보해야 하는가?

2) EU의 인증제도 감독

인증제도는 매우 다양하여, 그 사용에 관한 법적 체제가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정책 부분에 걸쳐 있다. 인증제도는 다음과 같은 일부 제약에 의해 구속된다.

내부 시장 규정. 인증 서비스는 전국적으로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지만 이 제도가 내부 시장에서 무역에 대한 현실적 장벽이 되어서는 안 된다.

- 경쟁에 관한 규정
- 소비자 정보와 라벨 표기 요건. 소비자들은 라벨 표기 내용의 의미를 파악하 고 있는가?
- 인증제가 다루는 대상에 대한 특정 법규

유럽 위원회는 원칙적으로 이러한 이슈에 대한 특정 인증제를 다루는 추가적 법규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으나, 지침 마련에 대해서는 검토 해 볼 수 있다. 제도 개발과 개선에 있어 인증제도 보유자를 돕도록 지침을 설계해야 한다.

질의 16

EU의 지침은 인증제도의 좀더 일관적인 발전에 기여 할 만큼 충분한가?

3) 부담완화와 비용 감축

인증제도에 가입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은 직접 비용과 간접비용 두 가지로 구분 된다. 직접 비용은 회원가입 수수료, 3자 검사와 인증과 관련된 것이며 간접 비용은 인증제 표준 준수와 관련된 것이다(시설 업그레이드를 위한 투자비용)

특히 상당한 (재정적 행정적) 부담을 감수해야 하는 소규모 생산자는 한가지 이상의 인증제도에 가입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만약 인증제에 가입하지 않는 농민이 있다면, 그의 상품은 어떤 시장판매처에서 퇴출될지도 모른다.

민간 인증제도에 적용되는 인증과 감독 요건을 공식적인 감독 요건에 추가할 필요가 있다.

질의 17

어떻게 한가지 이상의 품질 인증제에 가입하는 데 드는 행정적 비용과 부담을 줄일수 있는가?

4) 국제적 차원

국제 교역에서 인증제도는 일정 품질 특징을 가진 상품을 홍보하고 판매하는데 도움이 된다. 대부분의 인증제가, 농민/생산자, 식품업계 또는 소매 판매자이든 간에 민간 소유인 점을 감안 해 볼 때, 유럽 연합 위원회의 개입은 미미하다.

EU 시장에 공급하는 개도국 농민에게 있어, 민간 인증제는 비용이면서 기회가 된다. 농민들은 그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다. 그러나 만약 EU 소매판매자가 사용하는 인증제도에 의해 상품이 인증을 받는다면, EU에 판매할 수 있는 더 나은 입지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동물복지에 있어 광범위한 농법 관련 요건은 동물 복지 친화적 제품관련교역을 발전시키는 중요한 기회가 된다. 생산 방법에 관한 인증이 EU 소비자들에게 농법 여건에 대한 적절한 보증을 해주기 때문이다.

질의 18

EU 수출을 돕고 수출 시장에서 유럽의 고품질 제품을 홍보하는데 민간 인증제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

EU는 특정 소매업자에게 상품을 공급을 위해 민간 인증제도에 가입할 필요가 있는 개도국 생산자를 위해 시장 접근을 어떻게 촉진시킬 수 있는가?

■ 결론

지금까지 농산품 품질 정책에 관한 일반적 내용을 살펴보았다. 이 문서의 목적은 이 글을 통해 토론을 이끌어내고 독자의 기고를 받고자 함이다. 그렇기에 모든 이해 당사자와 관계자들이 적극 의견을 제시해 주기를 바란다. 규정 개선(Better Regulation)에 관한 유럽위원회의 논의 에서도 그랬듯이, 정책 개발은 가능한 한 투명하게, 이해 관계자의 목소리를 주의 깊게 경청한 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 그린 페이퍼 문서(Green Paper)는 정책 개발과정의 첫 번째 단계여야 한다. 의제에 대한 응답을 보내 주는 여러 분들의 기고가 정책대안 문서 (즉, a Communication) 마련의 기초가 될 것이다. 이 정책대안 문서는 2009년 5월에 출간될 것으로 계획 하고 있다. 이 그린 페이퍼에 관한 논의의 성공 여부는 다양한 분야의 이해 관계자들이 이렇듯 중요한 공론 과정을 거쳐 그들의 관심사항, 분석, 아이디어를 설명하고 서로 나누려는 의지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OECD의 농업 지지정책 지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김병률/전문연구원 이명기

2008년 6월 OECD는 각 회원국 농업 지지정책의 변화를 정리·평가한 보고서를 출판하였다. 이 보고서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각국 농업정책의 생산자 지지 정도를 계측하여 농업정책 개혁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를 파악하는데 주로 사용되는 생산자 지지 추정치(Producer Support Estimate; PSE)의 개념을 소개하고, OECD에서 발표하는 농업 지지정책과 관련된 다양한 지표들을 소개한다.

l. PSE의 개념

OECD는 1980년대 중반 이후 매년 회원국들의 농업정책과 관련된 이전지출액 또는 지지액(monetary transfer(support))을 계측하여 발표해 왔다. 이를 위해 OECD는 이전지출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지표를 개발했는데, 그 중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지표가 생산자 지지 추정치(Producer Support Estimate; PSE)이다. OECD에서 매년 발표하는 이 지표는 농업에 대한 정부 지지와 관련된 자료 중국제적으로 비교가능하고 공신력 있는 유일한 지표이다.

지지 정도를 계측하는 기본적인 방법론은 변경되지 않았으나 정부 정책 계측 방법은 계속 발전해 왔으며, 이는 전체 PSE의 구성요소에 부분적으로 반영되어 왔다. PSE의 구성요소는 정책 개혁에 대한 평가를 향상시키고 정책 분석에 이용하기 위해 몇 개의 그룹으로 분류된다. OECD 국가들은 2년 동안 논의를 거쳐 PSE 내 정책 그룹 분류(the classification of the generic policy categories)를 크게 바꾸고, 품목 지지 정도의 계측 방식에 변화를 주고, 관련 지표의 대표성(presentation을 개선하였다. 이러한 수정은 OECD 국가들의 농업 정책 변화를 반영한 결과이다. 아래의 내용은 새로운 PSE 분류와 데이터 및 지표가 정책의 변화를 알아보는데 어떻게 이용될 수 있는지를 설명한다.

● 농업 지지정책의 계측

생산자 지지추정치는 아래 세 가지 그룹의 정책 수단을 통해 "농업인에게 지급되는 연간 이전 지출액(annual monetary transfer)"의 추정치를 의미한다.

- 1) 시장 가격 지지 추정(market price support(MPS) estimation): 국내 농축산물의 소비자 가격을 수입산의 국내 가격보다 더 높게 (때때로 더 낮게) 유지하기 위한 정책 수단으로, 이 지지 방식에 소요되는 예산은 소비자에게 전가된다.
- 2) 예산 지불(budgetary payments): 농축산물 생산량, 생산요소 투입량, 사육두수, 경작면적, 과거의 (일정한) 기준 기간, 농가수입 또는 소득에 기초하여 생산자에게 지불하는 정책을 의미한다. 이 정책에 필요한 예산은 납세자들이 부담하게 된다.
- 3) 포기된 예산 수입 추정(budgetary revenue foregone estimation): 세금이나 요금 할인을 통해 투자 신용 제공(investment credit), 에너지, 물 등 농업생산 투입요소의 비용을 낮추는 간접적인 예산 지지(implicit budgetary support) 정책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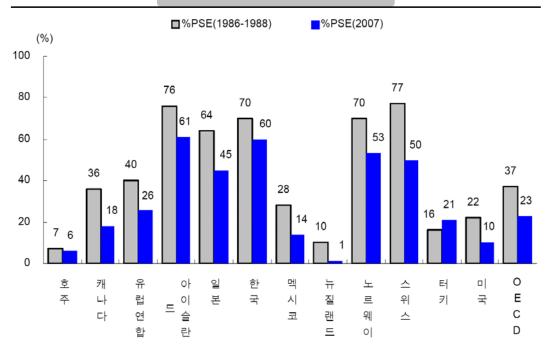
중요한 것은 '지지액(support)이 1) 정부 회계상의 예산 지출, 2) 포기된 예산 수입의 추정액, 3) 농업생산물의 국내 및 국제 가격 차이에 대한 추정액(시장 가격 지지)까지도 포함한다는 것이다.

생산자 지지추정치 = 시장 기격 지지 추정 + 예산 지출 + 포기된 예산 수입 추정

PSE 지표는 자국 통화, US 달러, 유로화로 표시되는 금액 자체와 지지액 (support payments)을 포함한 생산자 총 수취액(the value of gross farm receipts)에 대한 PSE 금액의 비율로 표시되는 %PSE가 있다. %PSE는 항상 0과 100 사이의 값을 갖는다. %PSE가 100에 가까울수록 생산자의 수입 중 정부 지지정책에 의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얻게 된 수입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PSE = $\frac{\text{생산자 지지 추정치(PSE)}}{\text{생산자 총 수취액}}$ X 100

그림 1. OECD 국가들의 %PSE 변화



- 주 : 1) 2007년 %PSE는 잠정치임.
 - 2) 유럽연합은 1986~1988년에는 EU-12, 2007년에는 EU-27임.
 - 3) 오스트리아, 핀란드, 스웨덴은 모든 기간 동안 OECD에 포함되고 유럽연합에는 1995년부터 포함됨.
 - 4) 체코, 헝가리, 폴란드, 슬로바키아는 모든 기간 동안 OECD에 포함되고 유럽연합에는 2004년부터 포함됨.
 - 5) OECD, UE 회원국이 아닌 국가는 OECD 전체에 포함하지 않음.

자료: OECD, Agricultural Policies in OECD Countries, At A Glance, 2008.6.

OECD 회원국 전체의 %PSE는 1986~1988년 평균 37에서 2007년 23(잠정치)로 감소하였다. 주요 회원국의 %PSE는 터키를 제외하고 모두 감소하였는데 뉴질랜드, 캐나다, 멕시코, 미국 등의 %PSE가 크게 감소하였고, 유럽연합, 일본, 한국 등은 PSE 비중감소가 비교적 완만하게 이루어졌다.

PSE로부터 도출되는 다른 지표들은 생산자 명목 지원 계수(Producer Nominal Assistance Coefficient; NAC)와 생산자 명목 보호 계수(Producer Nominal Protection Coefficient; NPC)가 있다. 생산자 명목 지원 계수는 모든 형태의 지지를 받을 경우 생산자 총 수취액이 얼마나 증가하는지를 계측함으로써 지원의 수준을 측정한다. 생산자 명목 보호 계수는 현행 생산량을 기준으로 지불액이 포함되었을 경우 농가들의 평균 수취가격이 얼마나 높아지는지를 계측하기 위한 것으로, 농가보호의 수준을 측정한다. PSE를 구성하는 항목들의 비중을 보면 해당 국가 정책의 성격(policy mix)을 분석할 수 있다. 즉 생산 왜곡(production distorting), 생산 중립성(decoupled), 시장 목표(targeting)등을 계측할 수 있다.

NAC = $\frac{\text{생산자 총 수취액(모든 형태의 지지 포함)}}{\text{생산자 총 수취액(지지 제외)}} \times 100$

NPC = $\frac{\overline{\text{B}}\overline{\text{D}}$ 공가수취가격(현행 생산기준지불액 포함) \times 100 국경 가격 border price

이러한 지표들의 주된 목적은 매년 지지정책과 관련된 금액의 추정치와 지지정책의 구성을 보여주고, 모든 OECD 국가들이 수행하는 정책 개혁의 추진 정도를 감시하고 평가하기 위해 국가별로 연도별로 추세를 비교하는 것이다. PSE 데이터는 다양한 정책 수단들이 농업생산, 무역, 소득,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OECD 분석 모델들의 기본 자료로 이용된다.

PSE에서의 정책 그룹 분류는 정책의 목적과 영향에 기초하는 것이 아니고 정책이 실제로 어떻게 집행되는가에 기초한다. 지지정책 구성의 변화는 농업 정책 개혁의 정도를 진단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이다. 농업 정책의 본질은 계속해서 변화하기 때문에 지지정책을 분류하기 위한 그룹 역시 바뀌어야 한다. 이것이 이번에 PSE의 그룹 분류가 개정된 이유이다. 중요한 것은 PSE에서의 정책 그룹의 종류와 정의만이 변경되었으며 전체 PSE 수준은 이번 개정으로 인해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다.

2. 기타 농업 지지정책 관련 지표들

소비자 지지 추정치(Consumer Support Estimate; CSE)는 농축산물 소비자로부터 (또는 소비자에게로)의 연간 이전 지출액(annual monetary transfer)을 의미한다. 이 추정치는 농업 지지 정책의 결과 변화된 농가 수취가격을 기준으로 계측하고, 이 과정에서 정책의 속성, 목적, 농축산물 소비에 미치는 영향 등은 고려하지 않는다. 이 추정치가 음의 부호(negative)를 나타내면, 이는 정부의 시장 가격 지지가 소비자 들에게 부담 (간접적인 세금)을 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가격을 낮추기 위해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보조 정책보다 농산물 가격을 높이기 위한 정책의 효과가 크다는 의미이다.

총 농업지지 추정치(Total Support Estimate; TSE)는 농업 지지 정책 실시 결과 납세자와 소비자로부터 이전되는 연간 이전 지출액(annual monetary transfer) 총액을 의미한다. 이 추정치는 정책의 목적(지지의 목적), 지지수단이 농업생산과 농가수임 그리고 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반영하지 않는다.

표 1. OECD 국가별 생산자 지지 추정치

국가	구분	1986~1988	2005년	2006년	2007년
	PSE(백만 달러)	1,014	1,372	1,506	1,872
	%PSE	7	4	6	6
	생산자 NPC	1.04	1.00	1.00	1.00
	생산자 NAC	108	1.05	1.06	1.06
캐나다	PSE(백만 달러)	6,048	6,497	7,240	7,001
	%PSE	36	22	23	18
	생산자 NPC	1.39	1.13	1.16	1.09
	생산자 NAC	1.56	1.28	1.29	1.23
유럽연합	PSE(백만 달러)	98,585	130,824	130,622	134,318
	%PSE	40	32	31	26
	생산자 NPC	1.76	1.25	1.19	1.13
	생산자 NAC	1.67	1.47	1.44	1.35
아이슬란드	PSE(백만 달러)	193	247	215	212
	%PSE	76	70	68	61
	생산자 NPC	4.10	2.91	2.74	2.18
	생산자 NAC	4.26	3.29	3.10	2.54
일본	PSE(백만 달러)	49,535	44,576	39,239	35,230
	%PSE	64	54	51	45
	생산자 NPC	2.63	2.10	1.99	1.74
	생산자 NAC	2.76	2.18	2.06	1.83
한국	PSE(백만 달러)	12,055	23,526	25,282	25,461
	%PSE	70	62	63	60
	생산자 NPC	3.32	2.47	2.56	2.36
	생산자 NAC	3.38	2.65	2.72	2.49
멕시코	PSE(백만 달러)	8,364	4,960	6,136	6,053
	%PSE	28	13	15	14
	생산자 NPC	1.34	1.05	1.08	1.05
	생산자 NAC	1.39	1.15	1.17	1.16

세계농업 흐름분석

국가	구분	1986~1988	2005년	2006년	2007년
뉴질랜드	PSE(백만 달러)	432	138	96	82
	%PSE	10	1	1	1
	생산자 NPC	1.02	1.01	1.01	1.00
	생산자 NAC	1.12	1.01	1.01	1.01
노르웨이	PSE(백만 달러)	2,800	3,050	3,007	2,803
	%PSE	70	67	65	53
	생산자 NPC	4.15	2.47	2.27	1.63
	생산자 NAC	3.38	3.06	2.89	2.14
스위스	PSE(백만 달러)	5,385	5,591	4,880	4,180
	%PSE	77	68	62	50
	생산자 NPC	4.80	2.31	1.93	1.41
	생산자 NAC	4.38	3.09	2.65	1.99
터키	PSE(백만 달러)	3,118	12,615	10,810	13,438
	%PSE	16	25	20	21
	생산자 NPC	1.17	1.32	1.20	1.17
	생산자 NAC	1.19	1.34	1.26	1.27
미국	PSE(백만 달러)	36,782	41 024	30,860	32,663
	%PSE	22	15	11	10
	생산자 NPC	1.14	1.06	1.03	1.04
	생산자 NAC	1.29	1.08	1.13	1.11
0ECD 전체	PSE(백만 달러)	239,269	272,076	257,287	258,236
	%PSE	37	28	26	23
	생산자 NPC	1.50	1.24	1.20	1.15
	생산자 NAC	1.59	1.40	1.35	1.29

주 : 1) 2007년 %PSE는 잠정치임.

자료: OECD, Agricultural Policies in OECD Countries: At A Glance, 2008.6.

²⁾ 유럽연합은 1986~1988년에는 EU-12, 2007년에는 EU-27임.

³⁾ 오스트리아, 핀란드, 스웨덴은 모든 기간 통안 OECD에 포함되고 유럽연합에는 1995년부터 포함됨.

⁴⁾ 체코, 헝가리, 폴란드, 슬로바키아는 모든 기간 통안 OECD에 포함되고 유럽연합에는 2004년부터 포함됨.

⁵⁾ OECD, UE 회원국이 아닌 국가는 OECD 전체에 포함하지 않음.

표 2. OECD 국가별 소비자 지지 추정치

 국가	구분	1986~1988	2005년	2006년	2007년 (잠정치)
호주	CSE(백만 달러)	241	208	-183	-207
	%CSE	-6	2	-2	-2
	소비자 NPC	1.06	1.00	1.00	1.00
	소비자 NAC	1.06	1.02	1.02	1.02
캐나다	CSE(백만 달러)	-2,824	-2,933	-3,904	-2,873
	%CSE	-24	-16	-18	-11
	소비자 NPC	1.37	1.18	1.22	1.13
	소비자 NAC	1.32	1.18	1.22	1.13
유럽연합	CSE(백만 달러)	-74,686	-53,838	-49,608	-45,785
	%CSE	-37	-16	-14	-10
	소비자 NPC	1.75	1.22	1.18	1.13
	소비자 NAC	1.58	1.20	1.16	1.12
아이슬란드	CSE(백만 달러)	-117	-109	-92	-75
	%CSE	-69	-52	-49	-36
	소비자 NPC	4.21	2.15	1.99	1.60
	소비자 NAC	3.34	2.09	1.95	1.57
일본	CSE(백만 달러)	-61,128	-52,003	-46,349	-39,415
	%CSE	-64	-52	-48	-40
	소비자 NPC	2.80	2.07	1.92	1.67
	소비자 NAC	2.80	2.07	1.92	1.67
한국	CSE(백만 달러)	-11,754	-25,942	30,347	-31,437
	%CSE	66	59	-61	-57
	소비자 NPC	2.92	2.42	2.58	2.35
	소비자 NAC	2.91	2.42	2.57	2.34
멕시코	CSE(백만 달러)	-6,225	-1,706	-2,442	-2,353
	%CSE	-24	-5	-6	-5
	소비자 NPC	1.37	1.06	1.08	1.06
	소비자 NAC	1.32	1.05	1.07	1.06

 국가	구분	1986~1988	2005년	2006년	2007년 (잠정치)
뉴질랜드	CSE(백만 달러)	-60	-69	-58	-40
	%CSE	-6	-3	-3	-2
	소비자 NPC	1.07	1.03	1.03	1.02
	소비자 NAC	1.07	1.03	1.03	1.02
노르웨이	CSE(백만 달러)	-1,332	-1,538	-1,485	-1,114
	%CSE	-56	53	-51	-33
	소비자 NPC	3.29	2.30	2.12	1.55
	소비자 NAC	2.28	2.15	2.03	1.50
스위스	CSE(백만 달러)	-4,937	-3,707	-3,019	2,010
	%CSE	-73	-55	-47	-30
	소비자 NPC	4.72	2.31	1.96	1.45
	소비자 NAC	3.72	2.21	1.89	1.42
터키	CSE(백만 달러)	-2,394	-8,956	-6,105	6,416
	%CSE	-16	-21	-15	-12
	소비자 NPC	1.21	1.30	1.19	1.14
	소비자 NAC	1.19	1.27	1.17	1.13
미국	CSE(백만 달러)	-4394	14,712	19,051	12,965
	%CSE	-4	8	10	5
	소비자 NPC	1.12	1.05	1.03	1.05
	소비자 NAC	1.04	0.93	0.91	0.95
0ECD 전체	CSE(백만 달러)	-161,389	-135,700	-124,026	-115,904
	%CSE	-30	-17	-15	12
	소비자 NPC	1.54	1.26	1.22	1.17
	소비자 NAC	1.43	1.21	1.18	1.14

주 : 1) 2007년 %PSE는 잠정 치임.

자료: OECD, Agricultural Policies in OECD Countries: At A Glance, 2008.6.

²⁾ 유럽연합은 1986~1988년에는 EU-12, 2007년에는 EU-27임.

³⁾ 오스트리아, 핀란드, 스웨덴은 모든 기간 동안 OECD에 포함되고 유럽연합에는 1995년부터 포함됨.

⁴⁾ 체코, 헝가리, 폴란드, 슬로바키아는 모든 기간 동안 OECD에 포함되고 유럽연합에는 2004년부터 포함됨.

⁵⁾ OECD, UE 회원국이 아닌 국가는 OECD 전체에 포합하지 않음.

표 3. OECD 국가별 생산자 지지 추정치 구성

단위 : %

국가	구분	1986-1988	2005년	2006년	2007년
호주	%PSE	7	4	6	6
	- 품목산출량 기준 지불	45	5	0	0
	- 투입 생산요소 기준 지불	35	49	60	44
	- 현재 생산면적/두수/수령액	0	2	2	3
	/소득 기준 지불액(생산 연계) - non-current 생산면적/두수/수령액				
	- non-current 생산년식/구구/구성식 /소득 기준 지불(생산 연계)	0	0	0	0
	- non-current 생산면적/두수/수령액 /소득 기준 지불(생산 중립적)	20	43	38	53
	-비품목 기준 지불	0	0	0	0
	- 기타 지불	0	0	0	0
캐나다	%PSE	36	22	23	18
	- 품목산출량 기준 지불	58	45	54	41
	- 투입 생산요소 기준 지불	18	7	8	8
	- 현재 생산면적/두수/수령액	22	24	25	27
	/소득 기준 지불액(생산 연계) - non-current 생산면적/두수/수령액 /소득 기준 지불(생산 연계)	0	0	2	8
	- non-current 생산면적/두수/수령액 /소득 기준 지불(생산 중립적)	0	22	11	14
	-비품목 기준 지불	0	1	0	0
	- 기타 지불	2	1	0	
유럽연합	%PSE	40	32	31	26
	- 품목산출량 기준 지불	91	51	42	37
	- 투입 생산요소 기준 지불	5	10	11	12
	- 현재 생산면적/두수/수령액 /소득 기준 지불액(생산 연계)	4	233	17	17
	- non-current 생산면적/두수/수령액 /소득 기준 지불(생산 연계)	0	0	0	0
	- non-current 생산면적/두수/수령액 /소득 기준 지불(생산 중립적)	0	15	30	33
	-비품목 기준 지불	0	1	2	1
	- 기타 지불	0	0	0	0

국가	구분	1986-1988	2005년	2006년	2007년
아이슬란드	%PSE	76	70	68	61
	- 품목산출량 기준 지불	92	78	78	73
	- 투입 생산요소 기준 지불	8	7	5	5
	- 현재 생산면적/두수/수령액	0	0	0	3
	/소득 기준 지불액(생산 연계)	0	0	0	3
	- non-current 생산면적/두수/수령액	0	14	16	19
	/소득 기준 지불(생산 연계)	U	17	10	10
아이슬란드	- non-current 생산면적/두수/수령액	1	0	0	0
이이르근—	/소득 기준 지불(생산 중립적)		0		
	-비품목 기준 지불	0	0	0	0
	- 기타 지불	0	0	0	0
일본	%PSE	64	54	51	45
	- 품목산출량 기준 지불	93	93	93	89
	- 투입 생산요소 기준 지불	4	3	3	4
	- 현재 생산면적/두수/수령액	0	1	1	0
	/소득 기준 지불액(생산 연계)	U	l	I	
	- non-current 생산면적/두수/수령액	0	0	0	0
	/소득 기준 지불(생산 연계)	0	0	0	
	- non-current 생산면적/두수/수령액	3	3	4	6
	/소득 기준 지불(생산 중립적)	0	0	-	
	-비품목 기준 지불	0	0	0	0
	- 기타 지불	0	0	0	0
한국	%PSE	70	62	63	60
	- 품목산출량 기준 지불	99	89	90	91
	- 투입 생산요소 기준 지불	1	2	2	3
	- 현재 생산면적/두수/수령액	0	6	4	3
	/소득 기준 지불액(생산 연계)	U	0	4	J
	- non-current 생산면적/두수/수령액	0	0	0	0
	/소득 기준 지불(생산 연계)	U	0	U	
	- non-current 생산면적/두수/수령액	0	3	3	3
	/소득 기준 지불(생산 중립적)	0	<u> </u>		
	-비품목 기준 지불	0	0	0	0
	- 기타 지불	0	0	0	0

국가	구분	1986-1988	2005년	2006년	2007년
멕시코	%PSE	28	13	15	14
	- 품목산출량 기준 지불	83	37	43	30
	- 투입 생산요소 기준 지불	17	35	33	41
	- 현재 생산면적/두수/수령액	0	1	2	4
	/소득 기준 지불액(생산 연계)	U	ı		4
	- non-current 생산면적/두수/수령액	0	4	3	6
	/소득 기준 지불(생산 연계)	U		3	0
	- non-current 생산면적/두수/수령액	0	23	18	19
	/소득 기준 지불(생산 중립적)	U	20	10	13
	-비품목 기준 지불	0	0	0	0
	- 기타 지불	0	0	0	0
뉴질랜드	%PSE	10	1	1	1
	- 품목산출량 기준 지불	19	51	57	46
	- 투입 생산요소 기준 지불	48	27	38	54
	- 현재 생산면적/두수/수령액	12	22	5	0
	/소득 기준 지불액(생산 연계)	12	22	5	U
뉴질랜드	- non-current 생산면적/두수/수령액	21	0	0	0
II 르댄ㅡ	/소득 기준 지불(생산 연계)	21		U	U
	- non-current 생산면적/두수/수령액	0	0	0	0
	/소득 기준 지불(생산 중립적)	0	0	0	0
	-비품목 기준 지불	0	0	0	0
	- 기타 지불	0	0	0	0
노르웨이	%PSE	70	67	65	53
	- 품목산출량 기준 지불	72	53	51	42
	- 투입 생산요소 기준 지불	9	6	6	7
	- 현재 생산면적/두수/수령액	19	28	29	36
	/소득 기준 지불액(생산 연계)	19	20	2.9	30
	- non-current 생산면적/두수/수령액	0	14	13	16
	/소득 기준 지불(생산 연계)	U	14	10	10
	- non-current 생산면적/두수/수령액	0	0	0	0
	/소득 기준 지불(생산 중립적)				
	-비품목 기준 지불	0	0	0	0
	- 기타 지불	0	0	0	0

스위스 %PSE 77 68 62 50 - 품목산출량 기준 지불 83 58 52 40 - 투입 생산요소 기준 지불 7 3 4 5 - 현재 생산면적/두수/수령액 /소득 기준 지불(생산 연계) 7 14 16 22 - non-current 생산면적/두수/수령액 /소득 기준 지불(생산 연계) 0 1 1 2 - non-current 생산면적/두수/수령액 /소득 기준 지불 0 2 2 3 - 비품목 기준 지불 0 2 2 3 - 기타 지불 3 3 3 3 - 기타 지불 71 83 74 77 - 투입 생산요소 기준 지불 29 3 8 8 - 현재 생산면적/두수/수령액 /소득 기준 지불(생산 연계) 0 0 0 0 - non-current 생산면적/두수/수령액 /소득 기준 지불(생산 중립적) 0 0 0 0 - 비품목 기준 지불 0 0 0 0 - 기타 지불 0 0 0 0 - 품목산출량 기준 지불 45 35 26 38 - 투입 생산요소 기준 지불 19 23 31 2	국가	구분	1986-1988	2005년	2006년	2007년
- 투입 생산요소 기준 지불 7 3 4 5 - 현재 생산면적/두수/수령액 /소득 기준 지불액(생산 연계) 7 14 16 22 - non-current 생산면적/두수/수령액 /소득 기준 지불(생산 연계) 0 1 1 2 - non-current 생산면적/두수/수령액 /소득 기준 지불(생산 중립적) 0 19 22 25 - 비품목 기준 지불 0 2 2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스위스	%PSE	77	68	62	50
- 현재 생산면적/두수/수령액 /소득 기준 지불액(생산 연계) - non-current 생산면적/두수/수령액 /소득 기준 지불(생산 연계) - non-current 생산면적/두수/수령액 /소득 기준 지불(생산 중립적) - 비품목 기준 지불 0 2 2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 품목산출량 기준 지불	83	58	52	40
/소득 기준 지불액(생산 연계)		- 투입 생산요소 기준 지불	7	3	4	5
/소득 기준 지불(생산 연계)		- 현재 생산면적/두수/수령액	7	1/	16	22
/소득 기준 지불(생산 연계)		/소득 기준 지불액(생산 연계)	/	14	10	
1			0	1	1	2
/소득 기준 지불(생산 중립적)		, , , , , , , , , , , , , , , , , , , ,	0	'	'	
-비품목 기준 지불 0 2 2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0	19	22	25
- 기타 지불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				
터키 %PSE 16 25 20 21 - 품목산출량 기준 지불 71 83 74 77 - 투입 생산요소 기준 지불 29 3 8 8 - 현재 생산면적/두수/수령액 /소득 기준 지불액(생산 연계) 0 0 0 0 - non-current 생산면적/두수/수령액 /소득 기준 지불(생산 중립적) 0 0 0 0 - 비품목 기준 지불 0 0 0 0 - 기타 지불 0 0 0 0 - 기타 지불 0 0 0 0 - 품목산출량 기준 지불 45 35 26 38 - 투입 생산요소 기준 지불 19 23 31 28 - 현재 생산면적/두수/수령액 /소득 기준 지불액(생산 연계) 33 9 11 6 - non-current 생산면적/두수/수령액 0 0 0 0			_			
- 품목산출량 기준 지불 71 83 74 77 - 투입 생산요소 기준 지불 29 3 8 8 - 현재 생산면적/두수/수령액 /소득 기준 지불액(생산 연계) 0 0 0 0 - non-current 생산면적/두수/수령액 /소득 기준 지불(생산 연계) 0 14 17 15 -미품목 기준 지불 0 0 0 0 0 - 기타 지불 0 0 0 0 0 - 기타 지불 0 0 0 0 0 - 기타 지불 10 0 0 0 0 - 품목산출량 기준 지불 45 35 26 38 - 투입 생산요소 기준 지불 19 23 31 28 - 현재 생산면적/두수/수령액 /소득 기준 지불액(생산 연계) 33 9 11 6		- 기타 지불	3	3	3	3
- 투입 생산요소 기준 지불 29 3 8 8 8 - 현재 생산면적/두수/수령액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터키	%PSE	16	25	20	21
- 현재 생산면적/두수/수령액		- 품목산출량 기준 지불	71	83	74	77
/소득 기준 지불액(생산 연계) 0 0 0 - non-current 생산면적/두수/수령액 /소득 기준 지불(생산 연계) 0 0 0 - non-current 생산면적/두수/수령액 /소득 기준 지불(생산 중립적) 0 14 17 15 -비품목 기준 지불 0 0 0 0 - 기타 지불 0 0 0 0 - 기타 지불 0 0 0 0 - 품목산출량 기준 지불 45 35 26 38 - 투입 생산요소 기준 지불 19 23 31 28 - 현재 생산면적/두수/수령액 /소득 기준 지불액(생산 연계) 33 9 11 6 - non-current 생산면적/두수/수령액 / 2 0 0 0 0		- 투입 생산요소 기준 지불	29	3	8	8
- non-current 생산면적/두수/수령액 /소득 기준 지불(생산 연계) - non-current 생산면적/두수/수령액 /소득 기준 지불(생산 중립적) -비품목 기준 지불 0 0 0 0 - 기타 지불 10 0 0 0 - 기타 지불 - 품목산출량 기준 지불 - 투입 생산요소 기준 지불 - 현재 생산면적/두수/수령액 /소득 기준 지불액(생산 연계) - non-current 생산면적/두수/수령액 0 0 0 0 0 - 0 0 0			0	0	0	0
/소득 기준 지불(생산 연계) 0 0 0 - non-current 생산면적/두수/수령액 /소득 기준 지불(생산 중립적) 0 14 17 15 -비품목 기준 지불 0 0 0 0 - 기타 지불 0 0 0 0 - 기타 지불 0 0 0 0 - 기타 지불 0 0 0 0 - 품목산출량 기준 지불 45 35 26 38 - 투입 생산요소 기준 지불 19 23 31 28 - 현재 생산면적/두수/수령액 /소득 기준 지불액(생산 연계) 33 9 11 6 - non-current 생산면적/두수/수령액 0 0 0 0		/소득 기준 시물액(생산 연계)				
- non-current 생산면적/두수/수령액 /소득 기준 지불(생산 중립적) 0 14 17 15 -비품목 기준 지불 0 0 0 0 - 기타 지불 0 0 0 0 미국 %PSE 22 15 11 10 - 품목산출량 기준 지불 45 35 26 38 - 투입 생산요소 기준 지불 19 23 31 28 - 현재 생산면적/두수/수령액 /소득 기준 지불액(생산 연계) 33 9 11 6 - non-current 생산면적/두수/수령액 0 0 0 0			0	0	0	0
/소득 기준 지불(생산 중립적) 0 14 17 15 -비품목 기준 지불 0 0 0 0 -기타 지불 0 0 0 0 미국 %PSE 22 15 11 10 - 품목산출량 기준 지불 45 35 26 38 - 투입 생산요소 기준 지불 19 23 31 28 - 현재 생산면적/두수/수령액 33 9 11 6 - non-current 생산면적/두수/수령액 0 0 0 0		/소득 기준 시물(생산 연계)				
-비품목 기준 지불 0 0 0 0 - 기타 지불 0 0 0 0 미국 %PSE 22 15 11 10 - 품목산출량 기준 지불 45 35 26 38 - 투입 생산요소 기준 지불 19 23 31 28 - 현재 생산면적/두수/수령액 33 9 11 6 - non-current 생산면적/두수/수령액 0 0 0 0			0	14	17	15
- 기타 지불 0 0 0 0 미국 %PSE 22 15 11 10 - 품목산출량 기준 지불 45 35 26 38 - 투입 생산요소 기준 지불 19 23 31 28 - 현재 생산면적/두수/수령액 /소득 기준 지불액(생산 연계) 33 9 11 6 - non-current 생산면적/두수/수령액 0 0 0 0		/소득 기준 시물(생산 중립식) 				
미국 %PSE 22 15 11 10 - 품목산출량 기준 지불 45 35 26 38 - 투입 생산요소 기준 지불 19 23 31 28 - 현재 생산면적/두수/수령액 33 9 11 6 - non-current 생산면적/두수/수령액 0 0 0 0		-비품목 기준 지불	0	0	0	0
- 품목산출량 기준 지불 45 35 26 38 - 투입 생산요소 기준 지불 19 23 31 28 - 현재 생산면적/두수/수령액 /소득 기준 지불액(생산 연계) 33 9 11 6 - non-current 생산면적/두수/수령액 0 0 0 0		- 기타 지불	0	0	0	0
- 투입 생산요소 기준 지불 19 23 31 28 - 현재 생산면적/두수/수령액 33 9 11 6 /소득 기준 지불액(생산 연계) 0 0 0	미국	%PSE	22	15	11	10
- 현재 생산면적/두수/수령액 33 9 11 6 /소득 기준 지불액(생산 연계) 0 0 0 0		- 품목산출량 기준 지불	45	35	26	38
/소득 기준 지불액(생산 연계) 33 9 11 6 - non-current 생산면적/두수/수령액 0 0 0 0		- 투입 생산요소 기준 지불	19	23	31	28
/소득 기준 시물액(생산 연계) - non-current 생산면적/두수/수령액 0 0 0		- 현재 생산면적/두수/수령액	00	0	4.4	
		/소득 기준 지불액(생산 연계)	33	9		О
/소득 기준 지불(생산 연계) ゜ ゜ ゜ ゜		- non-current 생산면적/두수/수령액 /소득 기준 지불(생산 연계)	0	0	0	0

세계농업 흐름분석

국가	구분	1986-1988	2005년	2006년	2007년
	- non-current 생산면적/두수/수령액 /소득 기준 지불(생산 중립적)	1	27	25	22
	-비품목 기준 지불	2	5	8	7
	- 기타 지불	0	0	0	0
0ECD	%PSE	37	28	26	23
	- 품목산출량 기준 지불	82	60	54	51
	- 투입 생산요소 기준 지불	8	10	11	13
	- 현재 생산면적/두수/수령액 /소득 기준 지불액(생산 연계)	8	14	11	11
	- non-current 생산면적/두수/수령액 /소득 기준 지불(생산 연계)	0	0	0	
	- non-current 생산면적/두수/수령액 /소득 기준 지불(생산 중립적)	1	14	21	23
	-비품목 기준 지불	0	1	2	1
	- 기타 지불	0	0	0	0

- 주 : 1) 단위는 %PSE 대비 각 항목의 비중임.
 - 2) 2007년 %PSE는 잠정치임.
 - 3) 유럽연합은 1986~1988년에는 EU-12, 2007년에는 EU-27임.
 - 4) 오스트리아, 핀란드, 스웨덴은 모든 기간 동안 OECD에 포함되고 유럽연합에는 1995년부터 포함됨.
 - 5) 체코, 헝가리, 폴란드, 슬로바키아는 모든 기간 동안 OECD에 포함되고 유럽연합에는 2004년부터 포함됨.
 - 6) OECD, UE 회원국이 아닌 국가는 OECD 전체에 포함하지 않음.

자료: OECD, Agricultural Policies in OECD Countries: At A Glance, 2008.6.

특별기고

1. DDA, 2008년 12월 농업협상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원 신유선

- 2. 한·싱가포르 FTA 체결의 주요내용 및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 연구센터 중국팀 연구원 여지나
- 3. '08 식량위기론, 그 실상과 대책 GSnJ 이사장 이정환/GSnJ 연구원 김재훈



진정한 여행

가장 훌륭한 시는 아직 씌어지지 않았다. 가장 아름다운 노래는 아직 불려지지 않았다.

> 최고의 날들은 아직 살지 않은 날들 가장 넓은 바다는 아직 항해되지 않았고 가장 먼 여행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불멸의 춤은 아직 추어지지 않았으며 가장 빛나는 별은 아직 발견되지 않은 별 무엇을 해야 할지 더 이상 알 수 없을때 그때 비로소 진정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더 이상 알 수 없을 때 그때가 비로소 진정한 여행의 시작이다.

- 나짐 히크메트

DDA, 2008년 12월 농업협상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원 신유선

팔코너(Falconer) 의장은 7월 소규모 각료회의(Ministerial Conference) 때 잠정적으로 합의된 부분과 최근 집중적으로 추진된 이슈별 소그룹회의(Walk in the Woods) 논의를 통해 의견 절충이 있었던 분야를 중심으로 12월 6일 세부원칙(Modalities) 4차 수정안을 배포하였다. 이번 4차 수정안은 지난 7월 소규모 각료회의시의 잠정합의안 내용이 대체로 반영된 것이다. 한편, 주요국간 아직 입장차이가커서 쟁점이 되어온 개도국 특별긴급관세(Special Safeguard Mechanism: SSM), 민감품목(Sensitive Product: SeP), 수입쿼터(Tariff Rate Quota: TRQ) 신설 등에 대해서는 수정안에 반영시키지 못하고 별도의 의장보고서(Working Document)형태로 제시하였다.

이후 12월 8일 그린룸(Green Room) 회의 이후 라미(Lamy) WTO 사무총장은 비농산물 분야별(Non-Agricultural Market Access, NAMA) 자유화, 농업분야의 SSM 및 변화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주요국들과 협의를 가졌으나 해결책을 찾지 못하였다고 하며, 따라서 12월 중순에 개최하기로 예정되었던 각료회의를 소집하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러한 라미(Lamy) 총장의 의견에 참가국들은 대체로 동의하며, 내년도 협상은 4차 수정안의 내용을 기초로 빠른 시일 내에 재개되어야 한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4차 수정안(2008년 12월)

1. 세부원칙 4차 수정안의 주요 내용

● 시장접근 분야

가. 관세 감축

4차 수정안은 3차 수정안의 기본 틀(선진국 최소 감축률 54%, 개도국 최대감축률 36%)을 유지한 채 그동안 괄호로 남겨 놓은 4구간의 관세감축률을 70%(개도국 46.7%)로 확정하였다. 특이한 점은 개도국의 관세감축 이행기간을 기존의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여 개도국의 신축성이 확대되었다는 점이다.

표 1. 세부원칙 3차. 4차 수정안 주요 내용 비교: 관세감축

3차 수정안(2008년 7월)

	¹ 간경계	감축률(%)	구긴	ŀ경계	감축률(%)
4구간	75% 초과	66~73	4구간	130% 초과	70
3구간	50~75%	64	3구간	80~130%	64
2구간	20~50%	57	2구간	30~80%	57
1구간	20% 이하	50	1구간	30% 이하	50
○개도국 김	남축률		○개도국 감축률 - 구간경계 감축률(
	¹ 간경계	감축률(%)			감축률(%)
	² 간경계 130% 초과	감축률(%) 44-48.7			감축률(%) 46.7
			구긴	·경계	
4구간	130% 초과	44-48.7	구긴 4구간	·경계 130% 초과	46.7
4구간 3구간	130% 초과 80~130%	44-48.7 427	구긴 4구간 3구간	·경계 130% 초과 80~130%	46.7 42.7

○선진국 감축률: 최상위구간 감축률 마정 ○선진국 감축률 최상위구간 감축률(70%) 제시

나. 관세상한(Tariff Capping)

관세상한은 관세가 일정수준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상한을 설정하는 것을 말하며, 세부원칙에 일률적인 관세상한은 도입되지 않았다.

4차 수정안은 3차 수정안과 마찬가지로 관세상한의 구간경계(Threshold)를 선진국 100%, 개도국 150%로 유지하고 있다. 민감품목은 관세상한의 적용 예외로 인정하되, 이에 대한 대가로 구간경계를 상회하는 해당 세 번에 대해 국내 소비량의 0.5%를 추가 증량해야 한다.

비민감품목 관련 내용은 여전히 괄호로 남겨 두었는데, 범위를 기존 1% 또는 2%에서 1%로 설정하고, 비TRQ 신설 대안(TRQ 증량, 이행기간 조정, 감축률 증대 등 3개 대안 중 한 가지 선택)을 유지하면서 감축률을 기존의 5% 추가에서 10% 추가로 조정하였다.

한편, 팔코너(Falconer) 의장은 비민감품목 관세상한 문제와 관련하여 2%까지 인정하되 4년 내에 100% 이하로 감축하도록 하는 절충안을 작업문서(Working Document)를 통해 제시하였다.

표 2. 세부원칙 3차. 4차 수정안 주요 내용 비교: 관세상한

3차 수정안(2008년 7월)

- 관세상한(선진국 100%, 개도국 150%)에 대한 일부 품목 적용 배제
- 특별품목 : 보상없이 상한적용 배제
- 민감품목: 관세상한 적용을 배제하되 TRQ를 0.5% 추가 증량(개도국은 0.33% 증량)
- 비민감품목 : 상한적용 예외범위를 1~ 2%로 한정하면서 추가 부담 규정
- * 모든 민감품목에 TRQ를 0.5% 추가증량 하거나, 해당 세 번의 관세감축 이행 기 간 2년 단축 or 관세감축률 5%p 추가

4차 수정안(2008년 12월)

- ○민감품목 및 특별품목의 관세상한 적용 배제 및 보상 규정은 동일
- ○비민감품목의 상한적용 배제문제는 []으로 처리, 미해결쟁점으로 남겨둠.
- 상한적용 예외범위: 1%
- 보상방안: 전체 민감품목에 대해 TRQ를 0.5% 추가증량하거나 해당 비민감품목의 이행기간 2년 단축 또는 관세감축률 10%p 추가

다. 민감품목(Sensitive Product: SeP)

민감품목은 일반품목의 관세 감축률 공식보다 낮은 감축률을 적용할 수 있으나 그에 대한 보상으로 수입쿼터(TRQ)를 증량해야 한다.

4차 수정안은 기존 구조를 유지한 체 그동안 범위로 남아있었던 민감품목 개수를 4%(개도국 5.3%)로 확정하였다. 민감품목 지정에 따른 관세감축 이탈(Deviation)은 기존의 2/3, 1/3, 1/2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 그동안 쟁점사항이었던 '동일 품목내 상이한 관세이탈 지정 가능 여부'와 관련하여 동일 품목에 대해서는 동일한 관세 이탈을 설정해야 함을 새롭게 명시하였다.

이와 함께 3차 수정안에서 범위로 제시되었던 보상(Payment)이 구체화되었는데, 2/3 관세이탈시 그에 대한 보상으로 TRQ를 국내소비량의 4% 증량하는 것으로 확정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TRQ 증량기준이 되는 소비량 산출방식(Annex C)을 제시하였으며, 세부원칙에 민감품목 소비량 데이터(TRQ 증량 기준)를 첨부하도록 하여 이들 품목에 한하여 민감품목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민감품목 소비량 데이터를 2008년 12월 31일까지 웹사이트에 게재하도록 규정하였다.

표 3. 세부원칙 3차, 4차 수정안 주요 내용 비교: 민감품목

3차 수정안(2008년 7월) 4차 수정안(2008년 12월) ○개수: 전체 세번의 4% 또는 6% ○개수 및 TRQ 증량 단일수치 제시 ○TRQ 증량: 소비량의 4~6% - 개수 : 4%, TRQ 증량 : 소비량의 4% - TRQ 증량은 이행첫날 1/4, 3년간 증량 (개도국은 개수 l/3 추가, TRQ는 2/3 수준) (개도국은 개수 1/3 추가, TRQ는 2/3 수준)|○개도국에 대한 이행기간 조정옵션을 추가 ○개도국에 대해 TRQ 증량 외 옵션 제시 인정하되, 이행기간을 단축 - 구간감축률 적용하되 3년 연장 - 구간감축률의 2/3를 적용하되. 이행기간 3년 적용(단. 전체 민감 품목의 1/2로 한정) - 구간감축률의 3/4 적용하되 2년 단축 (단. 민감품목 수의 2/3에 한정) - 1/2 적용+이행기간 2년(단. 1/3로 한정) ○소비량 계산방식 최근 논의내용 반영 - 1/3 적용+이행기간 1년(단, 1/4로 한정)

라. 특별품목 (Specail Product: SP)

개도국은 식량안보 생계유지, 농촌개발과 관련된 지표(Indicator)를 기초로 SP를 지정할 수 있다. SP는 개도국만 사용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를 포함한 개도국 특별 품목그룹(G33)이 일부 SP의 관세감축 면제 등을 주장하여 왔다. SP는 낮은 관세 감축률을 적용할 수 있으며, 민감품목과는 달리 TRQ 증량 의무가 없고 관세상한의 적용도 받지 않는다는 특혜를 가진다.

4차 수정안에서는 그동안 범위로 제시되었던 SP 개수 및 평균감축률이 한 가지 수치로 확정되었다. SP 개수는 전체 세번의 12%까지 지정할 수 있고, 평균 감축률은 11%이다. 그리고 세번의 5%까지는 관세감축 면제를 인정하고 있다.

표 4. 세부원칙 3차, 4차 수정안 주요 내용 비교: 특별품목

3차 수정안(2008년 7월)	4차 수정안(2008년 12월)		
○개수: 10~18%	○개수 및 평균감축률 등 단일수치 제시		
○6% 감축면제 또는 감축면제불가	- 개수 12%, 평균 11% 감축, 감축면제범위		
- 전체 SP를 평균 10~14% 감축	5%		

마. 개도국 특별긴급관세(Special Safeguard Mechanism: SSM)

팔코너(Falconer) 의장은 그동안 집중적인 소그룹회의의(Walk in the Woods)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의견 접근이 없었음을 고려하여 4차 수정안을 배포하면서 핵심 쟁점인 UR 양허 관세 초과 SSM에 대한 별도 작업문서(Working Document)를 배포하였다. 이에 따르면 SSM 발동 품목 수는 전체 세번의 2.5%로 제시되었고 발동기준 및 추가 관세는 <표 5>와 같다.

표 5. 세부원칙 3차, 4차 수정안 주요 내용 비교: SSM

3차 수정안(2008년 7월)			4차 수정안(2	008년 12월)
○UR 양허관세 상한적용 SSM		○ UR 양허관세 상한적용 SSM 발동요건은 3차		
	발동기준	추가관세	수정안과 동일	
물량		양허관세의 25% or	○UR 양허관세 초과기	가능 SSM 관련 논의
기준	입량의 110~115%		내용은 별도 문서로	제시
SSM	115%~135% 135% 초과	40% or 40%p 50% or 50%p	- 발동품목수 : 전체	세번의 23%
가격	최근 3년 평균가격	발도가격과 수인	- 발동기준 및 추가관	······················
기준 SSM	의 85% 이하로 하 락시	가격 차의 85%	발동기준	추가관세
	양허관세 초과 가	능 SSM	최근 3 개년 평균 수입 량의 120% 초과	양허관세의 33% or 8% 중 높은 것
- 발	동품목수 : 2~6개	품목	140% 초과	50% or 12%p
- 초과가능수준 : DDA 양허관세의 15% 또는		- 발동기간 : 4~8 개월(단, 2~4 개월에 한하여	
15%p 중 높은 것 적용		연도 초과 가능)		
* 발동기준 및 구제조치는 위와 동일		- 발동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국내가격이 하락		
		하지 않을 경우 발	동 제한	

바. 특별긴급판매(Special Safeguard: SSG)

UR 협상 결과 농산물에만 적용하는 SSG 제도가 생겼는데, 이는 수입물량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거나 국제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하면 자동적으로 관세를 부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추가로 부과되는 관세를 '구제조치(Remedy)'라고 하기도 한다.

4차 수정안은 지난 7월 소규모 각료회의시 합의내용을 대체로 반영하였다. 이에 따르면 선진국의 경우, SSG 발동가능 품목 수를 이행 첫해 전체 세번의 1%부터 시작해서 단계적으로 감축하여 7년 내 완전 철폐하는 것으로 제시하였다. 개도국의 경우는 SSG 발동기능 품목수를 이행 첫해에 전체 세번의 2.5%로 감축하도록 하였다.

표 6. 세부원칙 3차, 4차 수정안 주요 내용 비교: SSG

3차 수정안(2008년 7월)	4차 수정안(2008년 12월)
○선진국 : 모두 철폐 or 1.5% 로 축소	○선진국 : 이행 첫날 1%로 축소 7년간 철폐
○개도국 : 3%로 축소	* 단, UR 양허관세 초과 금지
* 발동기준 및 구제조치는 현행 유지	○개도국 : 이행 첫날에 2.5%로 축소

사. 관세단순화

관세단순화는 종량세(수입량에 비례하여 관세 부과), 혼합세(종가세와 종량세 중 하나를 선택하여 부과), 복합세(종가세와 종량세가 함께 부과) 등 복잡한 관세구조를 종가세 (수입가격의 일정비율로 관세로 부과)와 같은 단순한 형태로 전환하자는 것이다.

표 7. 세부원칙 3차, 4차 수정안 주요 내용 비교: 관세단순화

3차 수정안(2008년 7월)	4차 수정안(2008년 12월)
○모든 관세를 100% 종가세로 전환하는 방	○모든 관세를 100% 종가세로 전환 또는
안을 []으로 처리(삭제 가능성 제시)	90%를 종가세로 전환(단, 이행기간 종료
	후 1 년 이내에 100% 종가세 전환을 마무
	리하기 위한 방안 마련 필요)

4차 수정안은 그동안 소그룹회의(Walk in the Woods) 논의를 참고하여 3차 수정안에 규정되어 있던 100% 관세단순화 의무의 대안으로 최소한 전체 관세선의 90%를 종가세로 전환하는 내용을 새롭게 포함하였다. 전체 세번의 90%를 종가세로 전환하는 경우 비종가세에 대해서 각 회원국은 이행기간 종료시까지 상황을 검토 하여 이행기간 종료 이후 1년 이내에 모든 관세를 종가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마련 해야 하다.

아. 쿼터내 관세(In-Quota Tariff)

TRO 품목의 경우 일정 물량까지는 저율관세가 부과되고, 그 이상에 대해서는 고율관세가 적용되는데 쿼터내 저율관세에 대한 관세 감축이 필요하다.

4차 수정안은 7월 소규모 각료회의시 합의내용을 대체로 반영하였다. 선진국의 경우 쿼터내 관세를 50% 감축하되, 감축 후 관세가 10%를 초과할 수 없다. 이행 기간은 3년이며, 이행첫날 최소한 17.5%까지 감축해야 한다. 단, 5% 이하의 쿼터내 관세는 이행 첫해 말에 철폐한다. 개도국의 경우는 쿼터내 관세를 15% 감축하고, 관세감축이 면제되는 특별품목은 쿼터내 관세 감축 의무가 면제된다.

표 8. 세부원칙 3차, 4차 수정안 주요 내용 비교: 쿼터내 관세

4차 수정안(2008년 12월)
○선진국 : 50% 감축(단, 상한 10% 적용)
- 단, 이행첫날 17.5% 이하로 감축하며, 5%
이하 관세는 철폐
○개도국 : 15% 감축(단, 상한 미적용)
- 단, 감축면제 해당 특별품목은 쿼터내
관세도 감축면제

자 TRQ 관리

4차 수정안은 7월 소규모 각료회의시 합의된 개도국 관련 내용을 반영하였다. 개도국의 경우 기존 TRO 관리 방식을 유지하거나 새로운 방식을 도입할 수 있다. 채택되는 방식은 최소한 2년간 유지되어야 하며, 이후 소진율이 연간 최소 비율 (소진율 40% 초과시: 연 5.3%p, 40% 이하시: 연 8%p)만큼 상승할 경우 미소진이 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亚 9	세부원칙	3차	4차	수정안	주요	내용	비교:	TRQ	관리
-----	------	----	----	-----	----	----	-----	-----	----

 3차 수정안(2008년 7월)	4차 수정안(2008년 12월)
○미소진 쿼터 메카니즘을 제시	○개도국에 대해서는 신축성 부여
- 3년 연속 소진율이 65% 이하일 경우	- TRQ 관리방식을 유지하거나 선착순 및
TRQ 관리 방식을 선착순 또는 비조건적	비조건적 허가방식 외의 다른 방식으로
허가방식으로 변경	전환 가능

● 국내보조 분야

가. 무역왜곡보조총액(Overall Trade-Distorting Domestic Support: OTDS)

4차 수정안은 지난 7월 소규모 각료회의시 제시된 내용을 반영하여 그동안 괄호로 처리되어 옹 OTDS 감축률을 확정하였다<표 10>. OTDS 이행계획서 양허는 LDC를 제외하고 모든 국가의 의무였으나 4차 수정안에서는 블루박스를 사용하지 않는 식량순수입 개도국 (Net Food-Importing Developing Countries: NFIDC)에 대해서도 예외를 인정하였다. OTDS의 감축 이행기간은 선진국 5년, 개도국 8년이다.

표 10. 세부원칙 3차, 4차 수정안 주요 내용 비교: OTDS

3차 수정안	(2008년 7월)	4차 수정안(2008년 12월)
○보조금 감축률(%)	보조금 감축률(%) ○ OTDS 감축률 단일수치 제시		수치 제시
국가	OTDS	국가	OTDS
EU	[75] [85]	EU	80
미국·일본	[66] [73]	미국·일본	70
기타국가	[50] [60]	기타국가	55
개도국 [33.3] [40]		개도국	36.7
			•

나. 감축대상보조(Aggregate Measurement of Support: AMS)

UR협정 이행 최종연도의 양허 수준을 기준으로 감축하며, AMS 수준이 높을수록 큰 감축률을 적용한다. AMS의 감축 이행기간은 선진국 5년, 개도국 8년이다.

AMS 총액뿐만 아니라 품목별 상한을 설정하여 품목별로 지원 가능한 보조금의 규모를 제한해야 하며, 이행 첫날부터 적용된다. 선진국은 1995~2000년 평균 지급액을 한도로 하며, 기준기간 동안 AMS 지원 품목뿐만 아니라 기준기간 이후 AMS 지급 품목에 대해서도 상한을 설정하여 품목특정 AMS를 지급할 수 있다. 개도국의 경우는 3개의 대안('95~'00년 혹은 '95~'04년 평균 통보된 AMS 지급액, '95~'00년 혹은 '95~'04년 평균 생산액의 20%, 해당연도 총 AMS의 20%)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품목별 AMS 상한을 설정할 수 있다.

4차 수정안에는 품목특정 AMS의 경우 해당국의 기준연도 최소허용보조 (De-minimis) 수준보다 낮아지도록 요구되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추가되었다.

3차 수정안(2008년 7월)		4차 수정안(2008년 12월)
○보조금 감축률(%)		○3차 수정안과 통일
국가	AMS	
EU	70	
미국・일본	60	
기타국가	45	
개도국	30	

표 11. 세부원칙 3차. 4차 수정안 주요 내용 비교: AMS

다. 최소허용보조(De-Minimis: DM)

4차 수정안은 3차 수정안의 내용과 동일하다. 선진국은 현행 최소허용보조수준 (품목특정 최소허용보조의 경우 해당 품목 생산액의 5% + 품목불특정 최소허용 보조의 경우 농업총생산액의 5%)을 50% 이상 감축하되, 이행 첫날부터 적용한다. 개도국은 현행 최소 허용보조수준(품목특정 최소허용보조는 해당 품목 생산액의 10% + 품목불특정 최소허용보조는 농업총생산액의 10%)을 33.3% 이상 감축하되, 선진국보다 3년 긴 이행기간을 부여한다.

표 12.. 세부원칙 3차, 4차 수정안 주요 내용 비교: DM

3차 수정안(2008년 7월)		4차 수정안(2008년 12월)
○보조금 감축률(%)		○3차 수정안과 동일
국가	DM	
EU		
미국・일본	50	
기타국가		
개도국	33.3	
		I

라. 블루박스(Blue Box)

4차 수정안에서는 개도국의 블루박스 설정기준을 세분하여 일반개도국의 경우해당 품목들은 전체 블루박스의 30% 이하, 한 품목은 10% 이하이나 최빈개도국 (Least Developed Countries: LDC)과 식량순수입 개도국(NFIDC)에 대해서는 이를 각각 75%, 25%까지 허용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마. 허용보조(Green box)

4차 수정안에서 특이한 점은 Annex B의 각주 5, 6에 국내식량 구호 관련 취득가격과 외부 참조가격과의 차이를 AMS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표 13. 세부원칙 3차, 4차 수정안 주요 내용 비교: 허용보조

3차 수정안(2008년 7월)	4차 수정안(2008년 12월)
○직접지불제에 있어 기준년도를 고정 불변	○3차 수정안과 통일
토록 하고 예외적으로 변경 인정	
○개도국에 대해서는 일부 신축성 인정	

● 수출경쟁 분야

수출신용을 제외한 수출경쟁 분야는 4차 수정안에서 특별히 변경된 내용이 없다. 수출신용과 관련하여 통상적인 이행 및 감시절차에 따르나 쿠바가 수혜자인 경우에 한정하여 쿠바의 동의가 있어야 함을 명시한 각주를 신설하였다

2. 12월 DDA 각료회의 개최 무산과 향후 전망

라미(Lamy) 총장은 금년내 농업 및 비농업분야(NAMA) 세부원칙 타결을 위해 당초 12월 13~15일로 예정하였던 각료회의 일정을 17~19일로 연기하면서까지 인도, 중국 및 미국 간의 이견을 절충하려고 시도하였으나, 결국 NAMA 분야별 자유화 및 SSM에 관한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함에 따라 각료회의 추진을 포기하게 되었다.

지난 7월 각료회의 결렬의 핵심요인이 SSM이라면 이번 12월 각료회의 개최가무산된 주된 원인은 NAMA 분야별 자유화라고 할 수 있다. 지난 7월 미국은 NAMA 분야별 자유화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G-12간 협의를 집중적으로 개최하여최종 합의를 이끌어 냈으나 이후 구체적인 양허를 요구하기 시작하며, 어떠한 분야 (Sectoral)에 참여할지도 명시적으로 결정하라고 주장하였다. 참여할 분야(Sectoral)의 지정과 관련하여 미국은 섬유 및 의류 등 자국에게 민감한 분야는 특혜잠식 (Preference Erosion) 목록에 포함하여 제외시킨 후, 미국이 희망하는 화학, 기계,임업, 의약품 등에서는 분야별 자유화 대상으로 선택하라는 이중성을 보였다.

이에 중국은 미국이 자국에게 민감한 분야를 제외할 수 있다면 개도국들도 제외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는 등 양측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

비록 각료회의 개최는 무산되었지만 연말 휴가기간이 끝나고 내년에 접어들면 다시 협상이 재개될 것으로 보이므로 남아있는 핵심 쟁점을 중심으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한·싱가포르 FTA 체결의 주요내용 및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 연구센터 중국팀 연구원 여지나

1. 중·싱가포르 FTA 체결의 주요내용

2008년 10월 23일, 중국과 싱가포르는 베이징에서 중·싱가포르 FTA 협정문 (China-Singapore Free Trade Agreement, 이하 CSFTA)에 서명함.

CSFTA는 2006년 8월 협상을 개시하여 2008년 9월까지 총 8차의 협상 끝에 타결되었으며, 2009년 1월 발효될 예정임.

중·성가포르 FTA 협상은 원래 2004년부터 논의되었으나, 당시 싱가포르 차기 총리후보였던 부총리 리셴룽(李顯龍)이 타이완을 방문하는 사건이 있은 후, 베이징이 양국FTA 논의 중단을 선언하였음. 이로 인해 중·싱가포르 간 FTA 협상 개시가 2년 넘게 지연되었고, 개시 후 2년의 시간이 소요되었음.

CSFTA는 상품무역, 서비스무역, 투자, 인력이동, 세관절차, 무역구제, TBT 및 SPS, 경제협력과 분쟁해결 등을 포함하고 있음.

싱가포르는 ASEAN 국가 중에서 중국과의 무역량이 최대인 국가이며, CSFTA는 중국이 체결한 네 번째 양자 FTA임.

CSFTA는 중국이 아시아 국가와 상품, 서비스, 인력이동 등을 포괄적으로 일괄 타결한 최초의 FTA라는 의의가 있음.

중국은 이미 싱가포르와 중-ASEAN FTA라는 다자적 FTA 관계를 맺은 상황에서 다시 양자 FTA를 체결하였음.

양자간 협상을 시작한 이유는 중-ASEAN FTA의 다자간 협상틀의 개방속도보다 더 빠르고 폭넓은 개방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힘.

● 중국의 FTA 체결 현황

중국은 2003년 이래, 중국공산당 중앙과 국무원의 지도 아래 적극적으로 FTA 추진정책을 실시해 왔으며, 현재 아시아, 오세아니아, 남미, 유럽, 아프리카의 29개 국가 및 지역과 12개의 FTA를 진행하였고, 이는 2007년 중국 총 대외무역액의 1/4를 차지함.

표 1. 중국의 FTA 진행 현황

협상단계	해당국가
1단계	한국, 인도, 코스타리카
2단계	호주, 걸프협력협의회, 남아프리카관세동맹,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3단계	홍콩, 마카오,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브루나이, 싱가포르, 태국,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 베트남), 칠레, 파키스탄, 뉴질랜드, 싱가포르, 페루

주 : 1단계 - FTA 타당성 공동연구 및 고려 단계

2단계 - 협상 전개 혹은 FTA 협정 최종합의에 도달

3단계 - 체결 완료 및 국내 법적 절차를 거쳐 최종 발효되는 단계

자료 : 이장규 외(2006). 『중국의 FTA 추진 전략과 정책적 시사점』, KIEP, p.31을 보충함.

- 현재 중국은 홍콩, 마카오와는 경제긴밀화협정(CEPA: Closer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을, ASEAN, 칠레, 파키스탄, 뉴질랜드와는 FTA를 체결하여 발효 중임.
- 또한 호주, 아이슬란드, 페루, 노르웨이 및 걸프협력협의회(GCC: 사우디아라 비아,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오만, 카타르, 바레인), 남아프리카관세동맹 (SACU: 보츠와나, 레소토, 나미비아, 스와질란드, 남아공) 지역과의 FTA 협상을 진행 중임.
- 한국을 비롯한 인도, 브라질, 코스타리카 등과는 FTA 타당성 공동연구 및 진행 고려 단계에 있음.

가. 양국의 경제관계 현황

2007년 기준으로 중국은 싱가포르 제2의 무역상대국이며, 싱가포르는 중국의 8대 무역상대국, 5대 대중 투자국임.

2007년 양국의 무역액은 472억 달러에 달했으며, 특히 중-ASEAN 상품 FTA가 발효된 2005년 이후부터는 더욱 빠른 증가세를 시현하고 있음.

특히 중국의 대싱가포르 수출과 무역흑자가 급상승하여, 2007년 중국의 대싱가포르 무역흑자는 120억 달러를 넘어섰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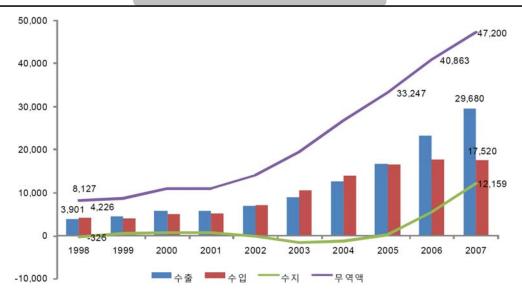


그림 1. 중국의 대싱가포르 무역 현황

자료: IMF, Direction of Trade Statistics.

중국 상무부 외자통계에 따르면 2007년 말 싱가포르의 대중 투자(실질이용액 기준) 누계액은 333억 9,000만 달러, 1만 6,615건에 달하였음.

이러한 대중 투자실적은 대중 투자국 중 홍콩, 일본, 미국, 한국(버지니아 군도 제외) 다음으로 높은 것임.

2. 중·싱가포르 FTA 협정문의 주요내용

가. 협정문의 구성

CSFTA 협정문은 대체적으로 중국의 기체결 양자 FTA 협정문과 유사하나, 특히 서비스무역(Trade in services), 자연인 이동(Movement of natural persons) 조항이 포함된 면에서 중·뉴질랜드 FTA 협정문과 유사성을 보임.

중·싱가포르 FTA에서는 지식재산권 부분은 누락되었고, 투자 장은 현재 중-ASEAN FTA에서 투자협상이 진행 중이고 2008년 12월 체결될 예정이므로 이에 갈음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표 2. 중·싱가포르 FTA 및 중국 기체결 양자 FTA 협정문의 구성 비교

	중ㆍ싱가포르(08)	중·칠레(05)	중ㆍ파키스탄(06)	중·뉴질랜드(08)
 1장	최초조항	최초조항	최초조항	최초조항
 2장	일반정의	일반정의	일반정의	일반정의
3장	상품무역	상품무역 내국민대우와 시장접근	상품무역 내국민대우와 시장접근	상품무역
4장	원산지규정	원산지규정	원산지규정	원산지규정 및 운용절차
 5장	세관절차	원산지규정 관련절차	무역구제	세관절차 및 협력
- 6장	무역구제	무역구제	SPS	무역구제
- 7장	TBT 및 SPS	SPS	TBT	SPS
8장	서비스무역	TBT	투명성	TBT
 9장	자연인 이동	투명성	투자	서비스무역
10장	투자	분쟁해결	분쟁해결	자연인 이동
11장	경제협력	행정	행정	투자
12장	분쟁해결	예외	최종조항	지식재산권
13장	예외조항	협력		투명성
 14장	일반 및 최종조항	최종조항		협력
15장				행정 및 제도조항
 16장		서비스무역		분쟁해결
17장		보충협정(08)		예외
18장				최종조항

주 : () 안은 체결 연도. 자료 : 각 협정문에서 필자 정리.

나. 상품협정

싱가포르의 대중국 수출품에 대해 2010년까지 95% 상품의 관세를 철폐하고, 중국의 대싱가포르 수출품에 대해서는 발효시점인 2009년 1월부터 영관세를 적용 하게 됨.

2009년 1월부터 싱가포르의 대중국 수출품 85%에 영관세가 적용되고, 2010년까지 추가적으로 10%의 상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도록 하였는데 이는 2007년 기준으로 무역액 180억 달러 수준임.

주요 품목으로는 석유화학, 가공식품 및 전자전기제품 등임.

CSFTA의 상품무역 부문은 ACFTA 상품협상을 기본으로 하여 더 가속화된 관세양허를 허용하도록 하였음.

싱가포르는 CSFTA 발효시점인 2009년부터 모든 품목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도록 하였으므로, 여기서는 중국이 ACFTA에 비해 더 가속화된 관세삭감을 진행한 내용을 살펴보고자 함.

먼저 최장 2015년까지 5~50%로 관세를 삭감하도록 하는 ACFTA의 민감품목군에 대해서 중국이 CSFTA에서 관세철폐를 허용한 품목은 하나도 없었음.

한편 ACFTA에서 2012년까지 관세를 철폐하도록 한 일반품목군 2(normal track 2)는 HS8 단위 기준으로 226개 품목인데, 이 중 19개 품목을 제외한 207개 품목에 대하여 중·싱가포르 FTA에서 즉각철폐 또는 2010년까지 철폐를 허용하였음.

CSFTA에서 95%에 해당하는 제품에 대해 2010년까지 관세를 철폐하도록 하였으므로 ACFTA에 비해 5%에 해당하는 제품에 더 빠른 관세철폐를 실행하게 된 것인데, 이러한 관세철폐의 가속화는 모두 일반품목군 2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알 수 있음.

싱가포르는 발효시점부터 모든 제품에 대하여 관세를 철폐하였으나, 중국은 ACFTA 당시의 민감품목군으로 분류된 품목에 대해서 CSFTA에서는 관세철폐와 같은 파격적인 관세삭감까지는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CSFTA의 상품분야 협상에서 중국이 많은 양보를 했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움.

다. 서비스협정

1) 협정문 주요내용 및 특징

CSFTA 서비스 협정문은 GATS와 ACFTA에 기초하여 작성되었으며, 상호인정 분야에서 여타 기체결 서비스 FTA보다 발전되었음.

대체적으로 CSFTA의 서비스 협정문은 중국이 체결한 칠레 및 뉴질랜드와의 FTA 협정문과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으나, 중ㆍ뉴질랜드 FTA에 포함된 최혜국대 우(Most Favored Nation treatment)와 양허표 수정(modification of schedule)에 관한 부분은 누락되었음.

서비스협정에서 최혜국대우는 미래에 체결될 다른 FTA에서의 더 높은 개방 수준을 현재에 약속받는 것으로 중·뉴질랜드 FTA에서 처음 삽입되었는데, CSFTA에서는 포함되지 않았음.

또한 투자와 관련해서는 양자적인 협상을 하지 않고 현재 진행 중인 중-ASEAN 투자 협상의 결과에 따른다고 명시하여, CSFTA의 실질적인 개방수준에 한계를 노정하였음.

한편 인정(Recognition) 부문에 있어서는 중국의 여타 FTA가 인정에 관련된 선언적 조항만 명시한 데 비하여, CSFTA에서는 인정(66조), 인정협력(67조), 인정협력에 관한 공동위원회(68조) 조항을 삽입하여 상호인정협력에 있어서 양국의 더욱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음.

회계, 감사 관련 분야의 상호인정협정(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에 대해 협상을 시작하고, 분야를 건축과 공학 분야로 점차 확대해 가기로 하였음.

회계 및 감사 작업반을 포함하는 상호인정협력 공동위원회(Joint Committee on Recognition Co-operation)를 설립하도록 합의함.

2) 양허안의 주요내용 및 특징

CSFTA 서비스 양허안은 GATS 방식을 사용하였으며, 양국은 비즈니스 서비스, 병원서비스와 교육서비스 분야에서 WTO와 ACFTA보다 더 진전된 양허안을 작성하였음.

① 병원서비스

중국은 지금까지 WTO나 기체결 FTA에서 병원서비스(hospital service: CPC 9311)를 기재하지 않았으나 CSFTA에서 최초로 양허하였음.

시장접근과 내국민대우에 대해 국경간 공급(모드 1)과 인력이동(모드 4)은 개방하지 않았으나, 해외소비(모드 2)와 상업적 주재(모드 3)를 개방하였음.

중국 측 파트너와 합자회사(Joint venture)형식으로 싱가포르 자본비율이 70%를 넘지 않는 조건으로 병원을 설립하되, 총 수량 제한은 중국 측의 수요에 따라 달라 지며, 의사와 의료진의 대다수는 중국인이어야 함.

② 교육서비스

CSFTA에서 싱가포르는 WTO나 기존 FTA에서는 개방하지 않았던 분야인 한의학교육, 중국어교육 및 교육시험서비스(CPC 923900) 시장을 개방하였음.

다만 시장접근에 있어서 한의학 학위 취득 가능 인원수는 총 공급에 따라 제한을 둘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인력이동에 대해서는 개방하지 않았음.

라. 인력이동 분야

CSFTA에서는 인력이동(movement of natural person)을 협정문의 한 장 (Chapter)으로 다루고, 구체 양허안을 부속서로 첨부하였음.

중・뉴질랜드 FTA 협정에서도 인력이동 문제를 CSFTA와 동일한 방식으로 다루고 있는데, 이는 부속서로 다룬 중・칠레 FTA나 수평적 양허(horizontal commitment)의 시장접근 제한 사항에 포함시킨 중-ASEAN FTA에 비해 그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킨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음.

CSFTA에서는 부속서 6에 아래와 같이 자연인의 임시입국을 양허하였음.

표 3. CSFTA 임시입국 양허표

	중국 측 양허	싱가포르 측 양허		
사업방문자	최대 6개월	5년복수비자 소지자 60일, 30일연 장가능		
(Business visitor)		기타 비자 소지자 30일, 30일 연장 가능		
기업내 전근자(ICT)	3년 혹은 계약 기간 중 짧은 쪽	체류가능기간2년, 8년까지3년씩 연장가능		
	1년	90일, 90일 연장 가능		
계약서비스 공급자	CSS 가능 서비스분야 회계, 치의료, 건축, 엔지니어링,	체류가능기간 90일, 180일을 초과		
(CSS)	도시계획, 컴퓨터 관련 서비스, 건설과 관련 엔지니어링, 교육서비스, 여행서비스	하지 않는 한도에서 90일 연장 가능		

자료: CSFTA 협정문 부속서 6.

중국과 싱가포르 모두 사업방문자의 임시입국을 양허하였고, 싱가포르의 경우 CSFTA에서는 기재하지 않았던 ICT와 CSS에 관한 자격요건과 체류기간을 양허하였음. 중국의 ICT와 CSS 자격요건은 ACFTA와 동일함.

한편 급여요건(salary requirement)에 대해 부속서한을 통해 ICT와 CSS에 급여 기준을 요건으로 둘 수 있음에 상호 합의하여 저급 인력의 무분별한 이동을 막는 장치로 삼았음.

3. 결론

대체적으로 CSFTA는 상품무역의 관세철폐 가속화, 일부 서비스 부문의 추가적 개방, 인력이동의 양허내용 확대 등 ACFTA보다 조금 더 진전된 개방을 이루었으나, 예상보다 개방폭이 크지는 않았던 것으로 판단됨.

CSFTA 협상 개시 당시, ASEAN 내에서 가장 서비스가 발달한 국가인 싱가포르와 양자 FTA를 진행함에 따라 ACFTA에서보다 큰 폭의 개방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으나, 실제 협상결과에서는 병원, 교육 일부 분야를 제외하고는 큰 진전을 이루지 못하였음.

상품분야에서도 ACFTA에서 중국의 민감/초민감 품목에 해당하는 품목들은 관세양허에서 모두 제외되었고, 2012년까지 관세가 철폐되는 일반품목군 2에 대해서만 관세 양허를 하였으므로 관세철폐 기간이 조금 앞당겨졌다는 것 이외에 싱가포르가 중국으로부터 큰 양보를 얻어내지는 못한 것으로 보임.

인력이동 부문에 있어서 중국과 싱가포르 모두 사업방문자에게 임시입국을 허용한 것, 그리고 싱가포르의 경우 ACFTA에서는 기업내 전근자에게만 허용했던 임시입국의 범위를 계약서비스 공급자(CSS)에게까지 확대한 것은 CSFTA에서 개방의 진전을 이룬 부분이라고 평가할 수 있음.

- 중 · 뉴질랜드 FTA에 이어 CSFTA에서도 인력이동 부문이 강조되고 있는 바, 향후 한 · 중 FTA에 있어서도 이 부문에 대한 면밀한 사전연구와 대비가 필요함.

인력이동은 한·중 FTA 협상 시 양측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협상 쟁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중국의 기체결 FTA에서 양자적인 인력이동 양허 현황을 파악하여 한·중 FTA 협상 시 우리 측의 대응방안을 미리 마련할 필요가 있음.

중국은 CSFTA 체결 이후 더 많은 ASEAN 국가들과 양자 FTA를 체결할 것으로 보임.

중국은 ASEAN 지역 내에서 일본과 동아시아에서의 지역적 리더십 경쟁을 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양자 FTA의 확대 추진을 통해 ASEAN 내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도모할 수 있을 것임.

'08 식량위기론, 그 실상과 대책

GSnJ 이사장 이정환/GSnJ 연구원 김재훈

1. '08 식량파동은 왜 일어났나?

- 1) '08 곡물가격 파동의 모습
- 소맥가격은 '05년 대비 94% 상승하였다.
- 소맥가격은 '05년 7월부터 상승하기 시작하여 '07년 10월까지 133% 상승하였 으나 그 이후 더욱 폭등하여 '08년 3월까지 5개월 사이에 다시 31%가 상승 하였다(그림 1).
- '08년 3월 이후 급락하여 9월에는 296\$/톤으로 하락하였으나 '05년에 비하면 94% 높은 수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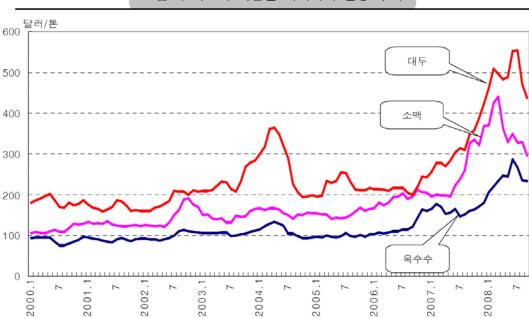


그림 1. 최근의 곡물별 국제가격 변동 추이

자료: International Monetary Fund,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 online

- 옥수수 가격은 '05년 대비 138% 높은 수준이다.
- 옥수수 가격은 소맥보다 1년 정도 늦은 '06년 9월부터 급등하기 시작하여 '08년 6월까지 139% 상승하였다(그림 1).
- '08년 7월부터 다시 하락하였으나 9월 가격은 '05년 가격에 비해 138% 높은 수준이다.
- 중립종 쌀 가격은 '05년 대비 168% 상승하였다.
- 쌀 가격은 중장립종 모두 2003년부터 완만한 상승추세를 나타내기 시작하였 으나 '08년 초부터 수직상승하였다.
- 장립종 쌀은 '08년 2월부터 폭등하기 시작하여 5월까지 3개월 사이에 110%나 상승하였다.

- 6월부터 9월까지 28% 급락하였으나 2005년에 비해 151% 높은 722\$/톤 수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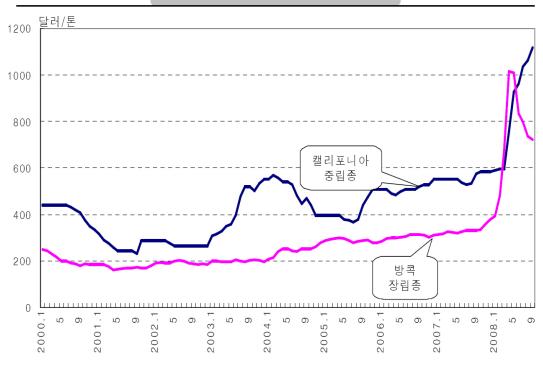


그림 2. 최근의 국제 쌀 가격 변동 추이

자료 : 중립종은 USDA, Rice Outlook/ 장립종은 <그림 1>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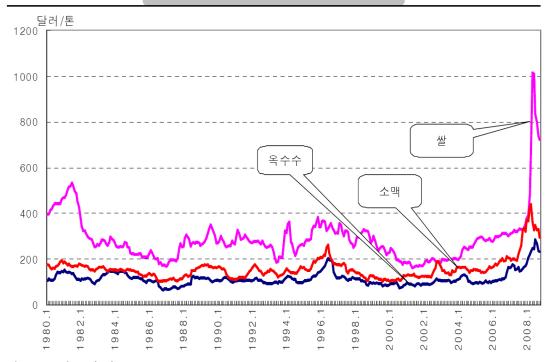
● 중립종은 장립종보다 2개월 늦은 '08년 4월부터 수직상승하여 9월에는 1,119\$/톤으로 '05년에 비해 168%나 높은 수준이다(그림 2).

2) '08년 곡물가격 파동은 이변인가?

- 1980년 이후 가장 높은 가격 수준이다.
- 1980년 이후 최고 가격에 비해 '08년 최고 가격이 소맥은 67.7% 높고 옥수수는 40.7%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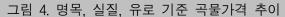
● '08년 9월 장립종 쌀 최고 가격은 1980년 이후 최고 가격에 비해 89.7% 높은 수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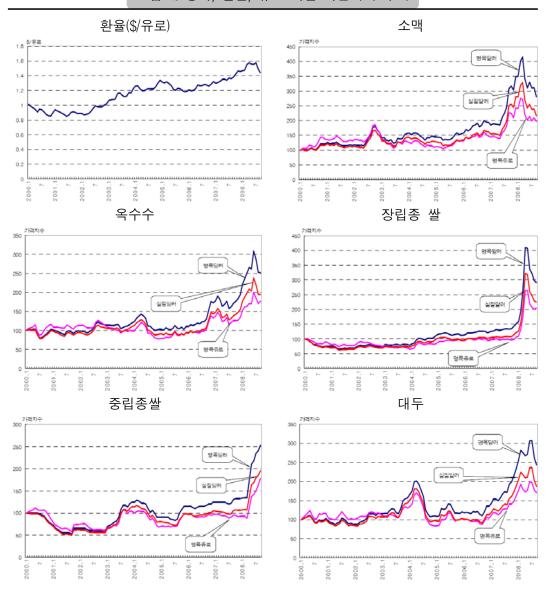
그림 3. 곡물별 국제 가격 장기 변동 추이



자료: <그림 1>과 같음.

- 그러나 달러 표시 가격에는 착시현상이 있다.
- 인플레이션과 달러화의 가치하락이 진행되면 달러표시 명목가격은 가격상승 폭을 실제보다 훨씬 크게 보이게 하는 착시현상을 일으킬 수 있다.
- 2004년 이후의 인플레이션과 달러가치의 하락으로 이러한 착시현상이 두드 러져 명목 달러표시가격과 유로표시 가격 사이에 차이가 매우 커졌다(그림 4).





자료: 옥수수, 소맥, 장립종 쌀, 대두는 <그림 1>과 같음. 중립종 쌀은 <그림 2>와 같음.

예를 들면 '05년 대비 '08년 소맥의 명목 최고 달러가격은 166% 상승하였으나 실질가격은 147%, 유로표시 가격은 111% 상승하였다(표 1).

표 1. '05~'08년 독물가격 상승률: 명목, 실질, 유로 기준

단위:%

	명목달러	실질달러	명목유로
소 맥	166	147	111
옥수수	180	154	118
대 두	150	126	94
쌀(장립)	?4	225	172
(중립)	142	120	1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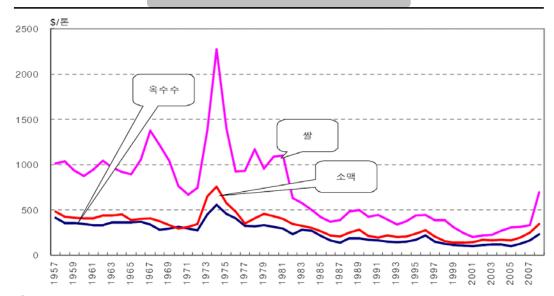
주 : 1) '05년 평균가격대비 '08년 최고가격을 기준으로 한 상승률을 나타냄

2) 실질달러는 미국소비자물가지수로 디플레이트 한 것임.

자료 : 소맥, 옥수수, 대두, 장립종 쌀은 <그림 1>, 중립종 쌀은 <그림 2>와 같음.

● 이러한 착시현상을 제거하기 위하여 실질가격으로 표시하면 '08년 가격 수준은 1974년 수준보다 훨씬 낮고(그림 5), 상승률도 크게 다르지 않아 사상초유의 이변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림 5. 실질 곡물가격의 장기변동 추이



자료: ADB, Causes of High Food Price, Asian Development Outlook 2008.

1974년에는 '72년 대비 실질소맥가격이 118.3%, 옥수수 가격이 101.4%, 장립종 쌀 가격이 206.3%씩 상승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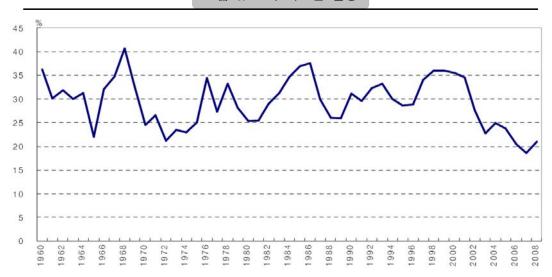
한편, 2005년 대비 2008년 실질소맥가격은 112.6%, 옥수수 가격은 121.8%, 장립종 쌀 가격은 127% 상승하여 '74년과 유사한 수준이었다.

3) '08 곡물파동의 원인

- 국제 곡물시장은 폭발성을 내재하고 있었다.
- 식량은 가장 기본적인 필수재화이기 때문에 어느 나라나 국내생산에 의존 하려는 경향이 있고 국제 곡물시장에서 거래되는 양은 세계 총 소비량의 극히 일부이다.
 - 승용차는 무역량 비중이 44%임에 비해 소맥은 19%, 옥수수는 13%, 대두는 30%, 쌀은 7%이다(穀物價格の 高騰と 國際食糧需給, 일본 國會圖書館, 2008).
- 무역량 비중이 낮을수록 국지적인 풍흉에 따라 국제곡물시장의 수급변동율이 매우 크게 나타난다.
 - 가령, 수출국이 100억 톤 생산하여 하여 12억 톤만 수출하고, 수입국도 100억 톤 생산하여 12억 톤 수입한다고 한다면 총 소비량은 200억 톤이 되고 교역량은 총 소비량의 6%(=12/200)가 된다.
 - 만일 수출국의 흉작으로 생산이 2억 톤(총 생산량의 1%) 감소하면 국제곡물 시장의 공급량은 16.7%(=2/12) 감소하게 된다.
- 곡물은 필수재이기 때문에 수요탄력성이 매우 낮아 공급량 변동율이 적어도 가격은 큰 폭으로 변동한다.
 - 수요탄력성이 0.2인 경우 공급량이 16.7% 변동하면 가격은 47.1% 상승한다.
- 결국 세계 생산량의 1% 생산감소가 47%의 가격상승으로 나타날 수 있을 만큼 국제곡물시장은 폭발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국지적 흉작에 의해 가격파동이 나타날 수 있었다.

- 작은 수급변동도 이와 같이 가격파동을 촉발할 수 있으나 재고가 완충역할을 하여 실제로는 가격파동이 쉽게 나타나지 않으나 재고가 일정수준 이하로 감소하면 공급부족을 우려하여 수출국은 수출을 억제하고 수입국은 수입을 늘려 국내 공급을 안정시키려 하므로 재고가 완충기능을 상실하고 일시에 수 요초과 현상이 나타나면서 가격파동이 촉발된다.
 -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1974년 FAO는 안전재고수준을 소맥은 25~26%, 옥수수는 15%, 쌀은 14~15%으로 설정하였다(앞의 일본 國會圖書館 자료).
- '90년대 말부터 재고가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 1970년대 초의 곡물가격 파동 이후 재고가 늘어나 2000년경까지 모든 곡물의 재고율(재고량/소비량)이 25%를 초과하였고, 쌀은 35% 전후 수준을 유지하 였다(그림 6, 7, 8)
 - 이에 따라 모든 곡물가격은 하락하고 세계 각국은 가격지지와 농가소득지지를 위해 방대한 재정부담을 져야만 했다.

그림 6. 소맥 재고율 변동



주1) 재고율이란 재고량/총이용량 비율을 나타낸다.

자료: ADB, Causes of High Food Price, Asian Development Outlook 2008.





주1) 재고율이란 재고량/총이용량 비율을 나타낸다.

자료: ADB, Causes of High Food Price, Asian Development Outlook 2008.

그림 8. 쌀 재고율 변동



주1) 재고율이란 재고량/총이용량 비율을 나타낸다.

자료: ADB, Causes of High Food Price, Asian Development Outlook 2008.

그러나 곡물가격 하락으로 곡물재배면적이 1980~2003년 사이에 10% 이상 감소 한데다(그림 9) 2002년과 2003년에 미국·캐나다의 흉작, 2006년과 2007년의 호주의 흉작으로 생산이 급격히 감소하였다.

740 720 700 680 660 640 620 600 1995 696 973 975 981 983 985 987 989 2003 991 66 2001 97

그림 9. 세계 곡물 수확면적 변화추이

- 자료: FAO
 - 한편, 개도국의 경제성장 붐으로 축산물과 식용유의 소비가 증가하면서 사료용 옥수수와 대두의 수요가 꾸준히 늘어났다(표 2).
 - 특히, 대두의 경우 중국 등 개도국의 식용유 소비가 증가하면서 남미를 중심 으로 대두재배가 늘어났고 그 결과 세계 총 재배면적이 1996~2003년 사이에 33.4%(21.2백만ha)나 증가하였다(그림 10).
 - 수요증가에 따라 대두와 옥수수 면적이 증가하는 대신 소맥면적은 같은 기간 47%(10.5백만ha) 감소하여 결국 소맥의 공급 감소로 이어졌다(그림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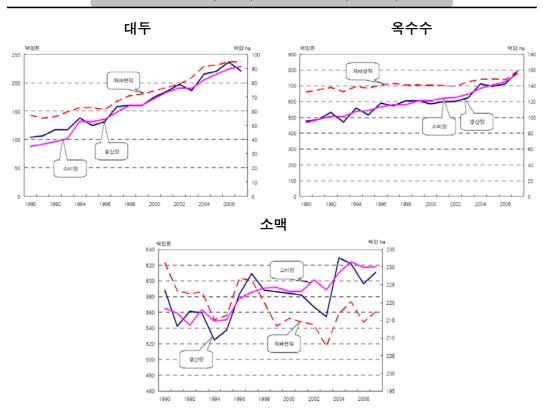
표 2. 거대 개도국과 주요 곡물 소비량 증가율(2000~2007)

단위:%

	중국	인도	브라질	러시아	세계	
옥수수	3.0	4.0	3.0	11.2	3.4	
대두유	8.8	8.3	4.9	0.8	4.0	
 소 맥	-1.3	1.8	1.4	1.2	0.8	

자료 : 김병률 등, "애그플레이션 동향 및 전망과 대응방안", KREI, 2008.

그림 10. 세계 대두, 소맥, 옥수수의 면적, 소비량, 생산량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 바이오 연료용 수요증가가 불을 붙였다.
- '90년대 말부터 바이오디젤 생산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2004~2007년 사이에 세계 식용유 소비증가의 37%가 바이오 디젤용 증가에 기인한 것이었다(표 4).
 - 바이오디젤용 소비가 증가하지 않았다면 식용유 재고량은 533만 톤 증가하고 소맥경작지가 대두 등 유지작물 재배로 전환되지 않았을 것이다.
- 또한 미국에서는 연료용 에탄올 생산이 증가하여 2008년에는 옥수수 총 이용량의 31.5%가 연료용으로 사용되어 그만큼 사료용과 수출용은 감소하였다(표 3).
 - 2004~2008년 사이 세계 옥수수 수요량 증가의 65%가 연료용 증가에 기인할 만큼 바이오 연료생산 증가가 옥수수 이용량 증가를 주도하고 있다(표 4).
 - 2008년 미국의 연료용 옥수수 이용량은 세계 총 재고량에 상당하는 수준이므로 만일 연료용 소비가 없었다면 세계 옥수수 재고량은 2000년 수준을 유지했을 것으로 추정된다(표 3).

표 3. 미국의 옥수수 용도별 이용량과 세계재고량

다의 · 배마 토

						전체 : 적단 본
	사료용	연료용	수출용	기타	계	세계재고량
1990	181.4 (59.4)	13.7 (4.5)	68.0 (22.2)	42.4 (13.9)	305.5 (100)	162.5
1995	184.7 (54.9)	15.6 (4.6)	87.7 (261)	48.5 (14.4)	336.5 (100)	138.7
2000	230.0 (60.0)	24.7 (6.4)	76.4 (19.9)	52.3 (13.6)	383.5 (100)	201.1
2005	242.3 (54.6)	63.1 (14.2)	84.0 (18.9)	54.3 (12.2)	443.7 (100)	152.3
2008	210.6 (42.2)	157.5 (31.5)	78.7 (15.8)	52.6 (10.5)	499.4 (100)	125.8

주1) () 안은 총 이용량에 대한 비율(%)

자료: ERS, Feed grain database

표 4. 식용유와 옥수수의 용도별 이용량 및 생산량 증가(2004~2008년 사이)

단위:천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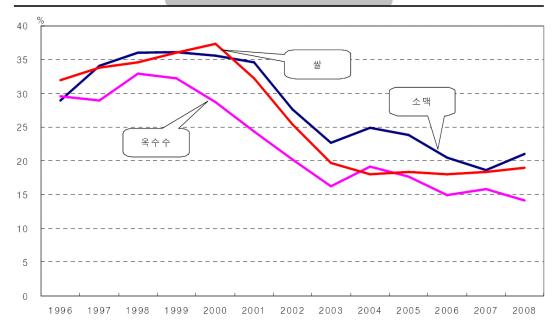
	공업용(연료)증가	식용증가	사료용증가	계	생산증가
식용유	6,904 (37)	10,535 (63)		16,629 (100)	15,689
옥수수	64,497 (65)		34,284 (35)	98,781 (100)	62,169

주1) () 안은 총이용량 증가에 대한 기여도를 나타냄.

자료: P. C. Abbott etc, "What's Driving Food Prices?", Farm Foundation Report, 2008

● 바이오 연료용 수요증가로 옥수수의 재고가 감소하고 대두의 가격이 상승하자 옥수수, 대두 등의 면적이 증가하고 그 만큼 소맥 등 다른 곡물의 재배면적이 감소하면서 모든 곡물의 재고가 일시에 감소하였다(그림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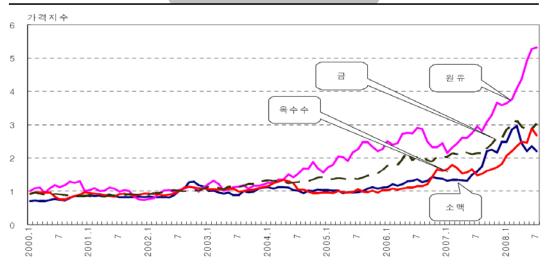
그림 11. 곡물별 재고율 급감 비교



자료: <그림 6>과 같음.

- 재고가 급격히 감소하자 공급부족을 우려하여 2007년부터 수출입국 모두 국내 재고확보에 나서면서 수출국은 수출을 규제하고 수입국은 재고를 확대한 결과 재고가 더 이상 완충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고 가격이 폭등하게 되었다. 2007년 이후 중국은 곡물수출에 수출세부과, 베트남,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이집트는 쌀 수출금지, 인도는 쌀과 소맥 수출금지, 우크라이나는 소맥, 대맥, 라이맥에 수출세 부과, 카자흐스탄도 소맥 수출금지, 아르헨티나는 소맥, 옥수수 수출정지 조치를 취하였다(앞의 일본 國會圖書館 자료). 반면 말레이시아,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은 정부재고를 2배 이상 늘려 국내 공급안정을 도모하겠다고 발표하였다(앞의 ADB 자료).
- 투기자금의 유입이 기름을 부었다.
 - 미국 달러화의 약세와 금융불안을 계기로 금융시장에 투입되었던 투기자금이 2007년부터 에너지, 금, 식량 등 상품시장으로 유입되면서 불붙은 곡물가격에 기름을 부었다(그림 12)
 - 곡물시장의 규모는 증권시장 규모에 비하면 1%에도 미치지 못할 만큼 적기 때문에(일본 농림성 자료) 투기자금의 일부가 유입되더라도 곡물가격에 미치는 영향력은 매우 크다.
 - 쌀은 바이오연료용으로 사용되지 않고 2007년 재고수준이 전년보다 도리어 소폭 증가하였으며 선물시장도 발전되어 있지 않은데, 2008년에 가격이 수직 상승한 것은 무역량 비중이 가장 낮고(본 자료 p.6) 주요 수출국들이 일시에 수출을 규제하여 시장충격이 가장 크게 나타났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주1) 2002년 가격을 기준으로 한 지수임.

자료: 옥수수, 원유, 소맥은 <그림 6>과 같으며, 금은 KITC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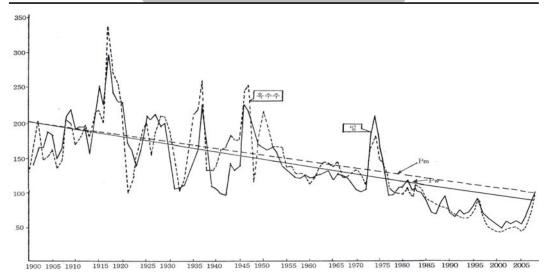
2. 식량위기는 오는가?

1) '08 곡물파동은 식량위기의 시작인가?

- 20세기는 공급이 수요를 초과한 시기였다.
- 1900년 이후 100여년 동안 소맥 실질가격은 연간 1.08\$, 옥수수 실질가격은 연간 0.98\$씩 하락하여 왔으며, 이것은 인구증가와 1인당 소비증가에도 불구하고 공급이 더 많이 증가하였음을 의미한다.
- 이 같은 장기적 곡물가격 하락추세 속에 일시적 수급불균형으로 재고가 감소 하는 경우 파동이 반복되었다.
- 이번 파동은 1900년 이후 반복된 가격 파동의 하나이다.
- 1900년 이후 단기간에 가격이 2배 가까이 폭등하는 파동이 1940년대 말까지는 10여년에 한번씩 나타났다.

- 소맥과 옥수수의 경우 1908/9년, 1917년, 1925/8년, 1937년, 1946/7년, 1950년 (옥수수만)에 각각 폭등 현상이 나타났다(이정환, 김은순, "국제곡물가격의 변동과 비교우위성의 동태적 변화", 농촌경제 10, 1987).
- 1940년대 말 파동 이후 30여년만인 1974년에 파동이 나타났으며, 이번 파동은 다시 30여년 만에 나타난 파동이다.

그림 13. 실질 곡물가격의 장기변동 추이



- 주1) 미국의 FOB 가격을 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로 디플레이트 하여 미국의 1977~79년을 기준으로 지수화한 것임.
 - 2) 2008년 가격은 1월~9월까지의 평균가격임.
- 자료 : 이정환, 김은순, "국제곡물가격의 변동과 비교우위성의 동태적 변화", 농촌경제 10, 1987에 최근 자료를 연계시킴.
- 이번 파동은 '80년대 중반 이후의 공급과잉으로 지속된 면적감소, 바이오 연료용 수요의 급증, 투기적 수요의 가세 등에 의해 나타난 것으로 곡물부족 시대의 시작으로 단정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 그러나 이번 파동도 장기적 공급초과 추세 속에 반복된 또 하나의 파동으로 끝날 것이라고 파단하기에는 불확실성이 매우 크다.

2) 곡물수요는 빠르게 증가

- 축산물 소비증가로 곡물수요 증가가 지속된다.
- 세계 인구는 2005년 65억에서 2050년까지 92억으로 증가할 전망이며 경제 발전에 따라 개도국의 축산물 소비가 늘어날수록 사료용 중심으로 곡물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
 - 쇠고기는 1kg 생산에 사료곡물이 11kg, 돼지고기는 7kg, 닭고기는 4kg이 소비되므로 축산물 소비증가가 곡물수요 증가를 주도한다.
- 바이오 연료용 수요도 증가하나 증가폭은 원유가격에 달렸다.
- 미국, 유럽 등이 에너지 자립과 탄소배출 감소를 위해 바이오연료 사용목표를 설정하여 강제하거나 보조금을 지급하여 바이오연료 생산량을 2004~2030사이에 6배나 증가시킬 계획이다(IEA, World Energy Outlook 2006).
- 그러나 바이오 연료의 생산은 원유가격 수준에 따라 크게 변동하므로 실제로는 원유가격의 추이가 바이오 연료용 수요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 원유가격이 40\$/배럴이면 미국농가의 옥수수 판매가격이 2.26\$/부셀이 되지만 120\$/배럴이 되면 연료용 에탄올 수요가 급증하여 옥수수 가격이 6.33\$/부셀로 폭등하는 것으로 예측되었다(P. C. Abbott etc, 앞의 자료)

3) 공급증가는 비관과 낙관이 혼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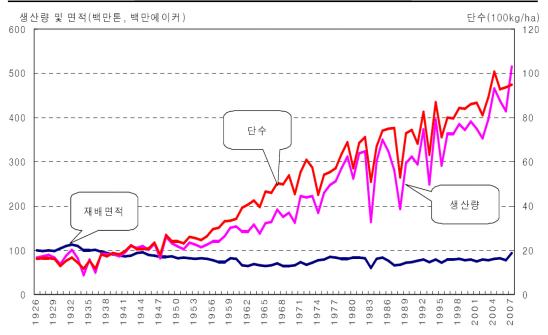
- 경작면적은 증가하는데 한계가 있으나 가격수준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 사막화의 진행, 비농업용 토지로의 전환 증가, 물 부족에 의한 경작제약 등을 고려하면 경작면적이 증가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수요를 경작면적 증가로 대응하기는 어렵다.
- □ 그러나 세계 곡물재배면적이 1980년대 초부터 감소하기 시작하여 2000년대 초 까지 20여년간 10% 이상 감소하였으나 가격상승과 더불어 20023년 이후 다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경작면적 증감이 자연적 요인보다 곡물가격의 등락에 따라 상당히 유동적임을 보여주고 있다(그림 9).

■ 단수 증가가 관건이다.

- 이제까지도 곡물생산 증가는 거의 대부분 단수증가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면적 증가가 기여한 부분은 미미하였다(그림 14)
 - 그런데 세계 곡물단수 증가율이 60년대 3.0%, 70년대 20%, 80년대 1.7%, 90년대 1.3%로 하락하여 공급증가를 제약하였다(일본농림성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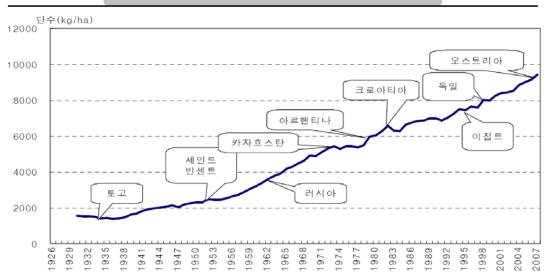
그림 14. 미국의 옥수수 단수와 생산량 변화



자료: ERS, Feed Grain Database

● 그러나 자연조건과 기술수준에 따라 국가간의 단수격차가 매우 크며 이것은 기술발전에 따라 세계의 곡물단수가 증가할 잠재력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15, 16, 17).

그림 15. 미국 옥수수 단수의 장기추세와 국가간 격차



주1) 현재 각국의 단수수준을 나타낸다.

자료: FAO, ERS, Feed Grain Database

그림 16. 미국 소맥단수의 장기추세와 국가간 격차



주1) 현재 각국의 단수수준을 나타낸다.

자료: FAO, ERS, Wheat Data

50

2000년

600 -5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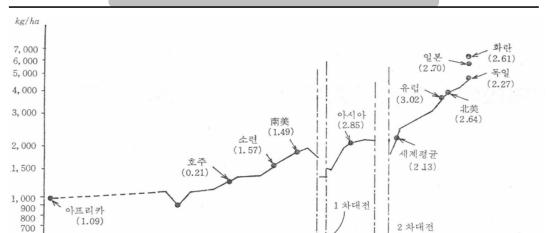


그림 17. 독일 곡물단수의 장기추세와 국가간 격차

자료: A. Weber and M. Sievers(1985, p.20)

50

40

70

60

10 20 30

● 식량부족은 신기술에 의한 혁명적 생산력 증가로 해결되어 왔고, 앞으로 생명공학에 의한 품종·물질·번식혁명, 전자공학에 의한 자동화와 정밀제어 기술혁신으로 생산성의 한계를 돌파할 가능성이 있다(표 5).

90

10 20 30 40

표 5. 농업기술 발전의 세계사

구 분	시 기	주요내용
제1차 농업혁명	1800년대 전후	○ 윤작법과 축력도입으로 생산력 대약진
제2차 농업혁명	1900년대 중반	○ 교잡육종에 의한 품종개발과 화학비료 보급으로 생산력 대약진
제3차 농업혁명 (진행중)	2000년대 전후	○ 생명공학에 의한 품종·물질·번식혁신 ○ 전자공학에 의한 자동화·정보화 혁신으로 생산력 대약진 예상 ○ 환경농업의 등장으로 농법의 전환예상

자료 : 이정환, '농업의 구조조정 그 시작과 끝, KREI, 1998

4) 식량위기 도래 여부는 에너지시스템과 연계되어 결정

- 앞으로 식량수급은 지구환경·경제시스템 안에서 결정된다.
- ◎ 경제발전은 에너지와 식량수요를 증가시키고, 요소비용을 증가시켜 식량의 생산비를 높인다.
- 한편, 에너지 수요증가는 원유가격을 상승시키고 지구온난화를 초래하여 바이오연료용 곡물수요를 증가시킨다.
- 결국 경제발전에 따른 비용 상승, 식량 및 바이오연료 수요증가로 곡물가격이 상승하므로 곡물가격은 지구적 환경·경제시스템 안에서 연결되어 결정된다.
- 에너지 수급과 기후변화가 관건이다.
- 식량위기의 도래여부는 첫째, 건강하고 균형된 식생활(축산물의 과도한 소비 억제 등)이 정착되고 자원순환 · 절약형의 지속가능한 발전모델이 얼마나 확산되어 수요를 억제할 것인가?
- ▲ 둘째, 에너지 기술혁신으로 저탄소의 저렴한 대체에너지가 개발되어 지구 온난화를 방지하고 바이오연료용 곡물수요를 얼마나 억제할 수 있을 것인가?
- 셋째, 제3의 농업혁명으로 단수를 증대시켜 식량공급능력을 비약적으로 발전 시킬 수 있을 것인가?
- 넷째, 국제적 공조체계가 정착되어 효율적인 온난화 억제시스템이 마련됨 으로써 기후이변을 방지하고 바이오연료 수요를 얼마나 억제할 수 있을 것인가? 에 달렸고 그만큼 예측하기가 더욱 어려워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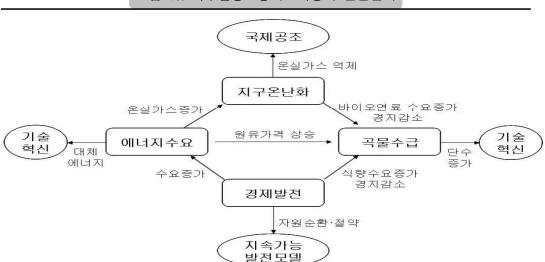


그림 18. 지구환경 · 경제 · 식량의 연관관계

- 에너지 수급에 따라 곡물파동이 나타날 것이다.
- 바이오 연료를 매개로 곡물수급시스템과 에너지수급시스템이 연계되었고, 따라서 에너지 수급에 따라 곡물가격이 크게 파동치게 되었다.
- 에너지 가격이 일정수준 이하인 경우에는 탄소배출 감축을 위한 정부의 규제를 충족시키는 수준에서 바이오 연료용 수요가 결정된다.
- 그러나 에너지 가격이 일정수준(방아쇠 가격)을 넘어서면 시장논리에 따라 바이오 연료가 화성연료를 대체하게 되면서 바이오 연료용 곡물 및 유지작물의 수요가 급증하고 곡물과 대두 등의 재고는 급격히 감소하게 될 것이다(그림 19).
- 재고가 일정수준(방아쇠 재고) 이하로 감소하면 재고가 완충기능을 상실하면서 곡물가격이 폭등될 것이다(그림 20).
- 곡물가격 폭등으로 생산이 늘어난 후 다시 에너지 가격이 하락하면 바이오 연료용 수요가 급감하면서 곡물재고가 일시에 급증하여 곡물가격은 폭락하게 될 것이다.

그림 19. 유가와 곡물재고 변화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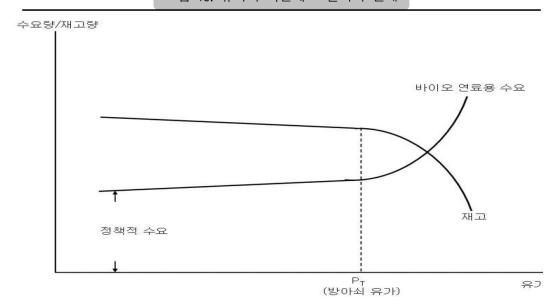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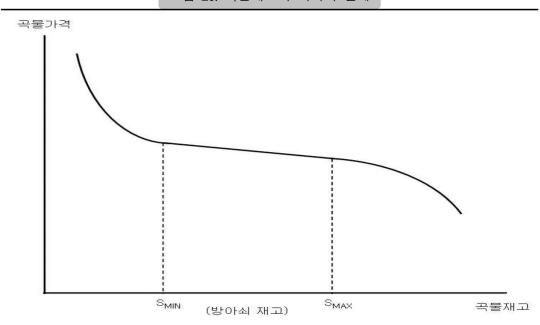


그림 20. 곡물재고와 가격의 관계



자료 : 김윤식, "최근 국제 쌀 시장변화의 특정", 「2008 하계학술대회 발표 논문집」, 한국농업경제학회, 2008

3.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

1) 냉철한 현실 인식

- 수입의존형 식량공급체계는 불가피하다.
- 우리나라는 농축산물 소비증가로 모든 농산물을 자급하기 위한 경지소요량이 391만ha(1970년)에서 715만ha(2004년)로 증가한 반면 경작면적은 326만ha에서 194만ha로 감소하여 해외의존율이 17%에서 73%로 높아졌다.
- 축산물이 섭취열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4%이나, 그 축산물을 모두 국내에서 생산하려면 271만ha의 경작지가 필요한 것으로 추정되어, 현재 경지면적은 축산물 자급을 위한 경지 필요량의 61%에 지나지 않는다.
- * 축산물 소비량에 kg당 사료요구량을 곱하여 총사료 소요량을 산출한 후 단수로 나 누어 필요면적을 산출함.

표 6. 농축산물 자급을 위한 경작면적 소요량

다의 · 마ha %

					단위 : 만na, %
	1970	1980	1990	2004	증감량 ('70~'04)
총 경지소요량(A)	391	421	615	715	324
국내 경작면적(B)	326	277	241	194	△132
해외의존율(A-B/A)	16.7	34.4	60.8	72.8	
축산물 자급을 위한 경지소요량	74	114	208	271	197 (61.0)
사료 자급을 위한 경지소요량	73	114	168	190	117 [59.1]

주 : 1) ()는 총경지 소요량에 대한 비율

2) []는 축산물 자급을 위한 경지소요량에 대한 비율

- 현재 국내에서 생산되는 축산물 생산에 필요한 사료를 자급하기 위해서만도 190만ha의 경작지가 필요하므로 현재 경지면적이 거의 모두가 사료생산에 투입되어야 한다.
- 따라서 우리나라는 수입식량의존형 국가가 될 수밖에 없음을 인정하고 대책의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
- 그런데 앞으로 식량수급은 지구환경·경제시스템에서 결정되어 부족여부나 가격변화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장기적 부족을 전제로 대책을 세우는 것은 지나치게 비용이 크다.
 - 장기적 부족을 전제하다면 식량의 해외의존도를 획기적으로 낮추지 않으면 안 되고, 이것은 경제사회시스템의 전면적 변화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 그러나 세계 곡물시장의 불안정성은 높아지고 폭등 혹은 폭락하는 파동이 빈 번해질 가능성이 있다.
- 세계곡물시장은 이제까지도 불확실성과 폭발성을 내재하고 있었으나 연료용 곡물 수요가 원유가격 변화에 따라 큰 폭으로 변동하게 됨에 따라 곡물수급에 불안정 요인이 대폭 증가하였다.
 - 더욱이 수출국들이 국내공급안정을 위하여 수출을 규제하거나 금지할 가능성은 상존하고 WTO 등 국제규범도 이를 실질적으로 인정하고 있다(최승환, "WTO는 식량수출 통제를 허용하는가?", 「시선집중 GSnI」62호, 2008).
- ▲ 따라서 이제까지보다 더 빈번히 곡물가격이 폭등 혹은 폭락하는 파동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 따라서 이러한 일시적 파동에 대비한 위험관리체계를 갖추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평상시에 비용을 부담해야 하고 이것은 위험회피를 위한 일종의 보험료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 해외 농업개발은 성공확률이 낮고 위험관리수단으로는 실효성이 낮다.
- ▲ 곡물파동 이후 해외농업개발 투자가 추진되고 있으나 이제까지 해외농업개 발투자중 성공한 예가 우리나라나 일본에서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을 만큼 성공에 제약요인이 많다(이정환 외, "곡물의 중장기 수급전망과 대응정책", KREI, 1997, pp.494~525).
 - 성공적으로 생산이 되더라도 해외개발 농장에서 생산된 곡물의 생산비용이 다른 지역의 가격보다 높아질 가능성이 있고 그 경우 그 비용을 누군가 부담 해야 한다.
- 또한 최근 곡물수입가격 상승의 상당부분은 물류비용 증가에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물류비용이 곡물가격 자체만큼 중요하므로 우리나라까지의 저렴한 물류라인을 확보하지 못하면 수입가격이 상승하여 비용부담이 커진다(표 7).
- 더욱이 생산국이 공급부족으로 수출을 규제하거나 물류라인에 장애가 발생 하여 생산된 곡물이 국제곡물 파동으로 정작 즉각적 도입이 필요한 때에 국내에 반입하기 어려워질 수도 있다
- 따라서 제조업 부문의 해외투자와 같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해외농업개발 투자는 기업의 판단에 의해 가능하나, 국내반입을 전제로 하는 식량안보용 투자는 실효성은 낮고 비용부담이 지나치게 커질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표 7. 미국 국내가격과 수입가격 비교

				단위 : 달러/톤
		2006.3	2008.3	상승액
옥수수	미국국내가격(A)	89.7	208.9	119.2
	수입가격(B)	141.0	351.6	210.6
	A/B	63.6	59.4	56.6
대 두	미국국내가격(A)	214.6	538.9	324.3
	수입가격(B)	263.8	680.5	416.7
	A/B	81.3	79.2	77.9

자료: 김병률 등 앞의 자료

2) 일시적 파동에 대비한 다면적 위험대웅체계 수립

- 해외 물량 장악력 제고가 우선 중요하다.
- 일본과 같이 세계 주요 산지로부터 국내까지의 물류라인을 확보하여 안정적으로 거래물량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둔다(송주창, 이정환, "사료곡물을 잡아라: 일본의 경우", 「시선집중 GSn」」52호, 2008 참조).
 - 주요 산지에 수집전문회사를 설립하여 산지에서 물량을 확보하고, 수송 및 수출전문회사를 설립하여 산지비축과 안정적 공급라인을 확립한다.
 - 그러나 자체 물류라인에 의한 조달이 항상 수입가격을 낮추는 것은 아니므로 필요시에는 제3국으로 수출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국제시장에서 구입하는 것보다 높은 가격으로 반입하는 일종의 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
- * 일본의 경우 젠노(全農)는 자체라인에서 확보한 물량을 전량 국내에 반입하나 미쓰비시는 시장상황에 따라 결정한다(이정환 등, 「일본의 사료원료 확보시스템과 수급 안정제도」, GS&J. 2008).
- 동시에 개도국의 농업개발사업에 대한 투자지원에 참여하여 해당 산지에 대한 지식과 정보 그리고 영향력을 증대시켜 나가면서 국내기업의 농업투자기반을 마련한다.
 - 일본이 1980년대부터 추진한 브라질 세라도지역 농업개발 지원사업이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브라질 농업투자에 관한 현지조사 보고서, 1985).
 - 한편 WTO에서 수출국의 수출규제를 통제할 수 있는 실질적 규범을 신설하도록 국제적 공조를 강화하여 수출규제로 물량확보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한다.
- 국내 비축과 가격안정제도를 정비한다.
- 주요 곡물의 국내 바축목표를 설정하여 일시적 수입부족에 대비하고 수입가격 급등 시 실수요자에게 충격이 가지 않도록 하는 가격안정장치를 마련하다.

- 이러한 대책도 평상시 혹은 가격 폭락시에도 비용을 부담해야 하므로 정부와 이해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필요하다.
- 일본은 20여년 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배합사료 안정공급 시스템을 구축하였고 이러한 시스템 유지에 평상시에 상당한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그림 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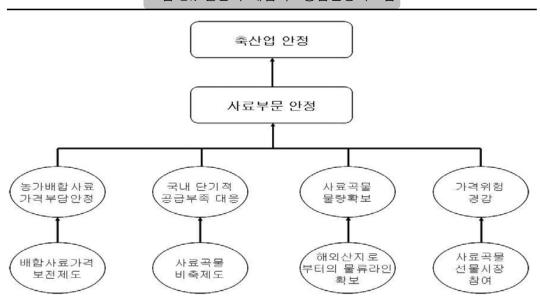


그림 21. 일본의 배합사료공급안정시스템

자료 : 송주창, 이정환, "사료곡물을 잡아라: 일본의 경우", 「시선집중 GSnJ」52호, 2008

- 국내 수요관리와 농업에 꾸준한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 음식물 쓰레기 등을 통한 식량의 낭비를 최소화하고, 축산물의 과도한 소비를 억제하여 불필요한 곡물수요 증가를 억제해야 한다.
 - 이를 위해서는 식문화 개선과 식생활 교육에 관한 장기적 계획을 수립하고 꾸준히 추진해야 한다.

- 동시에 국내 공급능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경지의 보존, 수리시설의 정비, 단수증대 기술의 개발에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 그러나 우리나라가 해외의존형 국가가 될 수밖에 없음을 인정하고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하며, 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한 단수혁신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 또한 시장개방과 급변에 의한 불확실성을 완화시켜줄 수 있도록 생산농가와 농기업에 대한 소득안정제도를 확충하여 농가와 농기업 스스로의 규모확대와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우리나라 농업은 지금까지 구조조정과 생산성 향상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나타냈고, 이러한 안전장치가 전제된다면 지속적으로 생산성을 향상시켜 나갈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이정환 등, 「한국농업이 가야 할 제3의 길」, 도서출판 해남, 2007).
- 국제곡물 및 에너지시장 변화에 대한 통합 모니터링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 국제국물 가격이 1~2년 사이에 두 배 이상 폭등하고 물량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고 반대로 폭락할 수도 있으므로 국제곡물 수급변화에 대한 치밀한 모니터링을 체계를 구축하여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특히 앞으로 곡물수급은 에너지 수급 및 가격변화에 따라 큰 영향을 받게 되므로 곡물시장 모니터링은 에너지시장에 대한 모니터링과 연계시킨 통합시스템으로 가야 한다.

농림수산식품부 국제농업국에서는 「국제농업소식」지를 발간 하여 정부기관, 국회, 지방자치단체, 학계, 농림수산식품관련 단체 및 협회, 도서관 등에 배부하여 오고 있습니다.

동 소식지의 내용이나 발간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아래 주소로 연락 주시기 바라며, 실린 내용들은 필자 개인의 견해이며 정부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국제농업소식 ┃ ▮ 발행처 : 427-71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2동

농림수산식품부 국제농업국 국제협력총괄과

Tel: (02)500-1858 Fax: (02)504-6659 www.mifaff.go.kr

▮인 쇄:(주)경성 Tel:(02)503-3223 Fax:(02)503-8338